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일 시 : 2016. 11. 3.(목) 14:00~16: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프로그램

- 일 시** : 2016. 11. 3.(목) 14:00~16: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
사 회 : 김성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시간	내용	발표자
14:00~14:03 (3분)	개회	사회자
14:03~14:10 (7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10~14:25 (15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4:25~14:40 (15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14:40~15:30 (50분)	토론	고익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손취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김차연 (변호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5:30~15:55 (25분)	종합토론	참석자 모두
15:55~16:00 (5분)	정리	사회자

차 례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1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23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127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 토론	169
고익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171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179
김차연 (변호사)	181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7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91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대책을 세워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비중 있는 성매매의 유형으로 정착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기존 성산업 구조에 끊임없이 공급원을 유입시키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연령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영업의 성행으로 성매매 유입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 생애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인 관계 손상, 자기혐오, 정신적 불안, 분열, 자살 시도, 임신과 인공유산,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과 연결되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하므로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입 이후의 사후적 지원과 더불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구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로와 궤

적을 조사하고, 성매매 노출 이후 아동·청소년이 접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정도나 역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과정의 단계별로 인권상황과 성매매 환경을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도모를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정비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검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1)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문헌연구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외 법제를 분석하였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규제 현황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개선을 위한 현행 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2)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

가) 설문조사

(1)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인적 특성, 성매매 노출 전 가정 및 학업과 관련한 상황, 성매매 유입과정과 성매매 노출 이후 생활실태,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법률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관련한 인권침해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쉼터) 14개소(총 정원 110명)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영리민간단체, 비입소시설인 자립학교, 드롭인센터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관련법의 연령에 따라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는 103명이다.

(2)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 251명에 대해 성매매에 관련한 인식과 인권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면접조사

(1)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관계형성이 이루어진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아동·청소년 전담팀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의 내담자, 아동·청소년성매매 지원시설(쉼터) 이용자 중에서 기관의 추천으로 15명 내외로 선정하여 1:1로 심층면접을 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내용으로는 성매매 이용 이전의 생활상황, 성매매 이용 및 유입과정, 성매매 관련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의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및 경·검찰 업무담당자 등 총 20여명에 대해 5~6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면접내용은 서비스 제공방법, 인권의식, 현장에서의 딜레마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학계전문가, 현장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위한 회의 개최하고자 하였다.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십대여성인권센터, 다시함께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부산, 대전 등 10개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국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 대안학교, 자활지원 센터 및 인턴십센터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현장 협업연구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하고자 하였다.

5) 공개 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현황 및 법제도 분석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지원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그에 대한 정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 경로의 대부분(조사에 따라 50-90%)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조사되고 있다. 과거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태가 업소형이었다면, 현재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형태는 사이버 상의 조건 맞춤을 통한 1:1 거래 형식을 띠고 있는 등 그 형태가 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 조직에 의한 알선이 조직적으로 개입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 단속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개인간 거래 형태로 인식하게 된 것은 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 경찰단속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과 업소를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변인들과 관련자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점, 여성과 장소 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성매수 시 성매매대상자 주변에 아무도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성구매자에게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조금 더 진화되고 전문적인 유흥업소로 다시 손쉽게 유입되며 그 속에서 극심한 성매매 피해를 입게 된다.

나) 아동·청소년의 가출로 이어지는 성매매

가출한 아동·청소년이 거리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가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숙식 제공, 가출팸 모집 등의 글을 접하면서 이들의 취약한 환경은 성매매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2015년 「가출 여자청소년 공간이용 및 폭력 피해 실태」 보고서(윤혜린 외, 2015)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접수된 가출 청소년(9세~19세 미만)은 2014년에 23,605명이었고, 이 중 여자 청소년은 약 57%였는데, 실제 가출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언론보도와 연구자료(성윤숙, 2010)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이 20만 명에 달하고 가출한 여자 청소년 7~10명 당 1명꼴로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고 한다.¹⁾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학교부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가출하는 아이들은 합법적인 노동이 제한된 현실에서 성매매 제안에 응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대안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²⁾

가출팸의 증가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길에서 생존해

1) 헤럴드 경제(2014. 8. 18), “가출청소년 연 20만명 방황... 가출 소녀 50% ‘성경험’”

2) 정혜원 외(2011a),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99면; 정혜원 외(2011b),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II)」,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7-78면.

야 하는 아이들은 많은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집단을 결성하게 되며, 가출패 등의 형태로 안전과 서로간의 공감, 지지 집단을 형성하지만 이 집단 안에서 다시 성매매 강요 등을 당할 위험이 높다.³⁾

다) 소비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한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었더라도 이후에는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성매매의 특징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생존과 무관한 소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는 십대들의 놀이, 연애, 외모, 여가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은 진입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집에 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성매매를 통하여 소비활동을 병행하고 싶어 하는 십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현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진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은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서울시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 중 처음 성매매에 유입된 연령은 평균 14.9세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는 성구매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일부 성인남성들의 어린 여성과 순결에 대한 집착은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의 연령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초래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낮은 경각심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검거건수는 2011년 419건, 2012년 3,147건, 2013년 3,701건으로 급등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검거인원은 5,261명인데 구

3) 윤혜린 외(2015), 위의 보고서(주 3) 131면.

속율은 1.9%에 그쳤고, 더욱이 청소년성매매사범의 대부분은 존스쿨 이수 등으로 기소유에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임에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 현행법에 호소하기보다 알선업자의 지배를 보호로 생각하여 이에 더욱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원체계가 독자적, 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복지와 성매매 피해 지원 시스템 내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여성부의 총괄적인 성매매정책 가운데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과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성매매관련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정책은 관련법의 제·개정과 더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를 처음으로 특별히 취급했던 2000년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2016년까지 16년 동안 31회의 개정을 거쳤다. 그 동안 동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바뀌었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흐름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 법제정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중간매개행위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처벌에 근접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총괄적 성매매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범규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지자체 성매매 방지정책 이행점검체계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과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과제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사실 성인 성매매의 예방은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및 해악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예방의 비중을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옮기는 정책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성매매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인프라 강화, 탈성매매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이 행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영역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보호와 지원강화를 위한 과제를 별도로 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의료·법률자문 지원 강화, ②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③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 범규정의 집행

범규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비 추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청소년 고용업소 점검 및 청소년성매매, 휴대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도단속 강화,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성매매 수요 차

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 강화 등의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현황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피해지원 체계는 성인에 대한 것의 일부로 운영되는 모습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자활 지원, 성매매 재유입의 방지를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 운영되었고, 그 업무과정 속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 확대되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지역별 현황('16.1.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1	5	3	1	2	2	1	3	1	-	1	1	2	2	3	1	39
일반	6	3	2	1	1	1	1	3	1	-	1	1	1	1	1	1	25
청소년	5	2	1	-	1	1	-	-	-	-	-	-	1	1	2	-	14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시설현황 ('16.1 기준)

계/구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외국인				
92개소	25	14	1	12	11	27	2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지원시설은 전국 14개가 있으며, 입소기간은 원칙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이며, 2년의 범위 연장이 가능하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전국에 2개소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소외된 성매매피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위탁 교육 형식으로 의무교육 제공 및 다양한 학습 기회를 지원한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 피해 또는 위험노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유입방지 전문교육을 하는 곳으

로 전국 11개소가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성장캠프’, ‘희망키움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2016년 1월 현재 전국 27개가 있다. 상담소에서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와 상담, 쉼터와 자활지원센터 등의 연결, 의료지원 및 선불금문제 해결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지원시설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도 함께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특별한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와 문제점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련 법률들은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다. 즉 ‘아청법’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 처벌법’은 법무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를 소관으로, 소관부처만 보더라도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높은 법정형과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분리, 대상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다.

나. ‘성매매처벌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 다.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에서는 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해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등 또는 그 가족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상담소에서 성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해 모두 지원하게 하나,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상담소 규정은 없다.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의 특징과 문제점

성인 성매매정책과 차별되어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으로는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구별이 있으며, 그러한 특징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 성구매자처벌의 법정형은 강화, 실제 처벌은 경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현재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상승되었다(‘아청법’ 제10조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는 법제정시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유인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

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아청법’ 제 11조 및 제12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 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아래의 판결 예를 보면 얼마나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 마셈”이라며 채팅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에 있는 ‘매가넥스 12’ 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중앙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16. 16:00경 위 ‘중앙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내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청법’(알선영업행위 등)으로 하여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에 그친 점에서 낮은 형량으로 문제 있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알선된 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해자 개념이 아닌 공소외 1로 지칭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 다목을 보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도 피해자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대상 아동·청소년 문제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분류하는 용어로,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서부터 소년원 수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명칭상의 ‘보호’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시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성폭력으로 규명해야 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2는 2008. 12. 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버디버디’라는 채팅 사이트의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14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뒤늦게 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화대를 먼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병신아, 좆 까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강제로 손을 잡아끈 뒤 “나는 경찰이다. 너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잡는 경찰이다.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강간 등으로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에 그친 점에서 낮은 형량으로 문제가 있다. 성매매로 시작된 경우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성폭력에 이른 사례로 성매매와 성폭력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더욱 구분되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성폭력을 성착취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가.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and Final Protocol”은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치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며, 부녀자매매금지 등을 규정한 협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국회비준동의를 거쳐 1962년 5월 14일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 중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 은 1979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성 차별에 대한 대표적 국제협약으로 1981년 9월 3일에 발효되었으며, 여성인신매매와 성매매 억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유엔에서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각국 정부의 대응이 예방(Prevention), 범 죄자 기소(Criminal Prosecution), 피해자 보호(Victim Protection) 등 이른바 ‘3P’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9년 채택된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위법한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의 제2선택의정서 제2조는 당사국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아동성매매는 보수나 다

른 댓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 아동음란물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 아동에 대한 표현이나 주로 성적 목적으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의미한다. 제3조 제1항 (b)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획득, 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c)제2조의 아동음란물을 생산, 배포,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및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소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미국

-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3월 16일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을 발의 하였다. 법안(S.596)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 미국의 경우 최근 각 州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과 연방의 입장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즉, 두 입장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르게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 피해자로 간주한다.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경험에 대해 개별 상담치료 및 지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방식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⁴⁾

다. 캐나다

-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

4) 이윤횢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96-97면(조윤오 교수 집필).

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⁵⁾

- 캐나다 연방형법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조항은 18세 미만자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에 의존하여 사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제212조 (2)항), 이를 지원, 교사, 강요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우 5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에 처함(제212조 (2.1)항),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수를 얻거나, 보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는 18세 미만자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12조 (4)항).⁶⁾
- 캐나다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연령이 너무 어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있다고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캐나다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5살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성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라도 그것은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 성매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고 하겠다. 또한, 착취적 관계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보여준 성 관계에 대한 동의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⁷⁾

라. 스웨덴

- 스웨덴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판매 여성을 남성의 욕구와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1998년에 “성적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특징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사려고 시도하는 행위(미수)만 금지하는 이른 바 ‘선택적 비범죄주의’ 형태이다.

5) 이유진외, 위의 글, 136면.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2012.12, 75면.

7) 이유진외, 위의 글, 138면.

- 이처럼 스웨덴은 성매매를 사회에 해악을 주는 것으로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며 여성과 아동의 인간존엄을 해치는 것이며, 양성평등에 반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아동을 성매매의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한 양성평등은 도달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 축진은 포주로서 처벌이 되며,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과 아동은 처벌되지 않는다. 성을 판 여성과 아동은 남성에 의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4. 소결

-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급증하며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환경은 성매매로 악용되고 가출팸의 증가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한편, 생존이 아닌 소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저연령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인 실태조사의 결과이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 같은 형태로 변화되고 다양한 유입경로에 의해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이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총괄적 성매매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성매매 예방, 성매매 피해자보호 및 법규정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보호와 법규정집행 과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과제가 책정되어 있지만, 성매매 예방과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별히 다루는 과제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실제로 성인 성매매의 예방은 크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의 인권침해 및 해악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예방의 비중을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옮기는 정책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이 이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원체계가 독자적, 전문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복지와 성매매 피해 지원 시스템 내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 지원의 현황을 보면, 전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92개인데 그 중에서 14개의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2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만이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전담시설이다.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담시설로는 사실상 매우 부족하다. 청소년쉼터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지원시설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특별한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다. 아동·청소년 전담 성매매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법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성구매 및 알선행위에 대한 무거운 법정형,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및 성판매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으로 설명되는데, 그러한 특징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문제가 있다. 둘째, ‘아청법’에서는 피해자와 대상자를 구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협박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셋째,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므로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은 철저히 피해자중시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스웨덴은 성을 판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 바 ‘선택적 비범죄주의’ 형태인데,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과 아동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을 판 여성과 아동을 남성에 의한 폭력과 억압의 희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피해자로 보는 외국입법례의 경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정립해야 할 기본적인 시각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I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현황과 환경, 인권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개선 법제, 유입예방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두 종류이며, 그 대상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103명과 관련 업무 담당자 251명으로 각각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9일, 2016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총 139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자 나이 19세 이상인 5부와 응답내용부실 31부를 제외하여 총 103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업무담당자의 경우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 1〉 조사개요

구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조사대상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조사방법	▪ 면접조사/우편조사	▪ 팩스/이메일/우편조사
조사지역	▪ 전국	▪ 전국
분석사례수	▪ 103명	▪ 251명
조사기간	▪ 2016. 8. 11 ~ 9. 9	▪ 2016. 8. 11 ~ 9. 7

다. 응답자 특성

아동·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관련법의 연령에 따라 19세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에서 14세까지가 11명, 만 15세에서 16세까지 40명, 만 17세에서 18세까지가 52명이었다.

지원시스템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견도 어렵지만 짧은 조사기간 안에 실태조사에 참여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사대상자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생활시설), 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등(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서비스시스템 내에서 들어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밖 지원센터, 위센터, 성문화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련 있는 종사자 251명에 대해 행하였다.

〈표 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N	%
[전 체]		103	100.0
연령	만 13~14세	11	10.7
	만 15~16세	40	38.8
	만 17~18세	52	50.5
학교 재학 여부	학교다님	62	60.2
	학교다니지않음	41	39.8
기관명	서울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씨튼해바라기의 집	2	1.9
	서울 위기청소년지원시설 우리들 쉼자리	3	2.9
	서울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새날에 오면 인턴쉽센터	2	1.9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는 봄	3	2.9
	대구 위기청소년지원시설 수지의 집	3	2.9
	부산 청소년지원시설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7	6.8
	전남 여자청소년생활 시설 헤아림	9	8.7
	경남 여자청소년 지원시설 범숙의 집	10	9.7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4	3.9
	울산 성매매피해 상담소	6	5.8
	춘천 길잡이의 집	4	3.9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2	1.9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5	4.9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십대여성인권센터)	7	6.8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	19.4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대구여성회)	2	1.9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사)인천여성의전화	6	5.8
	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광주YWCA)	3	2.9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5	4.9

〈표 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N	%
[전 체]		251	100.0
소속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15.9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1.2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7.6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8.3
	위센터	28	11.2
	성문화 센터	32	12.7
	경찰	48	19.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4.0
성별	남성	60	23.9
	여성	191	76.1

2.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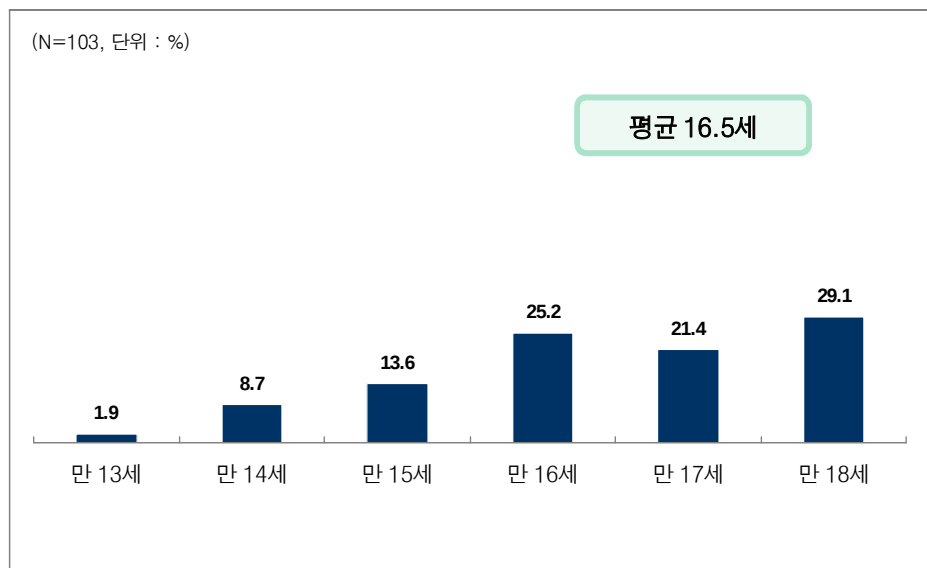
가. 아동·청소년 생활 관련

1) 응답자 연령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 응답자 103명의 연령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걸쳐 있고 만 18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각 연령별 인원은 만 13세 2명, 만 14세 9명, 만 15세 14명, 만 16세 26명, 만 17세 22명, 만 18세 3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16.5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 2학년 또래인 만 13, 14세는 11명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즉시 지원체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원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만 13세 이전(초등학교 또래)에 성매매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13세와 만 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청소년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실태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림 1〉 응답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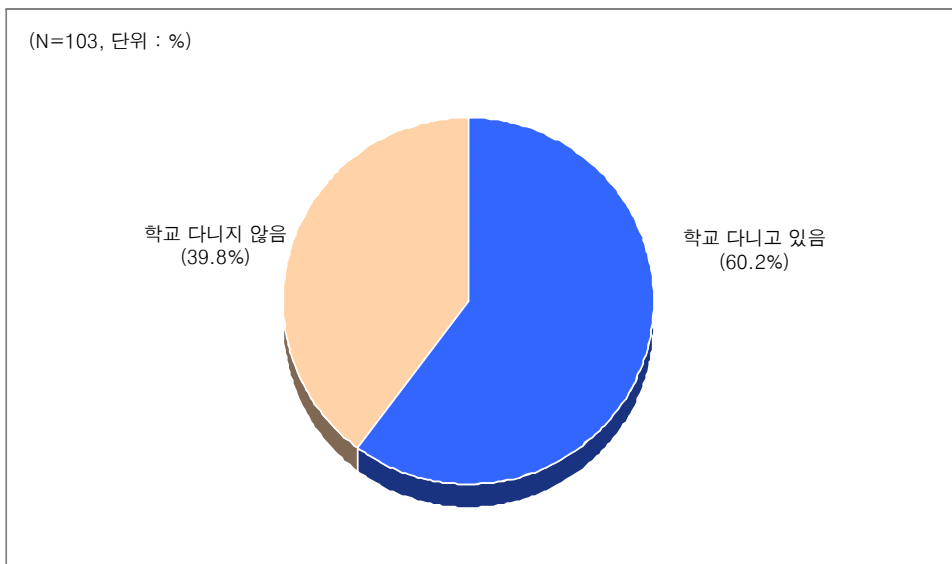


2) 학교 재학 여부

이 항목은 현재 재학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응답 당시 재학 여부를 보면 103명 중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62명(60.2%)이었으며, 나머지 41명(39.8%)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표집단위가 지원체계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생활시설은 아동청소년의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입소자에 대한 학업지원을 필수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체계 밖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학교재학여부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39.8%인 41명이 학교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나타난 것은 표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학교재학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만은 없으며, 한번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 학교 재학 여부



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62명의 경우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는 ‘고등학교’ 38명(61.3%), ‘중학교’ 와 ‘대안학교’ 각각 12명(19.4%) 이었다.

만 13~14세의 경우, 중학교 재학 6명, 대안학교 재학이 5명으로 이미 중학교 1-2학년 또래부터 45.5%가 정규 학교 체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학교 1-2학년 또래의 45.5%가 정규 학교 체계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중등교육분야에서 심도 깊게 연구, 해결,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 15세~16세의 경우 중학교 재학 6명, 고등학교 재학 11명, 대안학교 5명(22.7%)이고, 만17세~18세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27명, 대안학교 2명(6.9%)으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또래에 대안학교 비율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의 정규학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기보다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대안학교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안학교를 가더라도 다시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현실에서 대안학교 진학률조차 낮아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전향2)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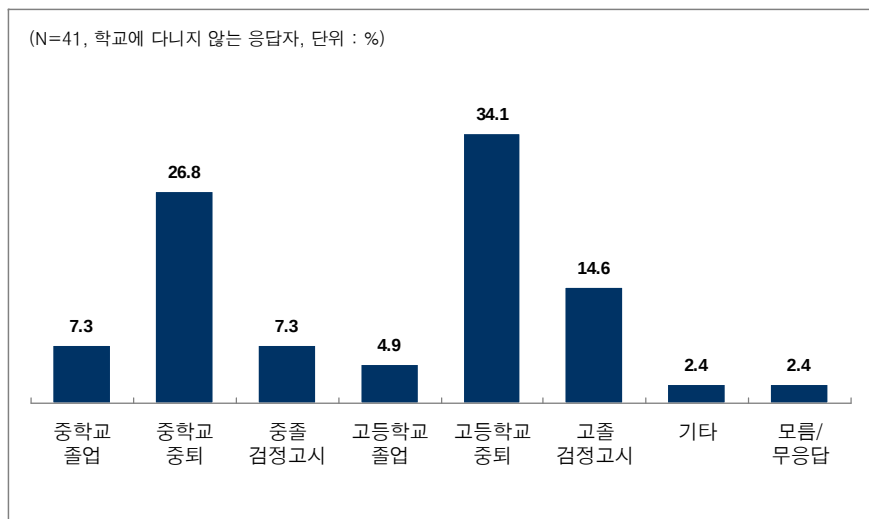
		사례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전 체		62	12	(19.4)	38	(61.3)	12	(19.4)
연령	만 13~14세	11	6	(54.5)	0	(0.0)	5	(45.5)
	만 15~16세	22	6	(27.3)	11	(50.0)	5	(22.7)
	만 17~18세	29	0	(0.0)	27	(93.1)	2	(6.9)

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사항은 ‘고등학교 중퇴’의 비율이 14명 3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중퇴’ 11명 26.8%, ‘고졸 검정고시’ 6명 14.6%, ‘중졸 검정고시’와 ‘중학교 졸업’이 각각 3명 7.3%, ‘고등학교 졸업’ 2명 4.9% 등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41명 중 중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중퇴로 70.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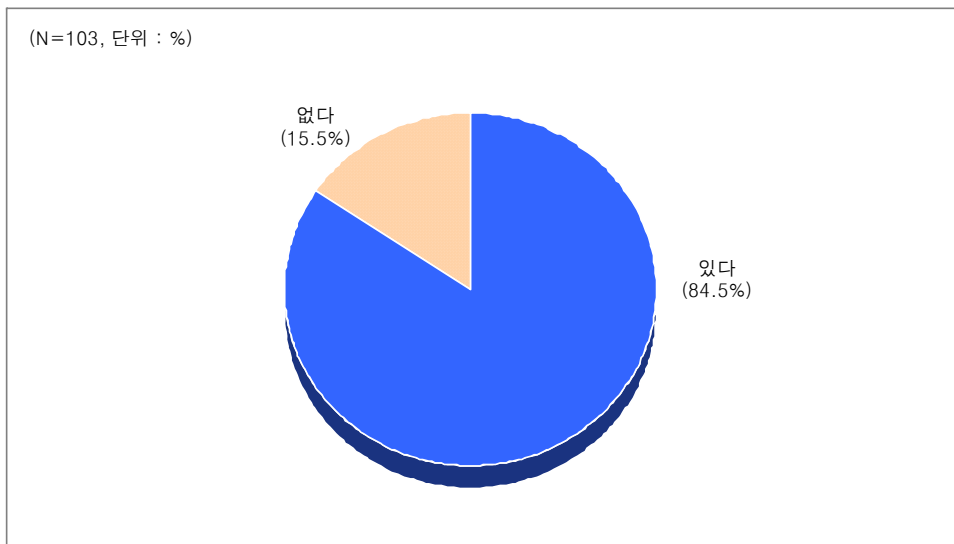


3) 가출 경험

전체 응답자 103명 중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출 경험은 만 15~16세의 경우 40명 중 36명으로 90.0%, 만 13~14세의 경우 11명 중 9명으로 81.8%, 만 17~18세의 경우 52명 중 42명으로 80.8%의 순서로 높았다.

〈그림 4〉 가출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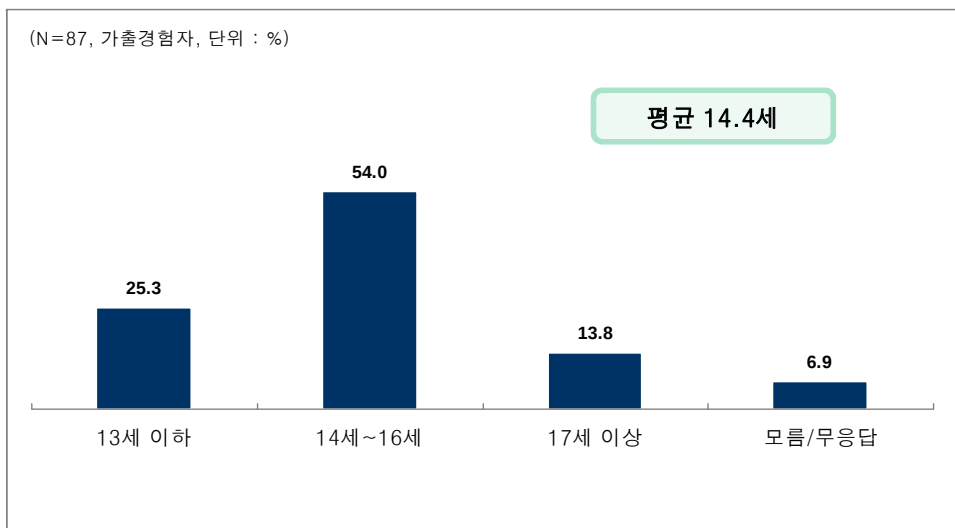


가) 처음 가출한 나이

가출 경험자 87명을 대상으로 처음 가출한 나이를 조사한 결과, 처음 가출한 나이가 ‘만14세부터 만16세’까지는 47명(54.0%), ‘만 13세 이하’에 가출한 경험자가 22명(25.3%), ‘17세 이상’이 12명(13.8%)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처음 가출을 한 평균 나이는 14.4세였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가출경험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처음 가출한 나이



나) 처음 가출한 이유

이 항목은 처음 가출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가출을 경험한 당사자들에게 물어서 선택 항목을 설정하였다. 답변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6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 58.6%, ‘친구나 선후배와 놀고 싶어서’ 46.0%, ‘공부하기 싫어서’ 21.8%,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1.5%, ‘학교에서 따돌림 때문에’ 10.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원인을 질문했을 때 흔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변을 한다. 그러나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였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인 답변 이면에는 가족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설문 결과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이 51명(58.6%),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10명(11.5%),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9명(10.3%), 성폭력을 당해서 3명(3.4%), 기타로는 소문 3명(3.4%), 쫓겨남 1명(1.1%), 친엄마를 찾고 싶어서 1명(1.1%), 혼날까봐 1명(1.1%)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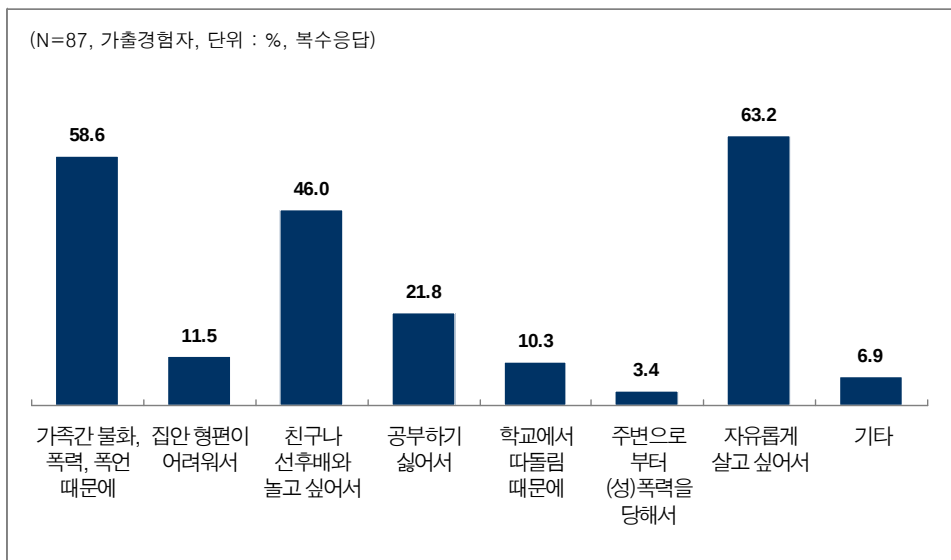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은 잘 보호받고 지지받아가며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들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며, 가볍게 짧은 이유로 가출의 원인을 답한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변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과도한 입시중심의 경쟁주의, 성적지상주의 등의 문화와 평가방식, 학교와 가정 외의 다른 곳은 모두 일탈로 간주하는 심대 문화의 빈곤 등 탈출구가 없는 심대문화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측면으로도 분석이 가능한데, 가출 및 성매매로의 유입은 가족 내 위험요인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적 욕구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출과 성매매가 특수한 청소년, 소위 고위험군 청소년

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선택항목 중 ‘성정체성(동성애) 고민 때문에’라는 항목에는 응답자가 1명도 없었다는 점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가출 원인으로 이러한 이유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응답자가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설문 표본집단이 지원체계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감추거나, 성정체성 고민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지원체계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6〉 처음 가출한 이유(복수응답)



다) 가출 후 지냈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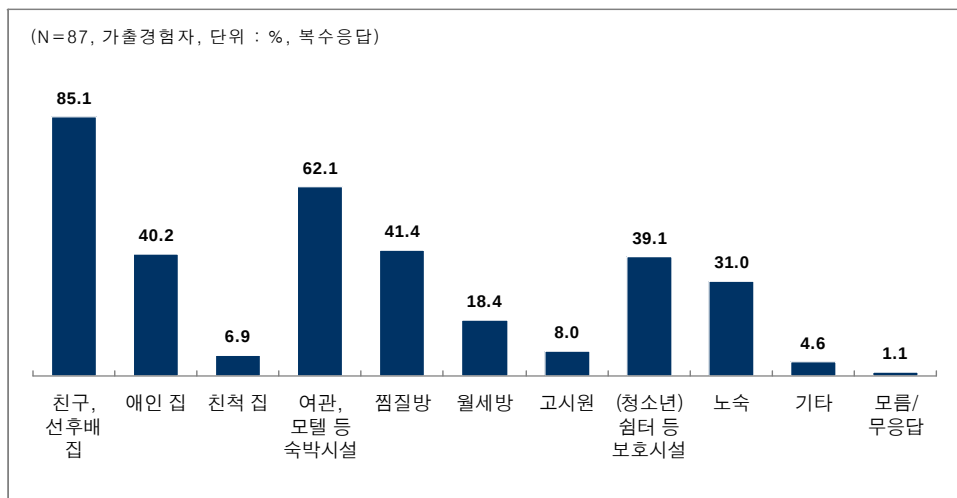
가출 후 지냈던 장소에 대해서는 ‘친구, 선후배 집’의 응답률이 8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 62.1%, ‘찜질방’ 41.4%, ‘애인 집’ 40.2%, ‘쉼터 등 보호시설’ 39.1%, ‘노숙’ 31.0%, ‘월세방’ 18.4% 등의 순이었다.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두 번째로 많은 정도로 아동·청소년에게 이용되며, 찜질방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지냈던 장소로 ‘노숙’도 전체 27명(31.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3세~14세(44.4%), 만15~16세(30.6%), 만17세~18세(28.6%)로 노숙의 경우, 성폭력, 인신매매, 문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열악한 노숙환경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다.

반면에 가출 이후 쉼터 등 보호시설을 경험한 비율이 39%에 지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쉼터 입소 충원율이 낮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쉼터의 운영방식이나 홍보 등 많은 과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보호시설에 입소를 꺼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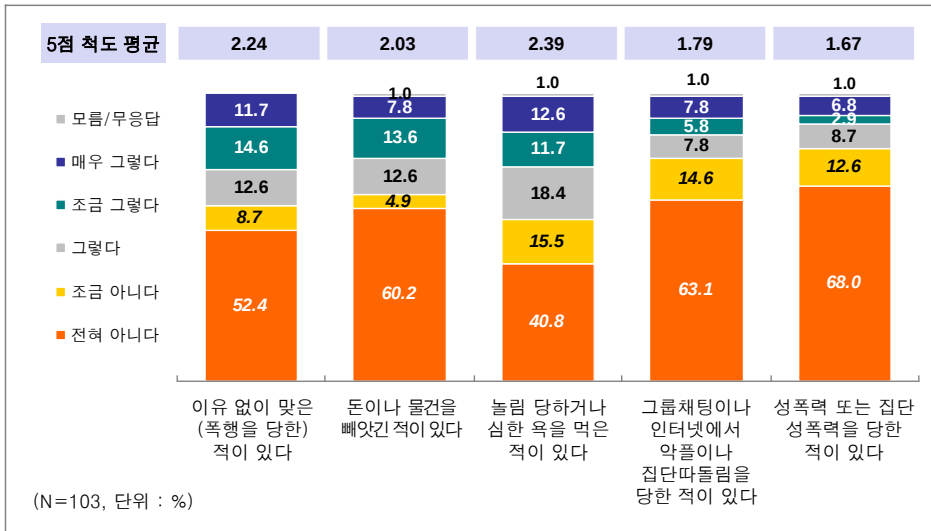
〈그림 7〉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복수응답)



4) 일상생활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적 환경

가) 최근 2년간 폭력, 따돌림 등의 경험

〈그림 8〉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당한 경험



다섯 가지 폭력/폭행 유형 중 가장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인, “놀림 당하거나 심한 욕을 먹은 적이 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58.2%로 과반수 이상이 인격적 침해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으며,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12.6%에 달하고 있고, 특히 만 13세~14세의 경우 11명중 3명(27.3%)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폭력/폭행 유형으로 “이유 없이 맞은(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를 제외하면 47.6%로 2명 중 1명 꼴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11.7%에 달하고 있으며, 만 15세~16세의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40명 중 9명(22.5%)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38.8%가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룹채팅이나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의 경우는 약 36%

가 인터넷상 악플이나 따돌림을 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7.8%는 매우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만 13세 ~ 14세의 경우는 27.3%가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상 악플이나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사이버 환경이 저연령대에서 훨씬 심각하게 악플이나 따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또는 집단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성폭력의 경우 다섯 가지 폭력/폭행 유형 중 가장 경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31%이며, ‘매우 그렇다’도 6.8%(만 15~16세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15%이다)로 아동·청소년기에 이미 성폭력 정도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적 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명 중 1명 이상이 놀림 등 인격적 침해를 당하거나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이 인터넷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폭행 가해자

폭행을 당한 경험자(N=40)를 대상으로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 선후배’의 응답률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다.

가출 후 지금까지 지냈던 장소 중 ‘친구, 선후배 집’이 85.1%로 가장 높았던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 의존대상에 의해 폭력상태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 중 2명이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 응답으로 보아 원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 심각하다는 점과 현재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경우가 실제 부모나 직접 양육자라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년간의 폭행 경험이 원가족에게서라는 점은 가출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응답은 ‘모르는 사람’에게서의 폭행이 27.5%에 이르는데 이것은

가출 후 노숙,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는 응답이 높았던 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상황이 폭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폭행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구매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전체 응답자 103명 중 지난 2년간 폭행/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40명 (38.83%)에 달하며, 그 중 만 13~14세의 아동청소년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폭행/폭력이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경험했다는 것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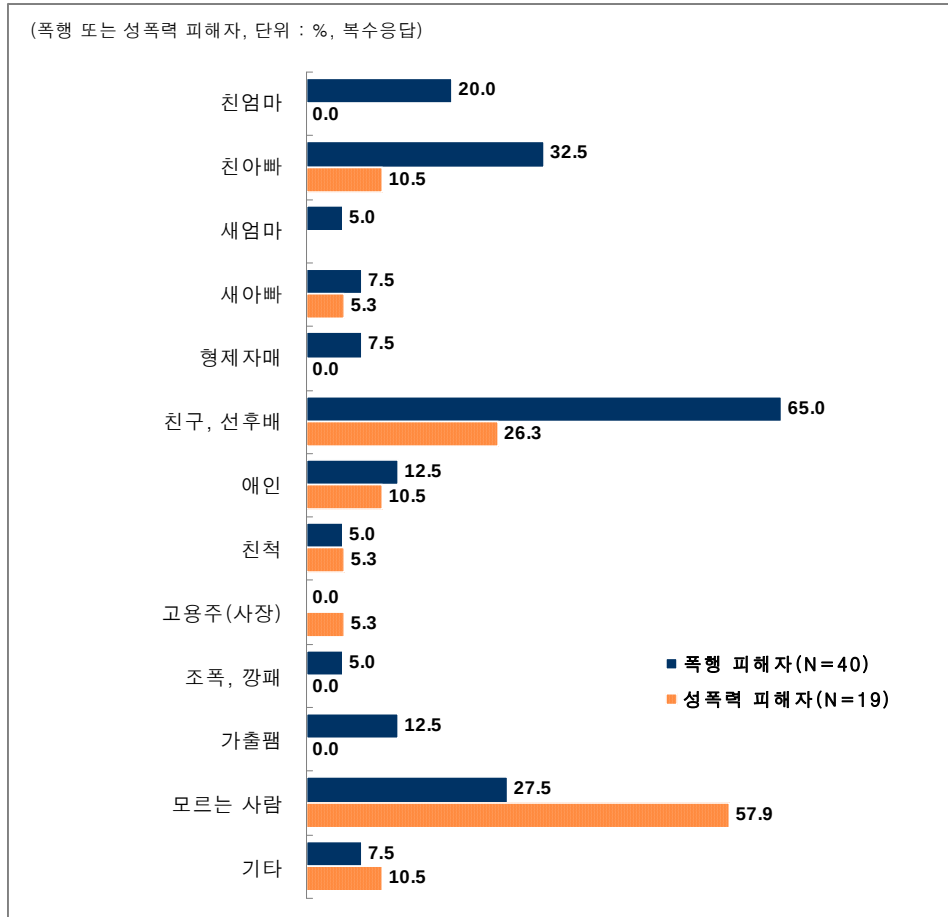
다) 성폭행 가해자

성폭력을 당한 경험자(N=19)를 대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는 ‘모르는 사람’의 응답률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선후배’ 26.3%, ‘친아빠’, ‘애인’, ‘기타’가 각각 10.5% 등의 순서였고, 기타의 경우 아빠친구, 동네 할아버지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역시 위 나) 폭행 가해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범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103명 중 19명에게 일어났으며, 특히 만 13세, 14세 연령에서 4명이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같은 중대범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친아빠에 의한 성폭력에도 2명이나 응답하고 있고, 새아빠의 경우도 1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9〉 폭행 및 성폭력 가해자(복수응답)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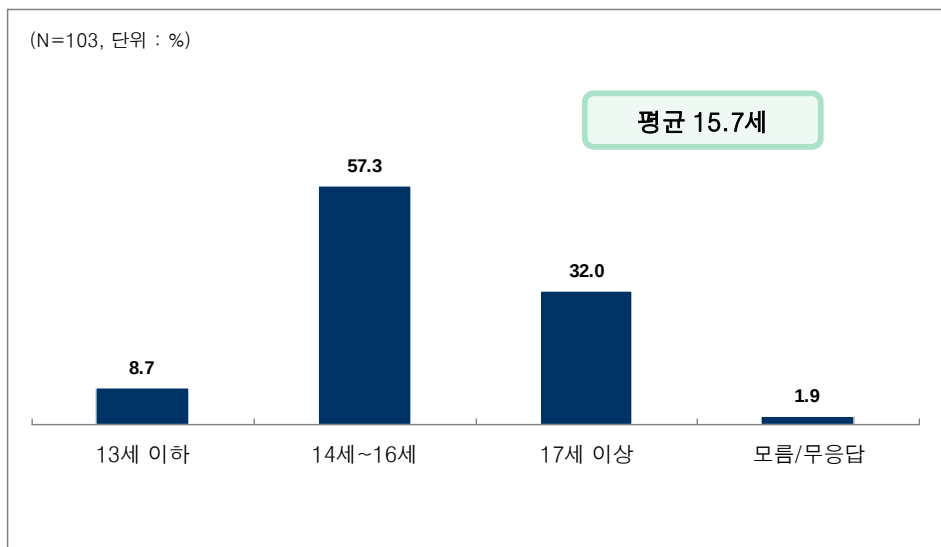
1)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및 이유

가)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해서, 이번 항목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다.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13세 이하’ 9명(8.7%), ‘14~16세’ 59명(57.3%), ‘17세 이상’ 33명(32.0%) 등 응답자 103명 중 68명(66%)이 중학생 나이인 14~16세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나이인 13세 이하의 경우도 9명이나 응답하였다.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4.7세(15.7세)로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은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



나)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 32.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친구의 권유’ 29.1%, ‘호기심에’ 27.2%,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강요에 의해서’와 ‘유혹비가 필요해서’ 15.5%,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서’ 11.7%,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술에 취해서’, ‘성폭행 후 자포자기해서’ 6.8%, ‘모름/무응답’ 3.9%, ‘성형비 마련’ 2.9%, ‘빛이 있어서’, ‘기타’가 2.9%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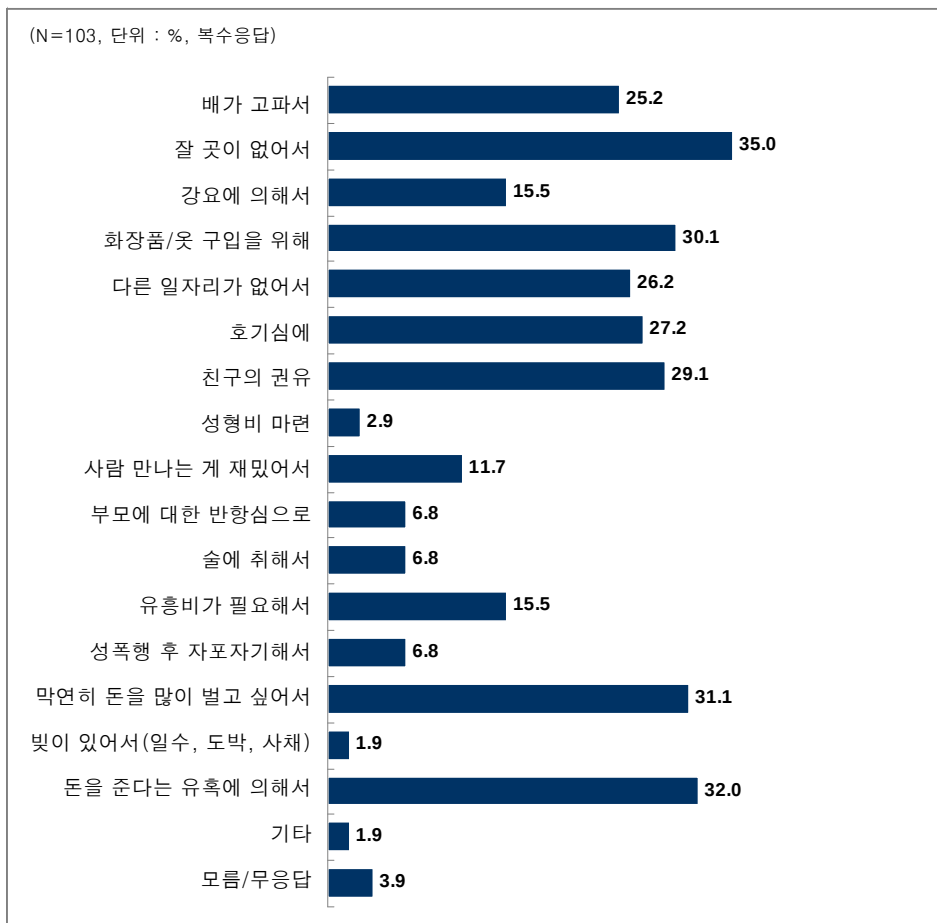
‘잘 곳이 없어서’(35.0%)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와 ‘배가 고파서’(25.2%)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31.1%)와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는 가출상태의 절박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앞의 가출 원인 중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이유와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도한 입시중심의 경쟁사회인 한국사회에서 탈출구가 전혀 없는 심대문화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극대화시키고 있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나 직접 양육자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심대들의 상황에서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심각하게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심대 아동청소년들 특히,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섹시한 ‘걸 그룹’에 열광하는 왜곡된 성인문화의 범람은 심대 아동청소년들에게 섹시가 바로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허상을 만들고 있고, 선호되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 남보다 섹시하기 위해 화장품/옷, 성형비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심대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넘쳐나는 성구매자들의 수요와 자신들의 몸이 재화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상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돈을 준다는 유혹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 또한 성인 성구매자들 역시, 현재 한국사회의 심대 아동청소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건만남 시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액수를 올려가며 집요하게 만남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 ‘가출과 성매매 유입’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 가출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8.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더 분명해 진다. ‘돈을 준다는 유혹에 의해서’(32.0%)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라는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친구의 권유’ 29.1%와 ‘강요에 의해서’ 15.5.% 이 두 응답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위 ‘또래포주’로 친구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지만, 알선자이기도 하여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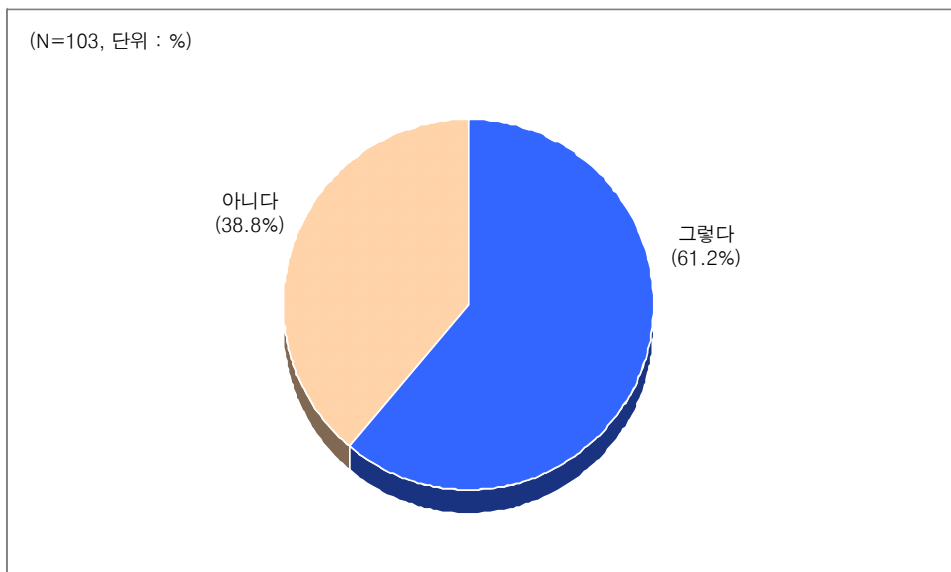
〈그림 11〉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2) 가출과 성매매 유입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38.8%로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그림 12〉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주목할 점은 만 13~14세 연령에서는 가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4.5%로 가출 후 성매매로 이용됐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광범위한 사용은 가정안과 밖, 학교 안과 밖의 경계 또한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조장, 알선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¹⁾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의 시급성을 인식하여야

1) 2016년 10월 11(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과 255개 관련기들과 함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하며, 현재와 같이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출로만 연결된 '특별한 집단'의 '특별한 행동'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대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N=63)의 경우,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 31.7%, '가출 당일' 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 후 1주일 이내(가출 당일 + 다음날~1주일 이내)에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만 13~14세 80.0%, 만 15~16세 59.2%, 만 17~18세 48.4%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가출 후 더 빨리 성매매에 이용되는 심각한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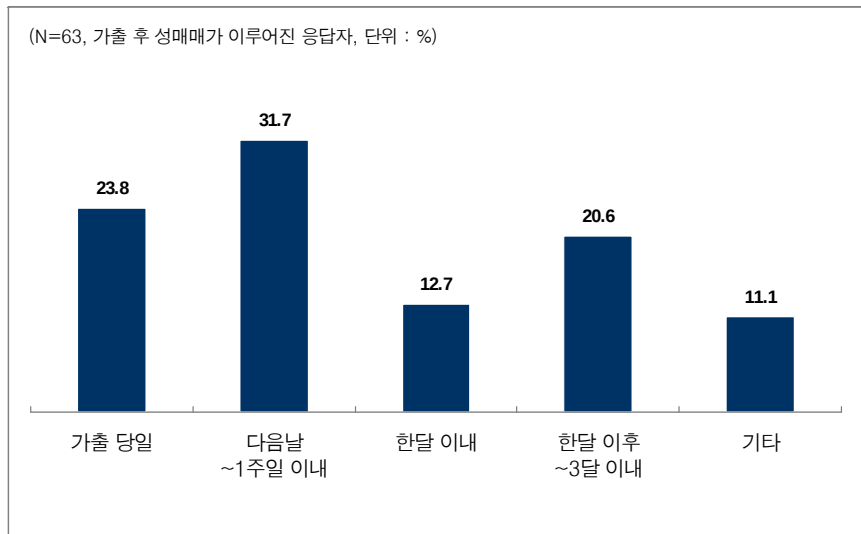
가출당일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미 성매매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휴대가 용이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여 성매매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가출하기 전에 이미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통해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었거나 가출 후에도 충분히 성매매를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집을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가출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매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번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향후 가출과 성매매 유입의 상관관계는 계속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전항 가출과 상관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8.8%에 이른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선 7개 운영자를 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였다.

〈그림 13〉 가출에서 성매매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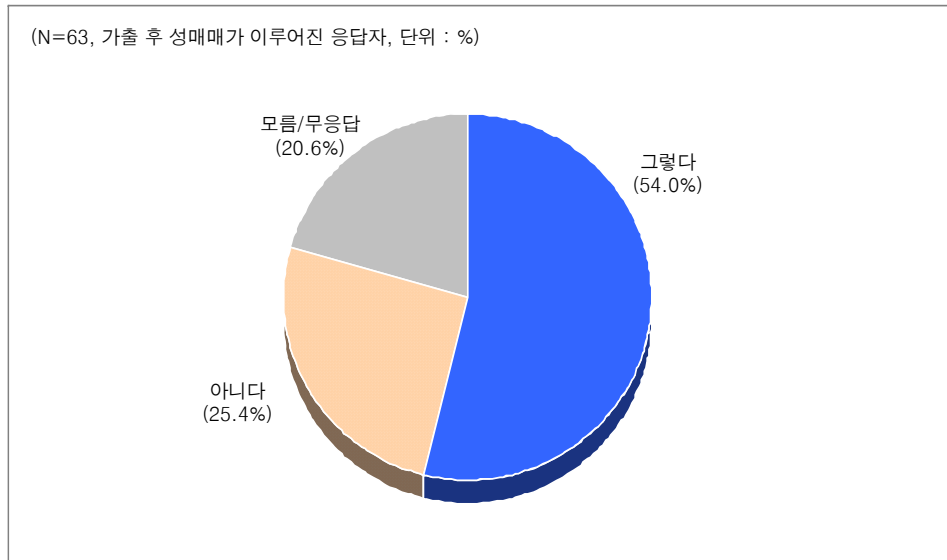
나)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25.4%, 모름/무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7~18세가 58.1%로 16세 이하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출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의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성매매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출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만 17~18세가 그 이하 연령들보다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림 14〉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지 여부



3) 경험한 성매매 유형 및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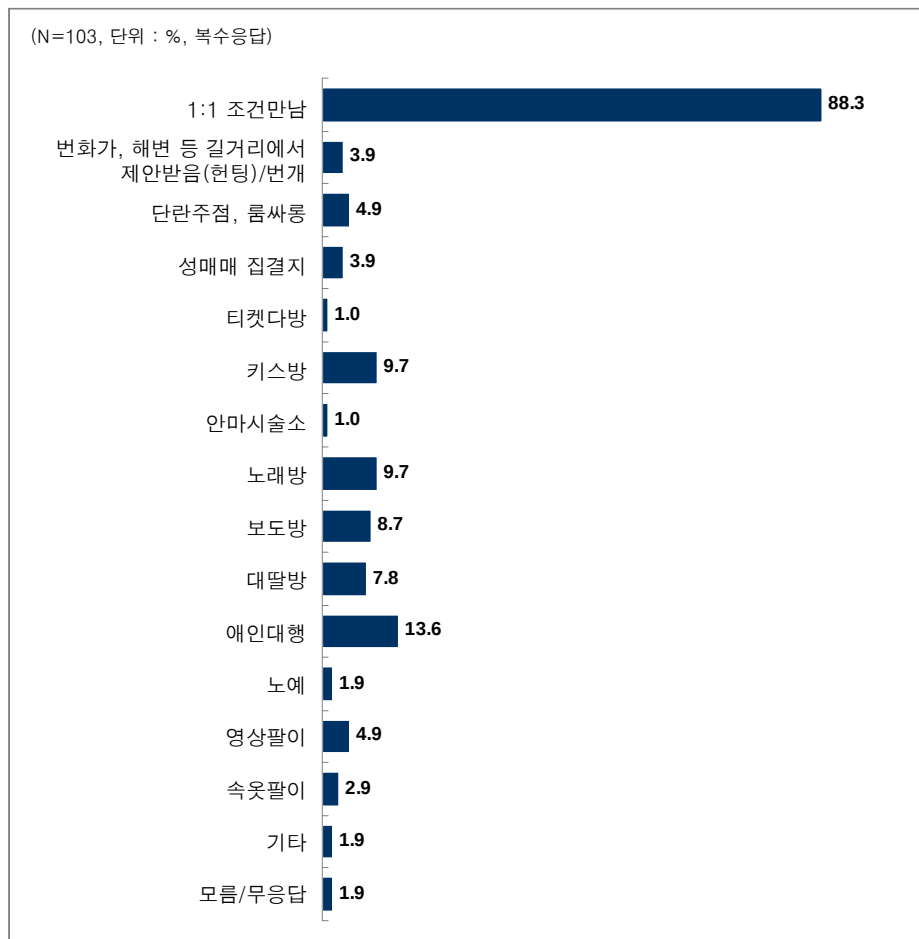
가) 경험한 성매매 유형

지금까지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애인대행’ 13.6%, ‘키스방’과 ‘노래방’ 각각 9.7%, ‘보도방’ 8.7%, ‘대딸방’ 7.8% 등의 순이었고, 단란주점, 룸살롱 4.9%, 성매매 집결지도 3.9%, 티켓다방과 안마시술소도 1.0% 있었다.

미성년자 업소 고용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의 방식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1:1 조건만남 형식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업소형인 키스방, 노래방, 보도방, 대딸방, 단란주점/룸살롱, 티켓다방, 안마시술소의 형태도 많게는 1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이 얼마나 허술한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집결지의 경우다. 4명이 집결지 유형의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만 13-14세 사이의 어린 아이가 성매매집결지 유형에 체크를 하고 있다. 집결지는 가장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 형태로 성매매방지법 이후 경찰에 의한 집중적인 단속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경찰의 중점적인 관리 대상인데 만 13세-14

세의 어린아이를 포함한 아동청소년들이 집결지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어떻게 고용이 가능했는지 성매매 알선자나 그들의 성을 구매하는 성구매자들의 행태가 놀라울 뿐이다. 이들 업소형에 대해서는 또다른 아동청소년 고용이 예측되는 바, 역으로 추적하여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15〉 경험한 성매매 유형(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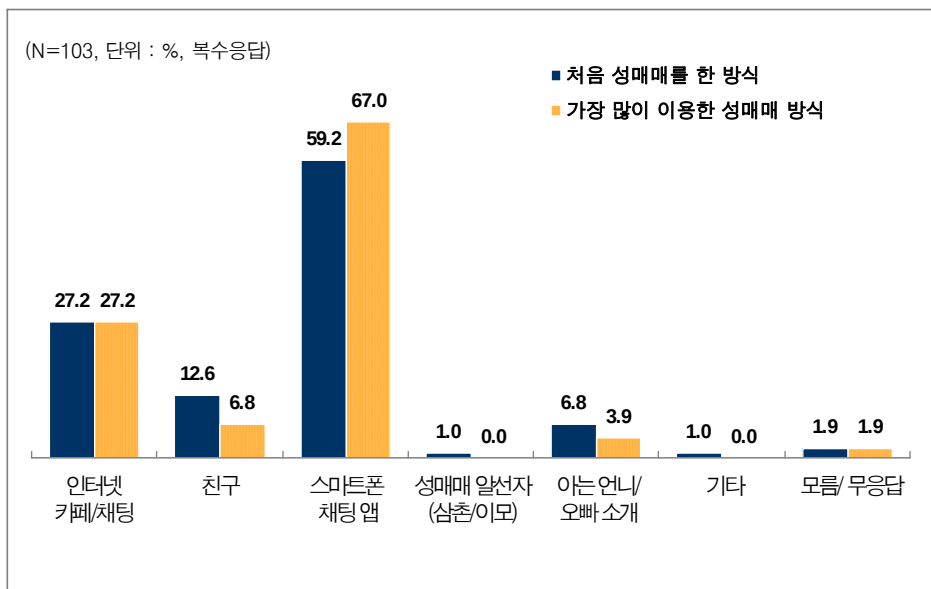


나) 성매매 방식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복수응답)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 ‘친구’ 12.6%, ‘아는 언니/오빠 소개’ 6.8%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 ‘친구’ 6.8%, ‘아는 언니/오빠 소개’ 3.9% 등의 순으로 처음 시작방식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처음 성매매 시작 방식에 비해 ‘스마트폰 채팅 앱’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그림 16〉 성매매 방식(복수응답)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인터넷 채팅/카페’의 응답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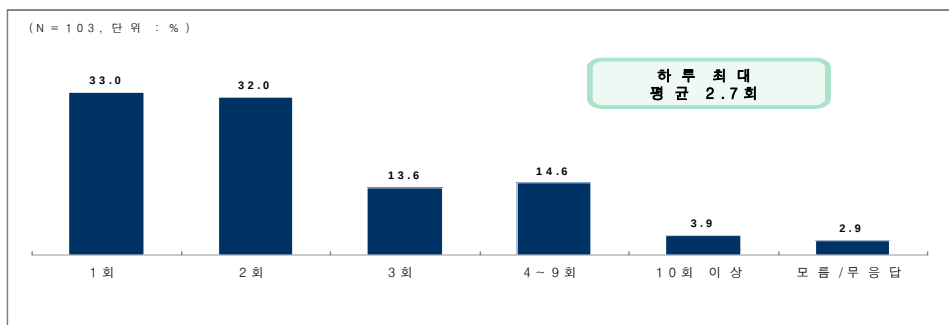
이는 성매매 이용환경의 변천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터넷채팅을 처음 성매매에 이용했다고 응답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채팅은 2-3년전 유행하던 방식이며 성인인증절차와 유료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성인인증절차가 생략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대화 상대방은 무료라는 점에서 성인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유료화된 인터넷 채팅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이동을 하여 현재는 대다수 성매매 유인, 알선, 제공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로는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조사되었다.

〈그림 17〉 하루 최대 성매매(성행위) 횟수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다. 안전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충분한 지지와 배려를 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며, 역으로 하루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 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10회 이상의 내용은 각 10회 2명, 12회, 15회라고 답변하였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들은 흔히들 화장을 하고 옷을 성인처럼 입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들 한다. 그러나 만 13-14세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인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그 연령대를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3-14세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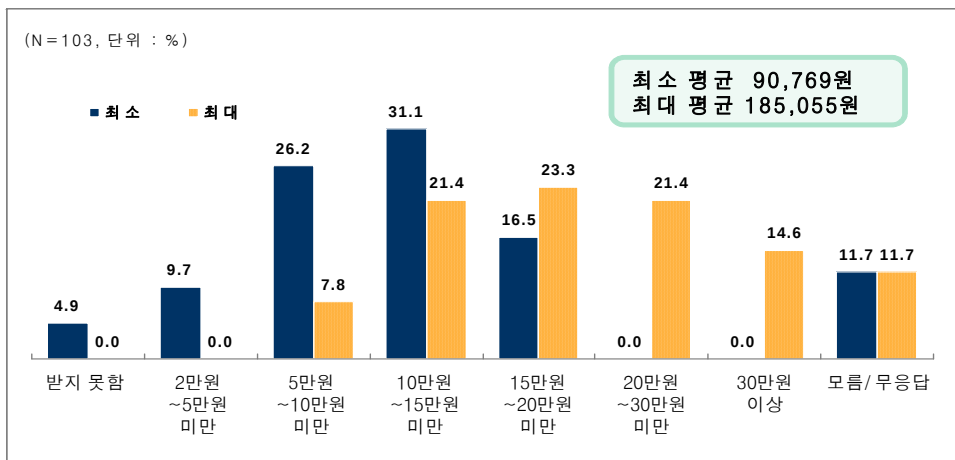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해 하루 최대 10명 이상의 성구매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 이상이다.

한편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한 성매매의 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은 최소 평균 91,000원에서 최대 평균 185,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5명, 4.9%로 나타났다.

〈그림 18〉 성매매 1회당 받은 금액



성매매 1회당 받은 최대금액은 연령별로는 만13~14세가 242,000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금액은 만 15~16세가 77,027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적으로는 최대 500,000만원이라 응답한 금액이 최고가였으며, 20,000원이 받지못함을 제외하고 최소가였다.

최소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지 못했거나 5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약 1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구매하는 이유 중 미성년자의 협상능

력이 떨어져 성매매의 댓가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의도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사실상 알선자가 있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와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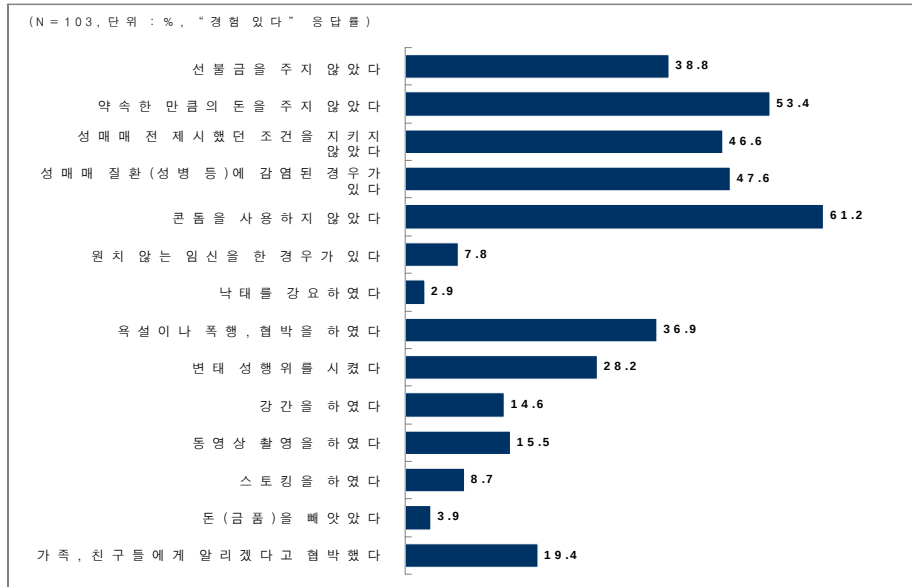
가)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을 살펴보면, 약 20%만이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80%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6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53.4%, ‘성 매개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47.6%,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6.6%,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 38.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6.9%,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28.2%,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5.5%), ‘강간을 하였다’(14.6%),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7.8%), ‘돈을 빼앗겼다’(3.9%), ‘낙태를 강요하였다’(2.9%) 등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별로 만13~14세의 경우 ‘선불금을 주지 않았다’와 ‘성매개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각각 54.5%),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45.5%), ‘강간을 하였다’와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각각 27.3%) 등의 부당경험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과 영상촬영,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 등은 성매매 당시에만 작용하는 ‘부당한 경험’이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병에 걸리거나 낙태를 강요하는 것 등은 가장 극단적인 성착취의 방법이다. 즉 성매매의 경험 안에 성구매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강도 높은 성착취의 경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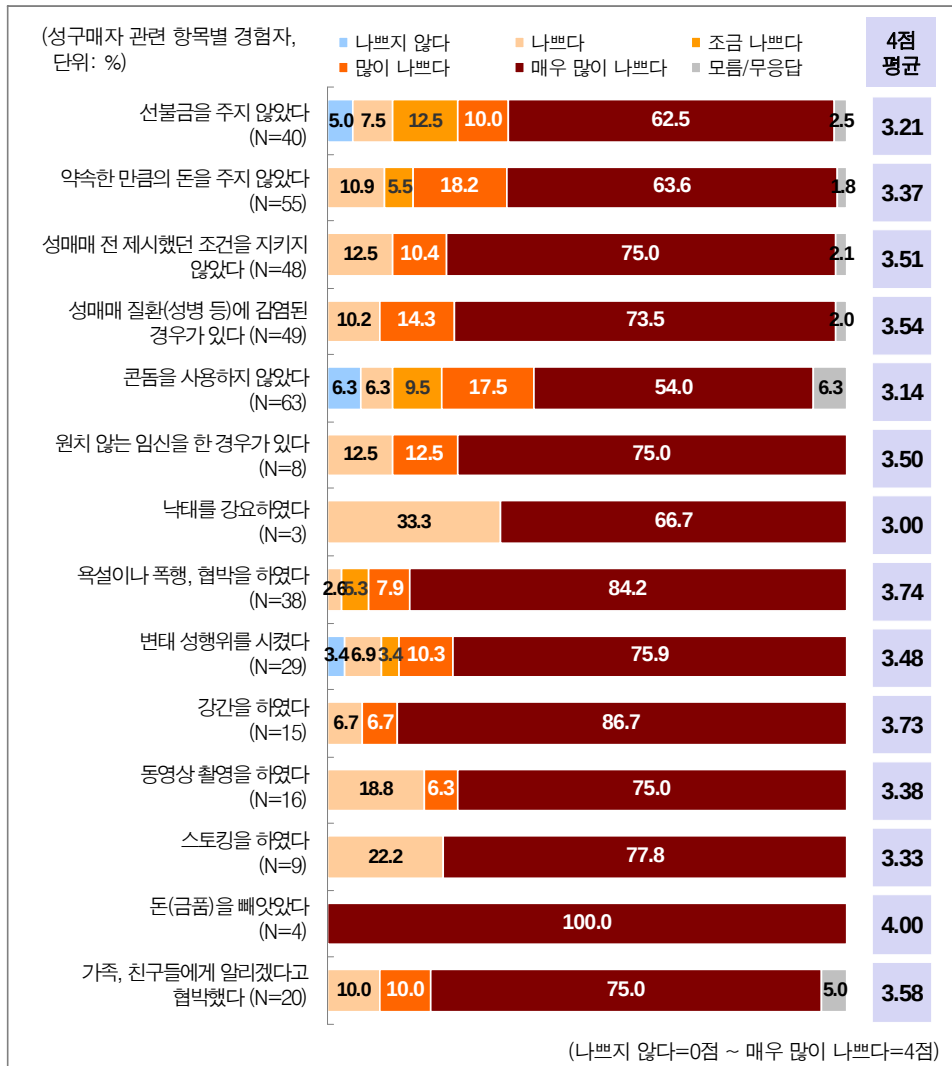


나) 성매매 상대방 관련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돈(금품)을 빼앗겼다’(4.00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74점, ‘강간을 하였다’ 3.73점,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3.58점, ‘성매매 질환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3.54점,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3.51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전 선불을 주지 않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2명이었으며, 모름/무응답도 1명이 있었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이 4명이었고, 모름/무응답도 4명이었다.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는 데 대해서도 인권침해로 생각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은 1명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인권침해라 생각하지 않을 경우, 훨씬 높은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여지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20〉 성매매 상대방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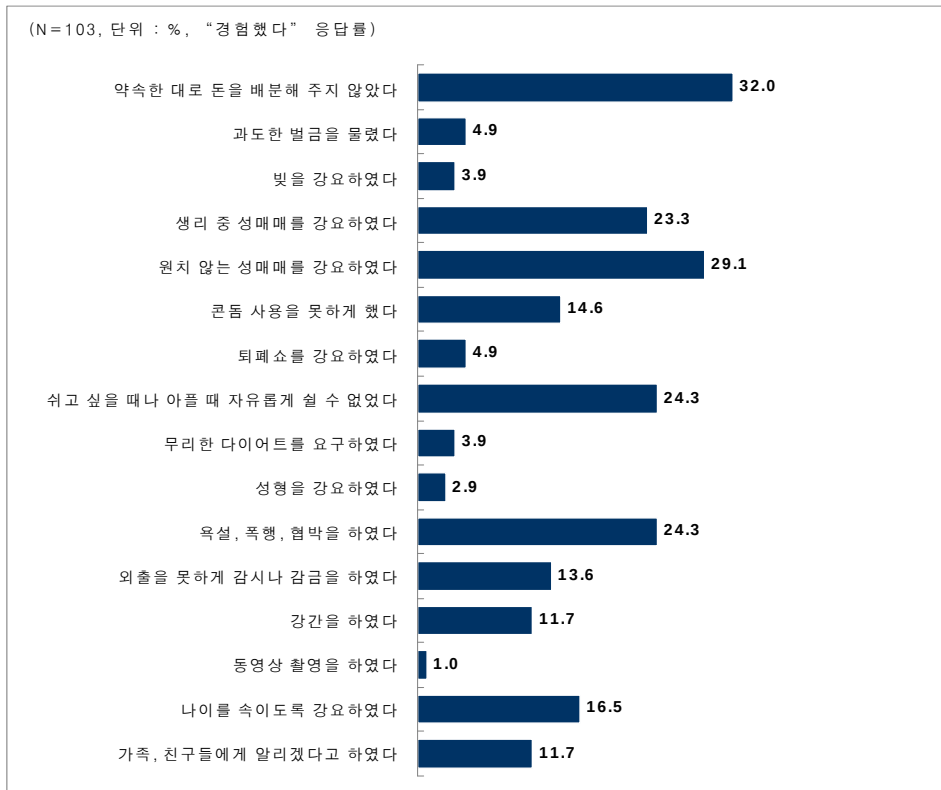
다)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성매매 알선자와 관련된 부당한 경험들을 살펴보면, ‘약속한 대로 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9.1%,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 각각 24.3%,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23.3% 등의 순서였다.

이 항목에서는 조건만남을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인 업소형태의 성매매 방식의 알선자의 인권침해 방식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형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선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답변한 응답도 12명(11.7%)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1〉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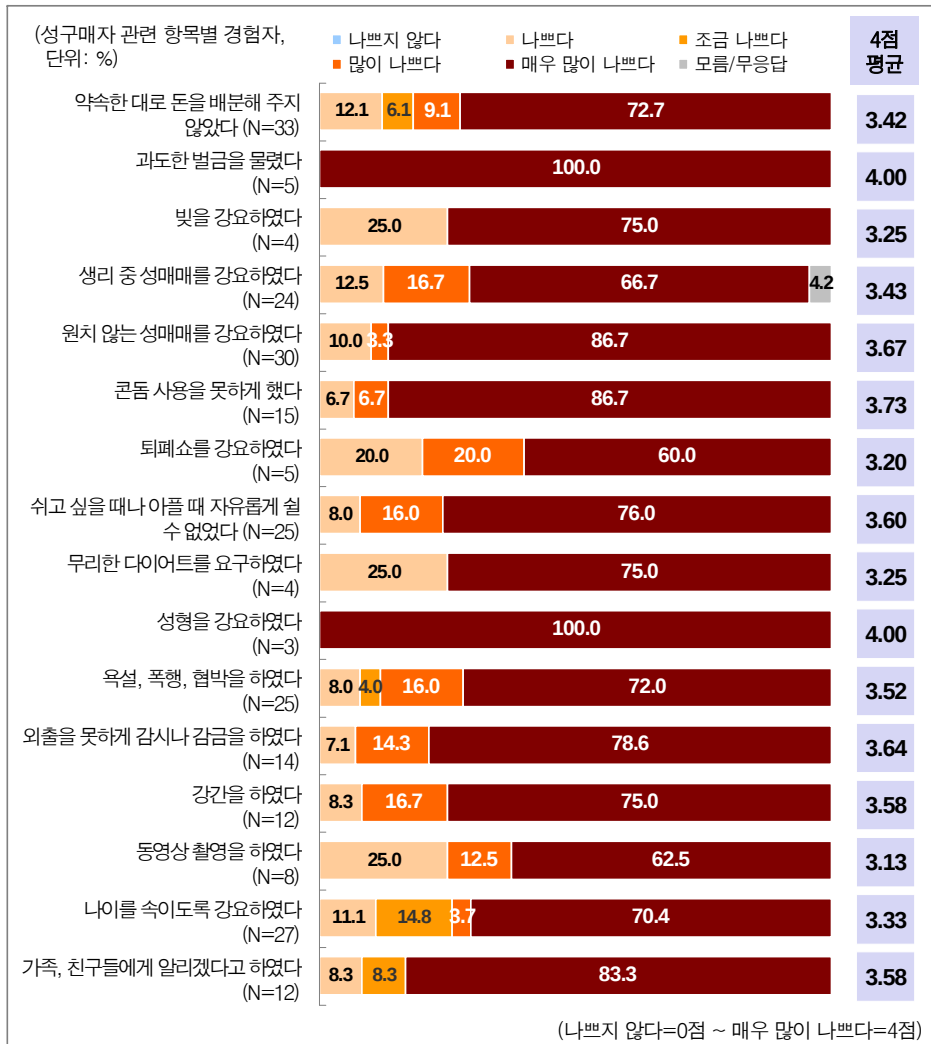
연령별로 만13~14세의 경우 ‘생리 중 성매매를 강요하였다’(36.4%), ‘욕설, 폭행, 협박을 하였다’(45.5%), ‘강간을 하였다’(36.4%),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줬다고 하였다’(18.2%) 등은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관련 부당경험이 “모두 없음”이 20.4%인 반면 성매매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은 “모두 없음”이 54.4%로 나타나 성매매 상대방 관련 부당경험이 알선자 관련 부당경험보다 약 34% 높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구매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 성매매 알선자 관련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가장 인권침해가 심각한 항목은 ‘과도한 벌금을 물렸다’와 ‘성형을 강요하였다’(각각 4.00점)였으며, 그 다음으로 ‘콘돔 사용을 못하게 했다’(3.73점), ‘원치 않는 성매매를 강요했다’(3.67점), ‘외출을 못하게 감시나 감금을 하였다’(3.64점), ‘쉬고 싶을 때나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3.60점)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22〉 성매매 알선자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5)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중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와 ‘조금 아니다’ 각각 15.5%, ‘그렇다’ 30.1%, ‘조금 그렇다’ 26.2%, ‘매우 그렇다’ 11.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3.5%가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만약 성매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45.6%, ‘조금 아니다’ 11.7%, ‘그렇다’ 24.3%, ‘조금 그렇다’ 11.7%, ‘매우 그렇다’ 5.8%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53.4%가 고소하지 않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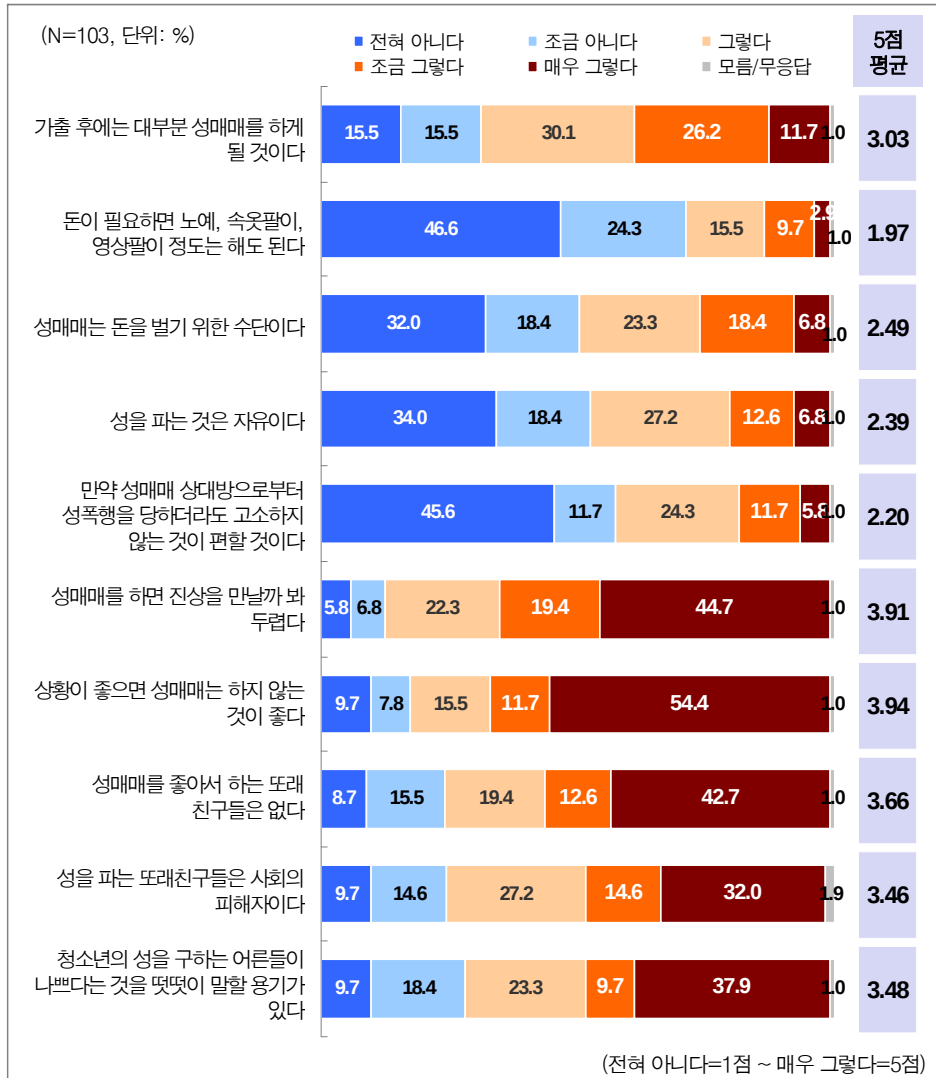
“성매매를 하면 진상을 만날까 봐 두렵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 5.8%, ‘조금 아니다’ 6.8%, ‘그렇다’ 22.3%, ‘조금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44.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3.2%로 대부분이 두려움을 나타냈다.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 8.7%,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19.4%, ‘조금 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42.7%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90.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을 파는 또래친구들은 사회의 피해자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9.7%, ‘조금 아니다’ 14.6%, ‘그렇다’ 27.2%, ‘조금 그렇다’ 14.6%, ‘매우 그렇다’ 32.0%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 2명(1.9)을 제외하면 88.4%가 동의의사를 표했다.

“청소년의 성을 구하는 어른들이 나쁘다는 것을 몇몇이 말할 용기가 있다” 항목의 경우, ‘전혀 아니다’ 9.7%, ‘조금 아니다’ 18.4%, ‘그렇다’ 22.3%, ‘조금 그렇다’ 9.7%, ‘매우 그렇다’ 37.9% 등 ‘전혀 아니다’와 ‘모름/무응답’을 제외하면 89.3%가 용기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23〉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1) 성매매관련 수사기관에서의 경험

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이 51.5%, 받은 경험이 없다가 48.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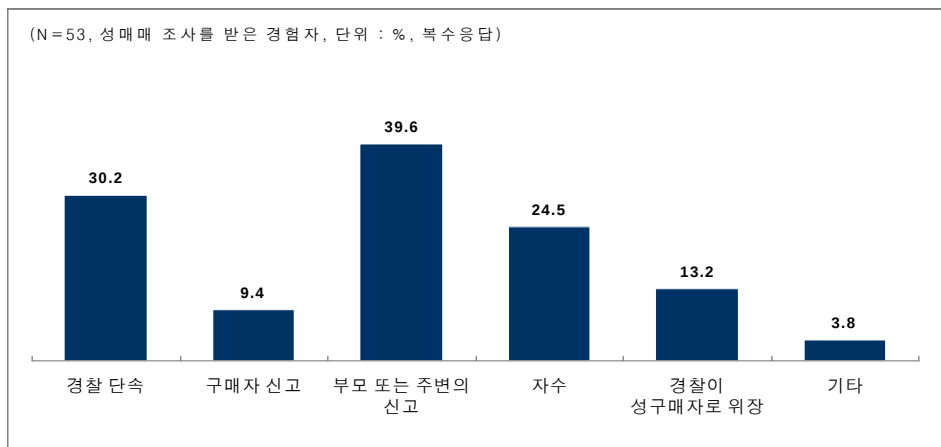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3세~14세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만15세~16세 55.0%, 만17세~18세가 46.2%로 연령이 낮을수록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본집단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표본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피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집단이다.

나)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다.

〈그림 24〉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복수응답)



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우 단속시기 및 실제 성행위 경험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N=7),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로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단속을 빌미로 오히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가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경찰 내부에 함정수사를 포함하여 단속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을 강력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우, 경찰과의 성행위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7	2 (28.6)	4 (57.1)	1 (14.3)
연령	만 15~16세	3	2 (66.7)	1 (33.3)	0 (0.0)
	만 17~18세	4	0 (0.0)	3 (75.0)	1 (25.0)

라)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의 신분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의 신분은 ‘피해자’가 6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피의자’ 11.3%, ‘참고인’ 9.4%, ‘모른다’ 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 받았을 당시의 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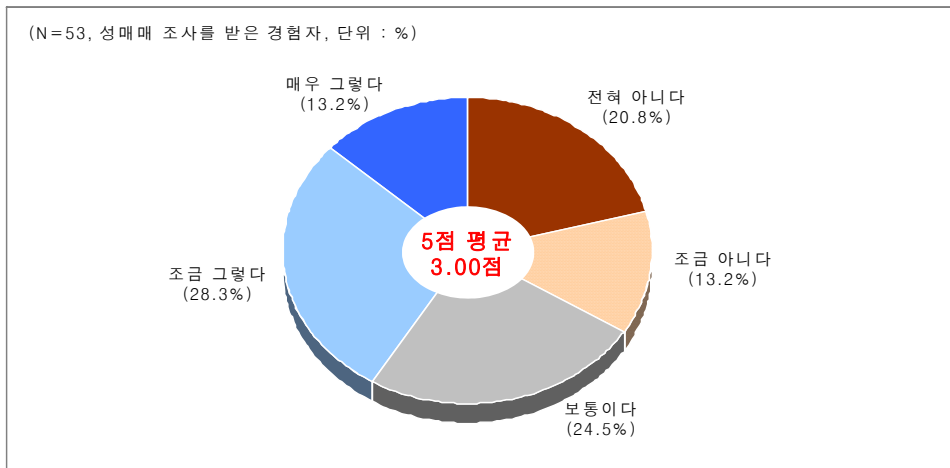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모른다
전 체		53	34 (64.2)	5 (9.4)	6 (11.3)	8 (15.1)
연령	만 13~14세	7	4 (57.1)	1 (14.3)	0 (0.0)	2 (28.6)
	만 15~16세	22	13 (59.1)	2 (9.1)	4 (18.2)	3 (13.6)
	만 17~18세	24	17 (70.8)	2 (8.3)	2 (8.3)	3 (12.5)

마)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며, ‘아니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됨. ‘보통이다’는 응답은 24.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의 비율이 만13~14세의 28.6%, 만15~16세의 45.5%, 만17~18세의 41.7%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였다. 앞의 항목에서 64.2%가 피해자로 조사받았다고 답변한 것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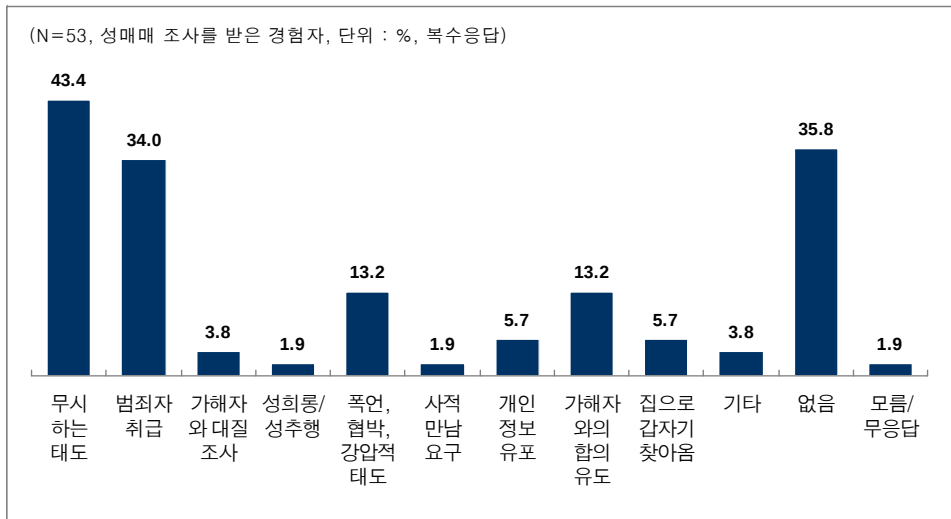
〈그림 25〉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 ‘개인정보유포’와 ‘집으로 갑자기 찾아옴’이 5.7% 등의 순으로 조사됨. 35.8%는 ‘없음’으로 응답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와 ‘사적 만남 요구’가 각각 1명씩(1.9%) 답변을 한 점이다. 기타 답변으로 ‘감금’ 1명(1.9%), ‘신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1명(1.9%)도 있었다. 특히 ‘가해자와의 합의 유도’가 있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명(13.2%)이 있었는데,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사관이 합의를 유도한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 보여진다.

〈그림 26〉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복수응답)



사)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8.9%, ‘조금 그렇다’ 13.2%, ‘그렇다’ 35.8%, ‘조금 아니다’ 16.98%, ‘전혀 아니다’ 13.21%, ‘모름/무응답’ 1.89%로 조사되었다.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0.8%, ‘조금 그렇다’ 15.1%, ‘그렇다’ 34.0%, ‘조금 아니다’ 18.9%, ‘전혀 아니다’ 9.4%, ‘모름/무응답’ 1.9%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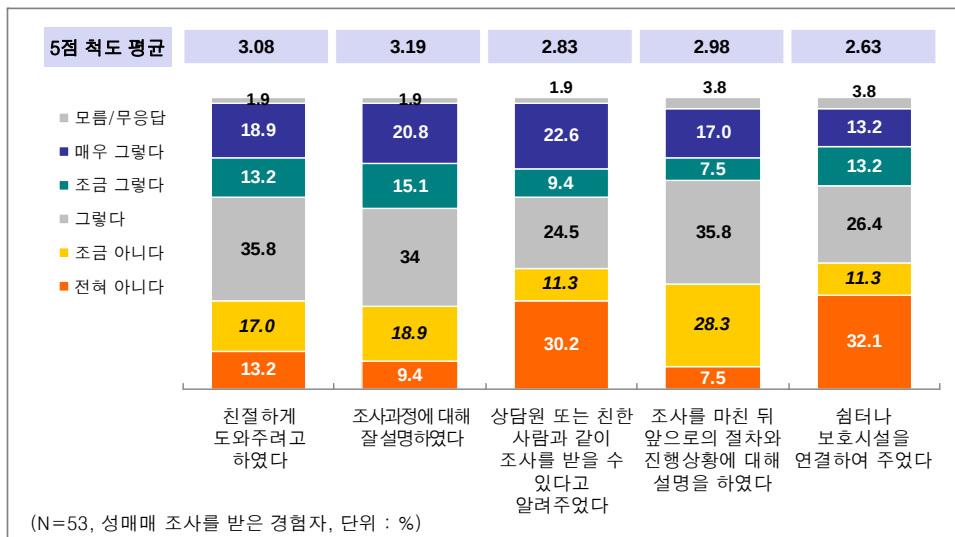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6%, ‘조금 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0.2%로 조사되었다.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의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7.0%, ‘조금 그렇다’ 7.5%, ‘그렇다’ 35.8%, ‘조금 아니다’ 28.3%, ‘전혀 아니다’ 7.5%, ‘모름/무응답’ 3.8%로 조사되었다.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3.2%, ‘조금 그렇다’ 13.2%, ‘그렇다’ 26.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2.1%로 조사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와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라는 점이다.

〈그림 27〉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태도



2) 성매매 관련 법원에서의 경험

가)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출석요구를 받은 경험

90.3%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9.7%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7〉 성매매 관련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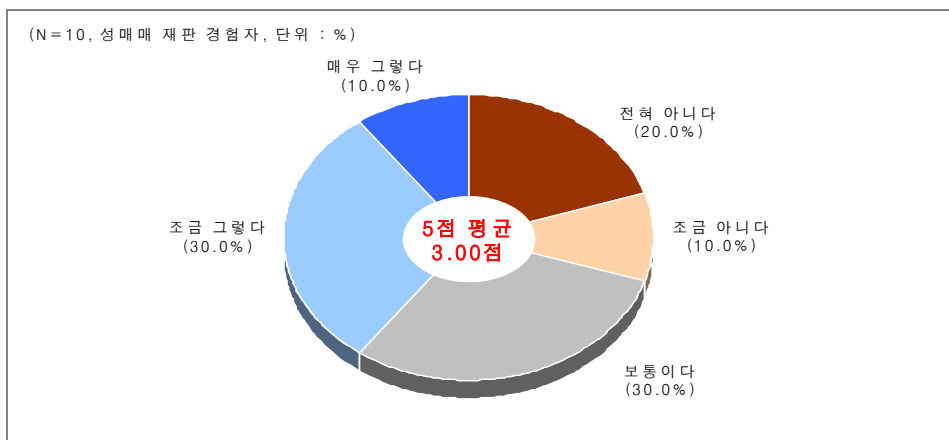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3	10 (9.7)	93 (90.3)
연령	만 13~14세	11	0 (0.0)	11 (100.0)
	만 15~16세	40	5 (12.5)	35 (87.5)
	만 17~18세	52	5 (9.6)	47 (90.4)

나)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0%, ‘조금 그렇다’ 30.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0%, ‘조금 아니다’ 10.0% 등 ‘아니다’는 응답은 30.0%로 조사됨.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였다.

〈그림 28〉 법원에서 성매매 관련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



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10명 중 3명만 경험이 있었다.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의 유형으로는 ‘감호위탁’, ‘소년원 입소’, ‘수강명령’ 각각 1명이었다.

〈표 8〉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	3 (30.0)	7 (70.0)
연령	만 15~16세	5	1 (20.0)	4 (80.0)
	만 17~18세	5	2 (40.0)	3 (60.0)

〈표 9〉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 유형

(단위 : 명, %)

		사례수	감호위탁	수강명령	소년원 입소
전 체		3	1 (33.3)	1 (33.3)	1 (33.3)
연령	만 15~16세	1	0 (0.0)	1 (100.0)	0 (0.0)
	만 17~18세	2	1 (50.0)	0 (0.0)	1 (50.0)

라)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성매매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응답자 3명 중 2명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고, 1명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전체 응답자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평소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르겠다’가 32%,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18.4%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처벌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다’, ‘실적올리려고 한다’, ‘처벌이 아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가 각각 1명씩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교육이라기 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의미조차 모르는 경우도 1/3이 되어 보호처분의 목적과 달리 실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표 10〉 보호처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사례수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모르겠다
전 체		3	2 (66.7)	1 (33.3)
연령	만 15~16세	1	0 (0.0)	1 (100.0)
	만 17~18세	2	2 (100.0)	0 (0.0)

〈표 11〉 보호처분에 대한 평소생각

(단위 : 명, %)

		사례수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3	19 (18.4)	48 (46.6)	32 (31.1)	3 (2.9)	1 (1.0)
연령	만 13~14세	11	2 (18.2)	4 (36.4)	5 (45.5)	0 (0.0)	0 (0.0)
	만 15~16세	40	9 (22.5)	22 (55.0)	8 (20.0)	1 (2.5)	0 (0.0)
	만 17~18세	52	8 (15.4)	22 (42.3)	19 (36.5)	2 (3.8)	1 (1.9)

라. 아동·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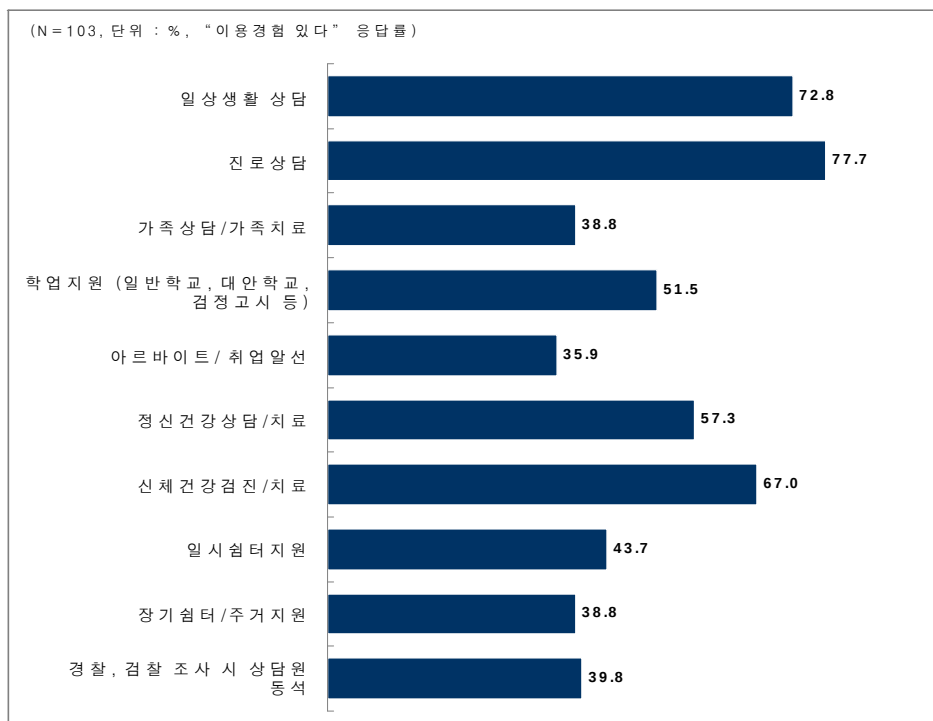
1)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 경험

성매매와 관련한 지원/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상담’이 7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 상담’ 72.8%, ‘신체건강검진/치료’ 67.0%, ‘정신건강상담/치료’ 57.3%, ‘학업지원(일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51.5%, ‘일시쉼터지원’ 43.7%, ‘경찰, 검찰 조사 시 상담원 동석’ 39.8%, ‘가족상담/가족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 각각 38.8%, ‘아르바이트/취업알선’ 3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17세~18세가 ‘아르바이트/취업알선’(46.2%)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이 높았다.

학교재학 여부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일시쉼터지원’이 56.1%로 학교를 다니는 응답자(35.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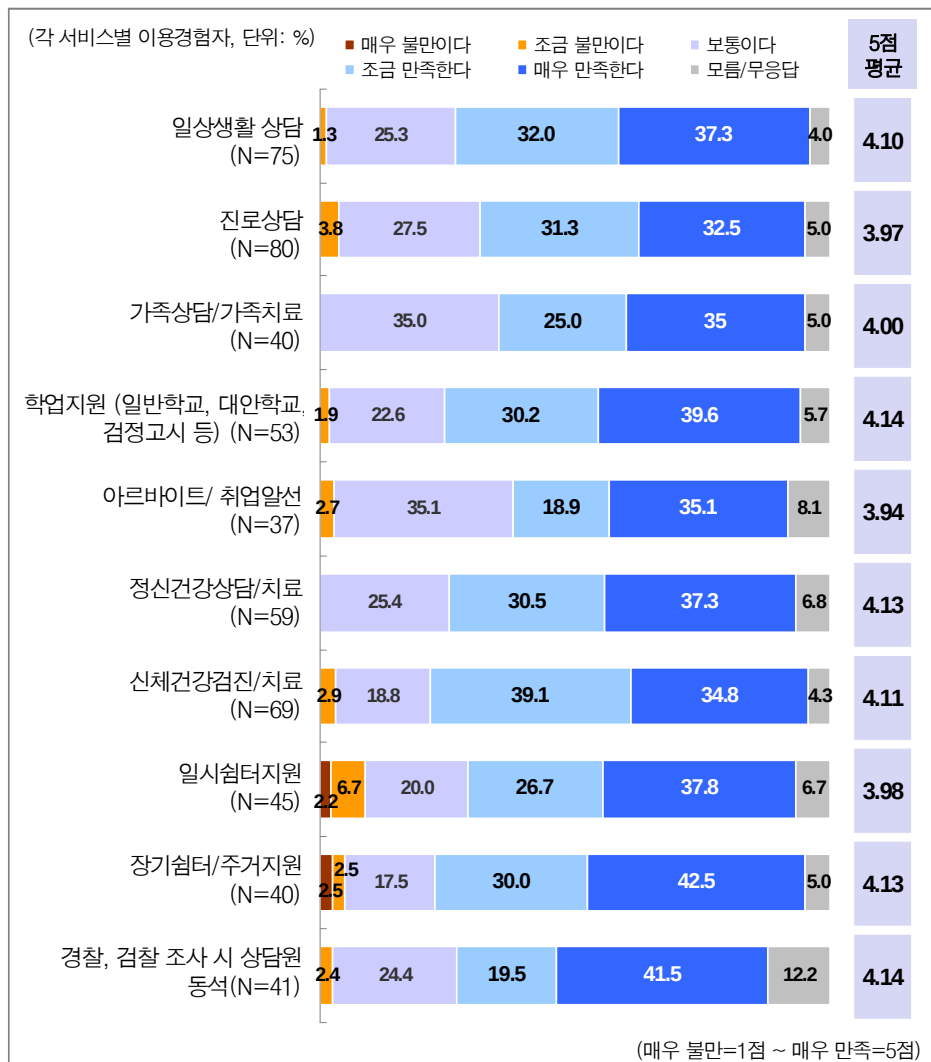
〈그림 29〉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이용경험



2)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

‘학업지원’과 ‘경찰, 검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이 각각 4.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건강상담/치료’와 ‘장기쉼터/주거지원’이 각각 4.13점 등의 순이었다. ‘아르바이트/취업알선’은 3.9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성매매 도움 관련 서비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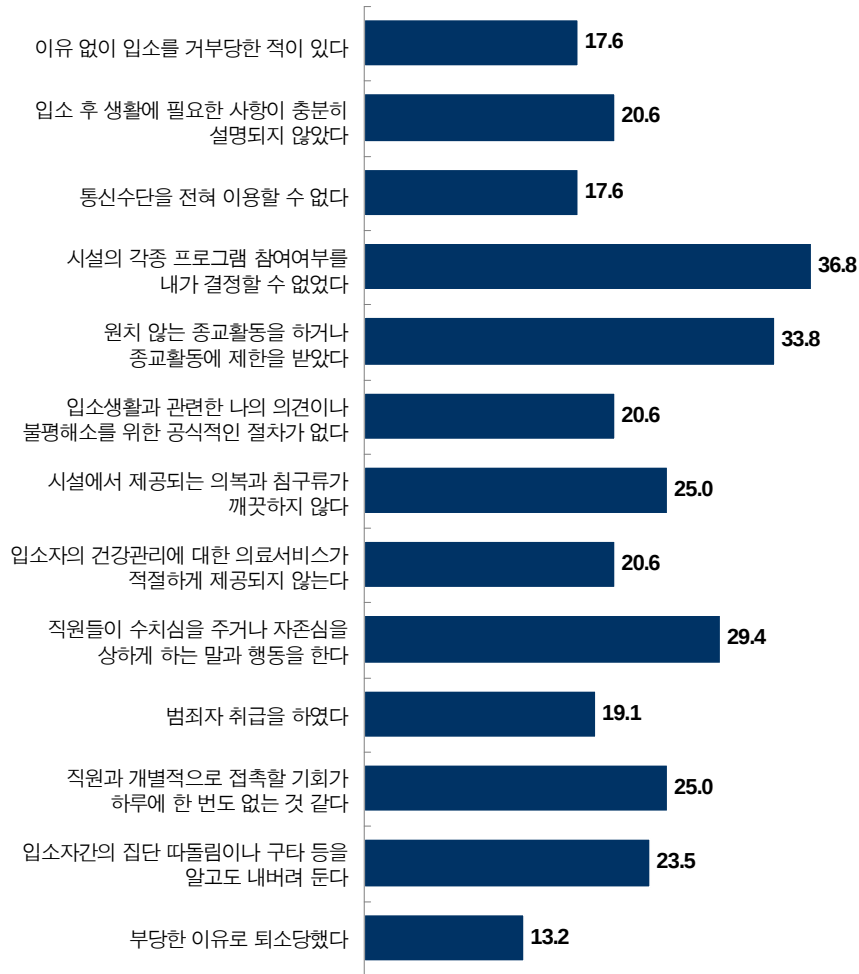
3)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N=68)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복과 침구류가 깨끗하지 않다’와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각각 2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모두 없음’이 47.1%이다.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6%,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20.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20.6%,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20.6%,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9.1%,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했다’ 13.2%로 쉼터 서비스 이용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충분히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진 통로나 충분히 공유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1〉 쉼터 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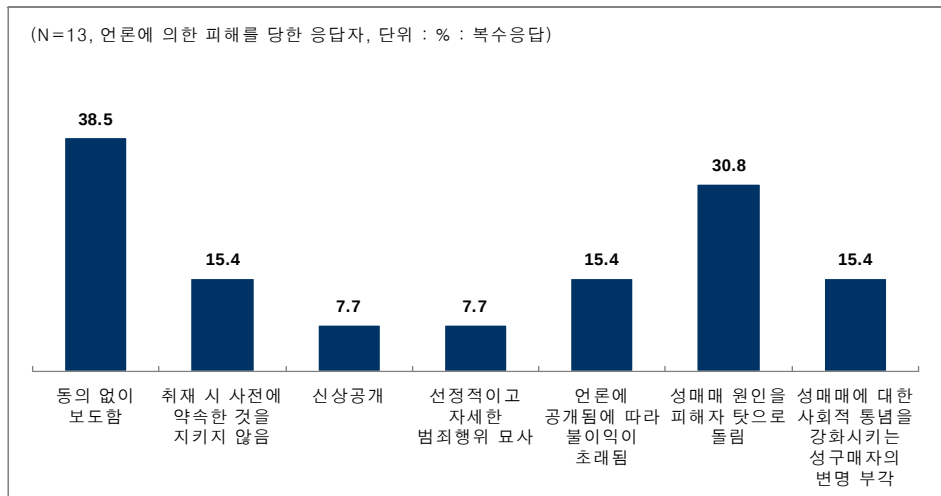
(N=68, 쉼터이용자, 단위 : %, “예” 응답률)



4) 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

‘동의 없이 보도함’이 3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성매매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림’ 30.8%, ‘취재 시 사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음’,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불이익이 초래됨’,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성구매자의 변명 부각’이 각각 1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신상이 공개되었다’ 고 한 답변 1명 (7.7%)도 있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됨으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는 답변이 2명 (15.4%)가 있어 언론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림 32〉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구체적인 피해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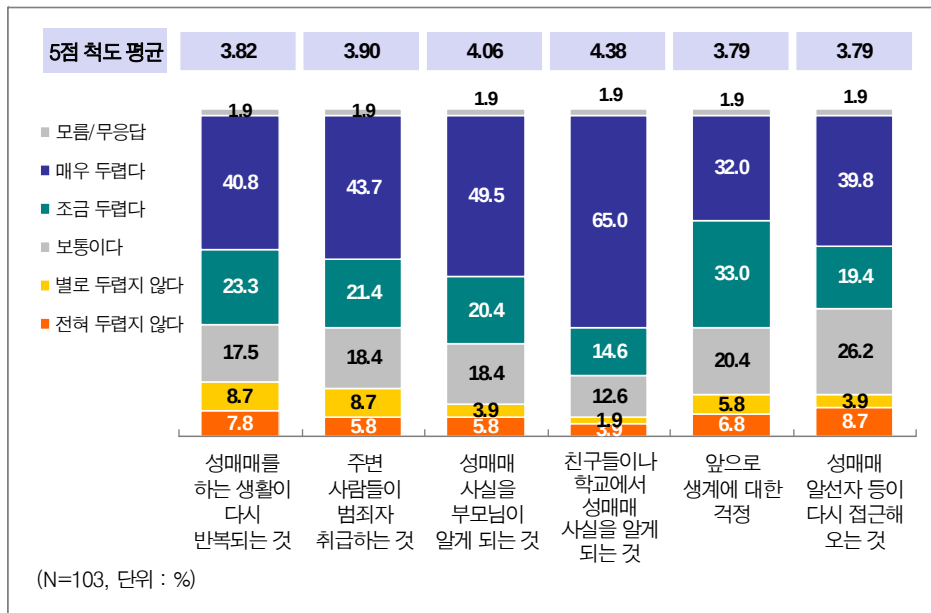


5)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점,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하는 것’ 3.90점,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 3.82점, ‘성매매를 하는 생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과 ‘앞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이 각각 3.79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13~14세의 경우 ‘성매매 알선자 등이 다시 접근해 오는 것’(4.27점)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미래 상황에 대한 두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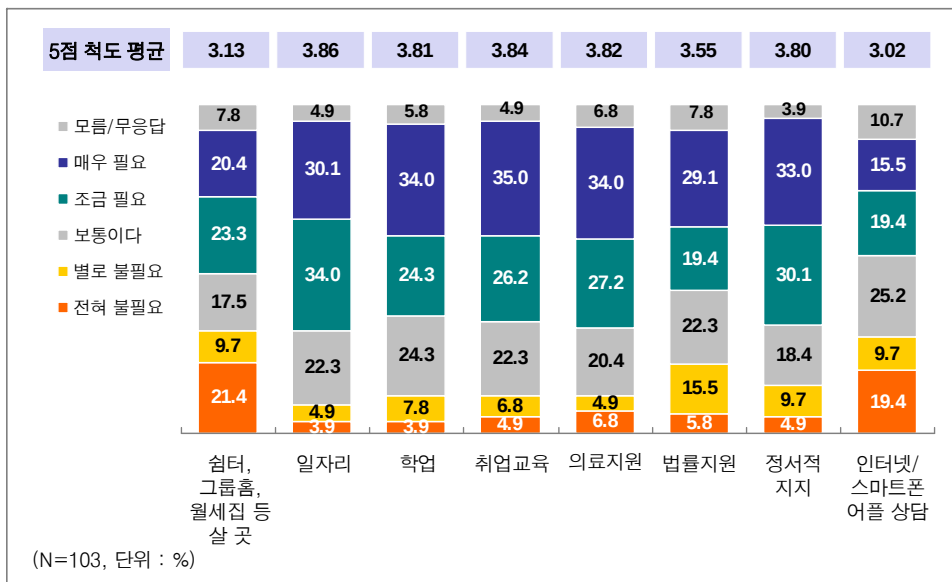


6)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일자리’(3.86점)이 가장 필요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법률지원’(3.55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3.13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3.02점)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13~14세의 경우 ‘정서적지지’(4.09점)와 ‘일자리’와 ‘의료지원’(각각 3.90점)의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15~16세의 경우는 ‘학업’(3.86점), ‘의료지원’(3.82점)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았다. 만17~18세의 경우는 ‘일자리’(4.04점), ‘취업교육’(4.00점)등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항목별 도움이 필요한 정도



3. 업무 담당자 조사 결과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식 관련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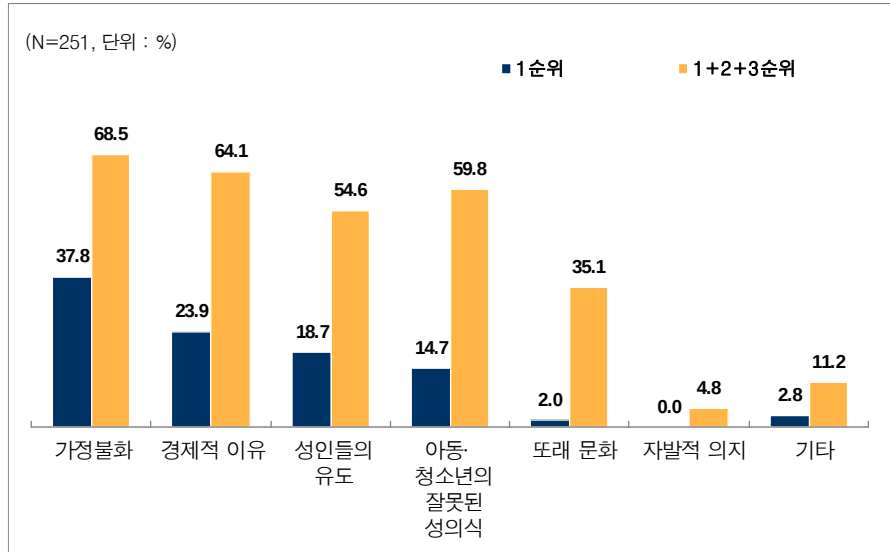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대한 1순위 응답률은 ‘가정불화’가 3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 23.9%, ‘성인들의 유도’ 18.7%,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14.7%, ‘또래 문화’ 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이 ‘성인들의 유도’ 보다 조금 더 응답률이 높은 것 외에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가 1, 2 순위를 차지하는 등 비슷하다. 업무담당자들이 아동·청소년성매매의 원인으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앞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실태와 유사하다.

주목할 점은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에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또래문화’, ‘자발적 의지’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하는 응답률이 1순위 응답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속기관별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가정불화’를 60%, 경찰이 ‘경제적 이유’를 37.5%로 타 기관들에 비해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원인 중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보다 ‘성인들의 유도’에 더 비중을 두는데 반하여, ‘위센터’, ‘경찰’ 및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70%)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은 매우 높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제적 이유’가 35%로 여성(20.4%)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여성은 ‘성인들의 유도’가 22%로 남성(8.3%)에 비해 높다.

〈그림 35〉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표 12〉 아동·청소년 성매매 원인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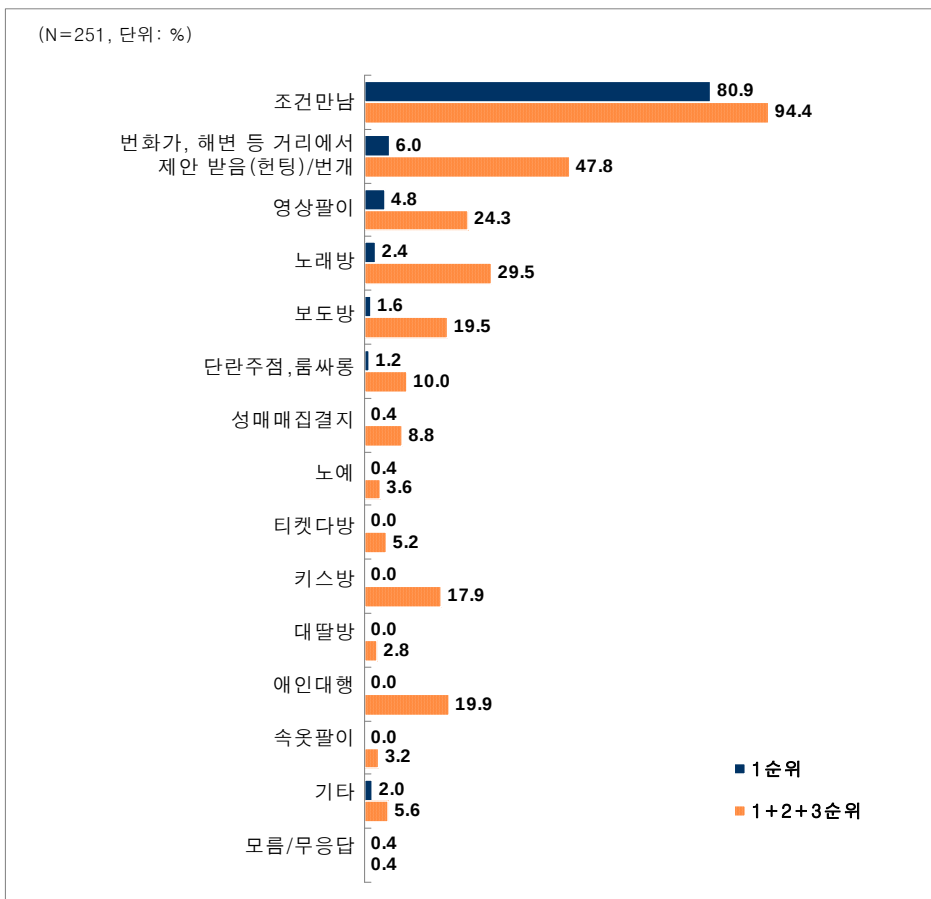
(단위 : 명, %)

		사례수	경제적 이유	가정불화	성인들의 유도	아동·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또래 문화	기타
전 체		251	60 (23.9)	95 (37.8)	47 (18.7)	37 (14.7)	5 (2.0)	7 (2.8)
소 속 기 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8 (20.0)	24 (60.0)	4 (10.0)	3 (7.5)	0 (0.0)	1 (2.5)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5 (17.9)	10 (35.7)	10 (35.7)	3 (10.7)	0 (0.0)	0 (0.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4 (21.1)	7 (36.8)	6 (31.6)	2 (10.5)	0 (0.0)	0 (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2 (26.1)	17 (37.0)	10 (21.7)	5 (10.9)	1 (2.2)	1 (2.2)
	위센터	28	6 (21.4)	10 (35.7)	3 (10.7)	6 (21.4)	1 (3.6)	2 (7.1)
	성문화 센터	32	6 (18.8)	5 (15.6)	11 (34.4)	5 (15.6)	2 (6.3)	3 (9.4)
	경찰	48	18 (37.5)	21 (43.8)	3 (6.3)	6 (12.5)	0 (0.0)	0 (0.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 사원	10	1 (10.0)	1 (10.0)	0 (0.0)	7 (70.0)	1 (10.0)	0 (0.0)
성 별	남성	60	21 (35.0)	24 (40.0)	5 (8.3)	10 (16.7)	0 (0.0)	0 (0.0)
	여성	191	39 (20.4)	71 (37.2)	42 (22.0)	27 (14.1)	5 (2.6)	7 (3.7)

2)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1순위 응답률은 ‘조건 만남’이 80.9%를 차지하고 있다. 3순위까지의 복수응답 결과로는 ‘조건만남’ 94.4%, ‘번화가, 해변 등 거리에서 제안 받음(헌팅)/번개’ 47.8%, ‘노래방’ 29.5%, ‘영상팔이’ 24.3%, ‘애인대행’ 19.9%, ‘키스방’ 17.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만남 어플/채팅 어플’과 ‘PC방’, ‘숙식제공’ 등이 있었다.

〈그림 36〉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표 13〉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매매 종류 - 1순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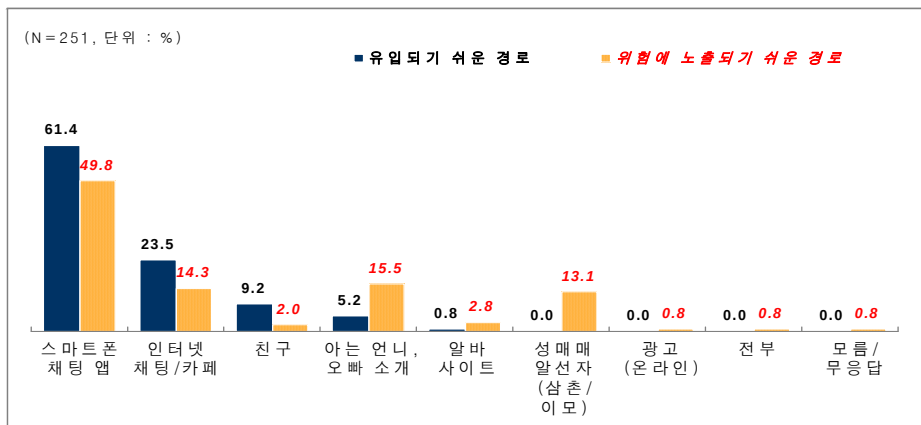
	사례 수	조건 만남	(헌팅) /번개	단란 주점, 룸싸롱	성매매 집결지	노래방	보도방	노예	영상 팔이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251	203 (80.9)	15	3	1	6	4	1	12	5	1
소 속 기 관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40	37 (92.5)	0	0	0	1	1	0	1	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26 (92.9)	2	0	0	0	0	0	0	0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9	19 (100)	0	0	0	0	0	0	0	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26 (56.5)	8	2	1	2	1	4	0	1
	위센터	28	19 (67.9)	1	0	0	2	2	0	2	0
	성문화 센터	32	25 (78.1)	2	0	0	0	0	3	2	0
	경찰	48	42 (87.5)	2	1	0	0	0	2	1	0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10	9 (90.0)	0	0	0	1	0	0	0	0
성 별	남성	60	49 (81.7)	3	1	0	0	1	0	5	1
	여성	191	154 (80.6)	12	2	1	6	3	1	7	4

3)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 및 위험에 이용되기 쉬운 경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채팅/카페’ 23.5%, ‘친구’ 9.2%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가장 위험(폭력/진상)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는 언니, 오빠 소개’ 15.5%, ‘인터넷 채팅/카페’ 14.3%, ‘성매매 알선자’ 1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의견으로 ‘전부’라고 응답한 경우도 2명 있었다.

〈그림 37〉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



〈표 14〉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

(단위 : 명, %)

		사례수	인터넷 채팅/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알바사이트	아는 언니, 오빠 소개
전 체		251	59 (23.5)	23 (9.2)	154 (61.4)	2 (0.8)	13 (5.2)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11 (27.5)	2 (5.0)	25 (62.5)	0 (0.0)	2 (5.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2 (7.1)	2 (7.1)	22 (78.6)	0 (0.0)	2 (7.1)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2 (10.5)	4 (21.1)	13 (68.4)	0 (0.0)	0 (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8 (39.1)	4 (8.7)	21 (45.7)	1 (2.2)	2 (4.3)
	위센터	28	5 (17.9)	2 (7.1)	18 (64.3)	0 (0.0)	3 (10.7)
	성문화 센터	32	6 (18.8)	2 (6.3)	23 (71.9)	0 (0.0)	1 (3.1)
	경찰	48	11 (22.9)	6 (12.5)	29 (60.4)	1 (2.1)	1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4 (40.0)	1 (10.0)	3 (30.0)	0 (0.0)	2 (20.0)
성별	남성	60	14 (23.3)	9 (15.0)	33 (55.0)	1 (1.7)	3 (5.0)
	여성	191	45 (23.6)	14 (7.3)	121 (63.4)	1 (0.5)	10 (5.2)

소속기관별로 처음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경우 ‘친구’를 꼽은 경우가 21.1%로 타 기관에 비해 다소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알선자(삼촌/이모)’(31.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인터넷 채팅/카페’(30.0%)를 타 기관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표 15〉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

(단위 : 명, %)

	사 례 수	인터넷 채팅/ 카페	친구	스마트폰 채팅 앱	성매매 알선자 (삼촌/ 이모)	알바 사이트	아는 언니, 오빠 소개	광고 (온라인)	전부	모름/ 무응답
전 체	251	36 (14.3)	5 (2.0)	125 (49.8)	33(13.1)	7 (2.8)	39(15.5)	2 (0.8)	2 (0.8)	2 (0.8)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9 (22.5)	0 (0.0)	18 (45.0)	7 (17.5)	0 (0.0)	5 (12.5)	0 (0.0)	1 (2.5)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 (3.6)	0 (0.0)	16 (57.1)	3 (10.7)	1 (3.6)	6 (21.4)	0 (0.0)	1 (3.6)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19	2 (10.5)	1 (5.3)	7 (36.8)	6 (31.6)	0 (0.0)	2 (10.5)	0 (0.0)	1 (5.3)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9 (19.6)	0 (0.0)	21 (45.7)	7 (15.2)	0 (0.0)	9 (19.6)	0 (0.0)	0 (0.0)
	위센터	28	5 (17.9)	2 (7.1)	12 (42.9)	2 (7.1)	1 (3.6)	5 (17.9)	1 (3.6)	0 (0.0)
	성문화 센터	32	1 (3.1)	1 (3.1)	16 (50.0)	5 (15.6)	2 (6.3)	5 (15.6)	1 (3.1)	0 (0.0)
	경찰	48	6 (12.5)	1 (2.1)	30 (62.5)	3 (6.3)	3 (6.3)	5 (10.4)	0 (0.0)	0 (0.0)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	10	3 (30.0)	0 (0.0)	5 (50.0)	0 (0.0)	0 (0.0)	2 (20.0)	0 (0.0)	0 (0.0)
성별	남성	60	12 (20.0)	1 (1.7)	32 (53.3)	3 (5.0)	3 (5.0)	8 (13.3)	1 (1.7)	0 (0.0)
	여성	191	24 (12.6)	4 (2.1)	93 (48.7)	30(15.7)	4 (2.1)	31(16.2)	1 (0.5)	2 (1.0)

4)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5%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3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위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54.6%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4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 38명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 아니다’를 제외하면 6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위센터는 53.6%, 경찰의 경우는 7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도 6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특이한 것은 70% ‘전혀 아니다’고 답한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17.5%였다는 점, 73.3% ‘전혀 아니다’고 답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21.1%로 기관별 응답 중 ‘매우 그렇다’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81.3% ‘전혀 아니다’고 답한 성문화센터도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이 15.6%였다.

이 응답결과를 볼 때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이 기관별 편차도 있지만 기관 내부에서도 상당히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 ‘전혀 아니다’고 답한 남성이 35%, 여성이 60.7%인데 반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남성이 11.7%, 여성이 16.2% 응답한 것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73.7%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2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경찰 2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 1명, 여성 4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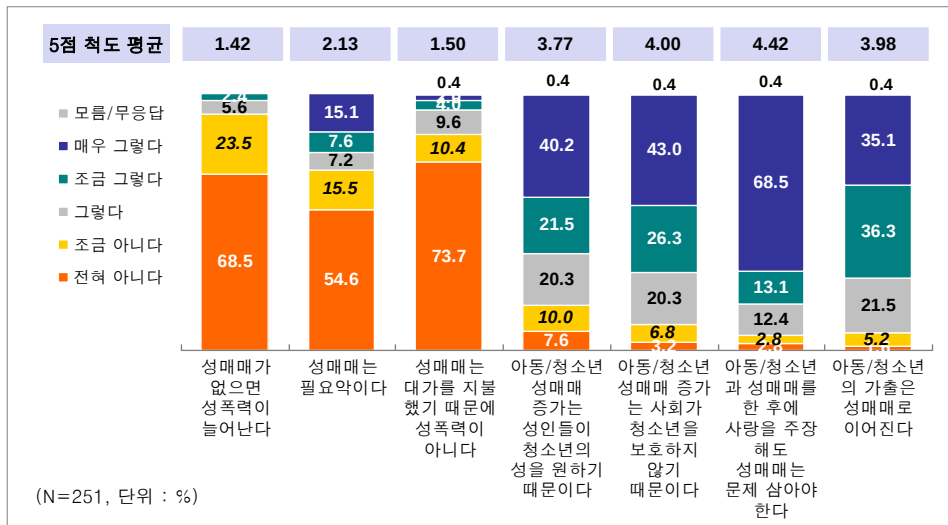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3.2%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위센터 1명, 경찰 3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3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0.4%, 위센터 28.6%로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찰은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10.0%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5명, 8.3%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53.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1.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 위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남성은 3명, 여성은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7.9%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7.4%, 위센터 17.9%,

경찰 18.8%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21.7%, 여성의 경우 39.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7.6%와 ‘모름/무응답’ 0.4%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5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5명, 위센터 1명, 성문화센터 4명, 경찰 2명,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남성은 5명, 여성은 14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21.7%, 위센터 25.0%, 경찰 16.7%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경우 남성은 16.7%, 여성의 경우 47.6%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8〉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



〈표 16〉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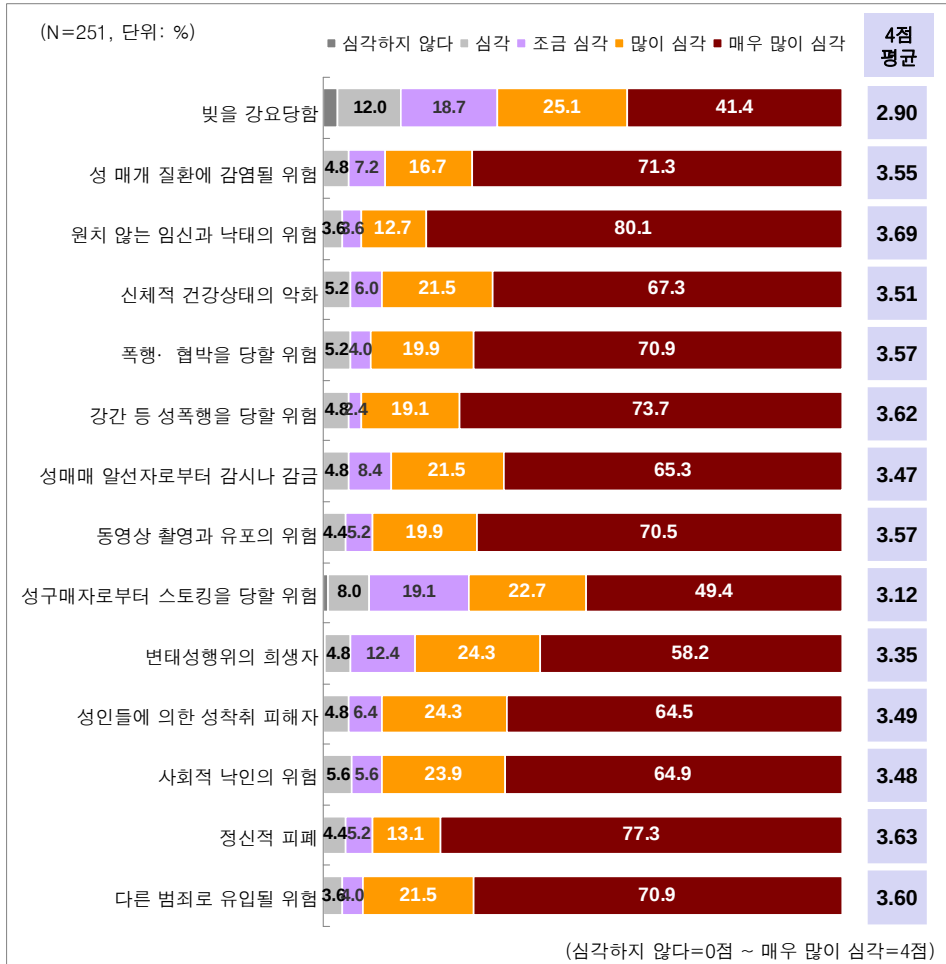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1.42	1.20	1.04	1.11	1.72	1.46	1.13	1.81	1.50	1.78	1.30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2.13	1.93	1.46	1.89	2.54	2.29	1.72	2.56	2.20	2.27	2.09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	1.50	1.10	1.11	1.21	1.48	1.86	1.06	2.13	2.20	2.00	1.34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원하기 때문이다	3.77	4.00	4.61	4.53	3.37	3.64	3.91	3.15	3.80	3.14	3.97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증가는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4.00	4.30	4.46	4.89	4.02	3.86	4.66	2.83	3.40	3.00	4.30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후에 사랑을 주장해도 성매매는 문제 삼아야 한다	4.42	4.55	4.89	4.95	4.52	4.46	4.75	3.57	4.00	3.69	4.65
아동·청소년의 가출은 성매매로 이어진다	3.98	4.25	4.46	4.42	3.67	3.79	4.06	3.60	4.30	3.54	4.12

5)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매우 많이 심각’ 응답률과 4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80.1%(3.69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신적 피해’ 77.3%(3.63점),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73.7%(3.62점),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71.3%(3.55점) 등의 순임. ‘빛을 강요당함’ 41.4%(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9〉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각 항목별로 눈에 띄는 점을 살펴보면, ‘성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1.3%) 성매매 피해여성쉼터가 9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80.1%)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6.4%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로 가장 낮았다.

‘폭행, 협박을 당할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9%)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3.7%)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7.5%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감시나 감금'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5.3%) 성문화센터가 8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5.4%로 가장 낮았다.

'동영상 촬영과 유포의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5%) 성문화센터가 90.6%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5.4%로 가장 낮았다.

'성구매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할 위험'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명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경찰 1명이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49.4%), 성문화센터가 81.3%로 가장 높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37.0%, 위센터 42.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30.0%로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경찰이 22.9%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변태행위의 희생자'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명으로 경찰이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58.2%),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30.0%, 경찰이 25.0%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다.

'성인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4.5%)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낙인의 위험'의 경우,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64.9%)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다른 범죄로 유입될 위험'의 경우는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는(70.9%) 성문화센터가 90.6%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아동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이 다른 기관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심각성 점수가 현저히 낮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낮다.

〈표 17〉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권침해의 심각성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교 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빛을 강요당함	2.90	3.13	2.93	3.00	2.89	2.93	3.59	2.21	2.90	2.30	3.09
성 매개 질환에 감염될 위험	3.55	3.98	3.86	3.95	3.50	3.57	3.78	2.73	3.50	2.95	3.73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	3.69	3.88	3.96	3.95	3.74	3.75	3.84	3.15	3.50	3.27	3.83
신체적 건강상태의 악화	3.51	3.80	3.75	3.79	3.48	3.50	3.72	2.94	3.40	3.05	3.65
폭행·협박을 당할 위험	3.57	3.85	3.89	3.79	3.63	3.46	3.91	2.85	3.40	3.02	3.74
강간 등 성폭행을 당할 위험	3.62	3.85	3.93	3.95	3.65	3.50	3.84	3.00	3.60	3.08	3.79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감시나 감금	3.47	3.68	3.71	3.63	3.57	3.43	3.78	2.85	3.40	2.97	3.63
동영상 촬영과 유포의 위험	3.57	3.70	3.86	3.74	3.70	3.68	3.84	2.88	3.40	3.02	3.74
성구매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할 위험	3.12	3.43	3.64	3.26	2.93	3.04	3.66	2.46	2.70	2.53	3.30
변태성행위의 희생자	3.35	3.63	3.79	3.63	3.30	3.43	3.63	2.65	3.00	2.78	3.53
성인들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	3.49	3.63	3.75	4.00	3.46	3.57	3.75	2.88	3.20	2.93	3.66
사회적 낙인의 위험	3.48	3.70	3.68	4.00	3.48	3.43	3.78	2.92	3.00	2.93	3.65
정신적 피해	3.63	3.88	3.82	4.00	3.76	3.61	3.75	3.04	3.40	3.18	3.77
다른 범죄로 유입될 위험	3.60	3.78	3.79	3.89	3.72	3.36	3.84	3.10	3.50	3.22	3.72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및 재판과정 관련

1) 수사기관(검,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을 경험한 응답자(N=102, 그 중 경찰이 28사례(27%)를 차지했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사례가 없었다)를 대상으로 수사과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에 대해서가 평균점수가 가장 높으며, “친절하게 도와주려 하였다”, “조사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쉽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순서로 나왔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의 경우, ‘전혀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9명(8.8%)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0%로 가장 높았고, 성문화센터와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32.4%), 경찰이 67.9%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위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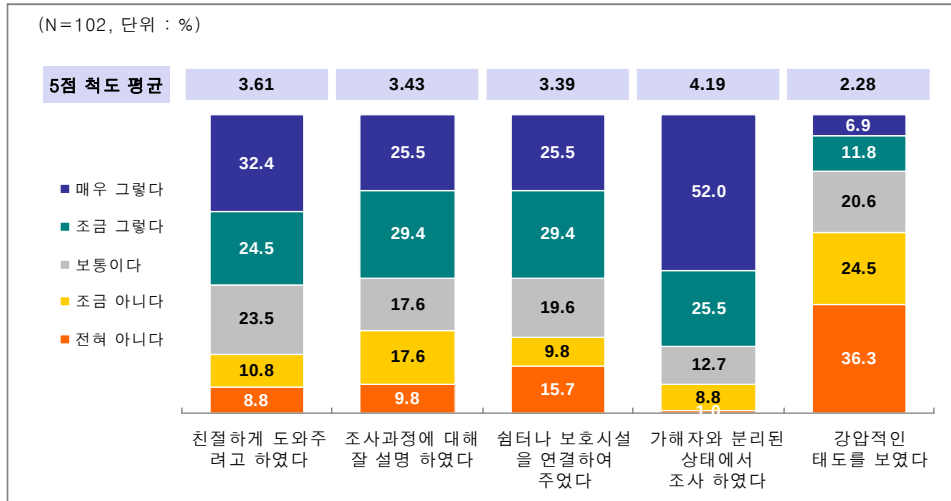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하였다’의 경우, ‘전혀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0명(9.8%)로 위센터가 33.3%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5%), 경찰이 57.1%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위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쉽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의 경우, ‘전혀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6명(15.7%)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6.4%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5%), 경찰이 53.6%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하였다’의 경우, ‘전혀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1명(1.0%)로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2.0%), 경찰이 85.7%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가 20%로 가장 낮았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아니다’고 답변한 경우는 37명(36.3%)으로 경찰이 64.3%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위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7명(6.9%)인데, 특이한 점은 경찰이 10.7%로 가장 높았다.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40〉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표 18〉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전체 (N=102)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17)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2)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5)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10)	위센터 (N=6)	성문화 센터 (N=4)	경찰 (N=2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0)	남성 (N=28)	여성 (N=74)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다	3.61	3.82	3.18	2.87	3.30	2.83	3.00	4.57	-	4.43	3.30
조사과정에 대해 잘 설명 하였다	3.43	3.35	3.23	2.67	3.10	2.33	2.50	4.54	-	4.32	3.09
쉼터나 보호시설을 연결하여 주었다	3.39	3.47	2.59	2.53	3.80	3.17	3.25	4.36	-	4.36	3.03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 하였다	4.19	4.00	4.32	3.80	3.90	3.67	3.00	4.79	-	4.75	3.97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2.28	2.12	2.23	3.33	2.40	2.50	2.50	1.75	-	1.89	2.43

2)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을 경험한 응답자(N=43, 그 중 경찰이 7사례(16%)를 차지했고, 위센터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사례가 없었다)를 대상으로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점수 3.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 3.39점,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3.14점,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에 대해서는 3.00점,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2.86점,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2.65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에 대해서는 2.60점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4명(9.3%)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3명(27.3%),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명(11.1%)이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39.5%)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72.7%로 가장 높았고,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4명(9.3%)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 4명(36.4%)였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0%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5.6%)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45.5%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찰은 1명이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6명(14.0%)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3명(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0%로 나타났다. ‘조금 아니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0.9%)는 경찰이 42.9%로 가장 높았고, 위기청소년교육

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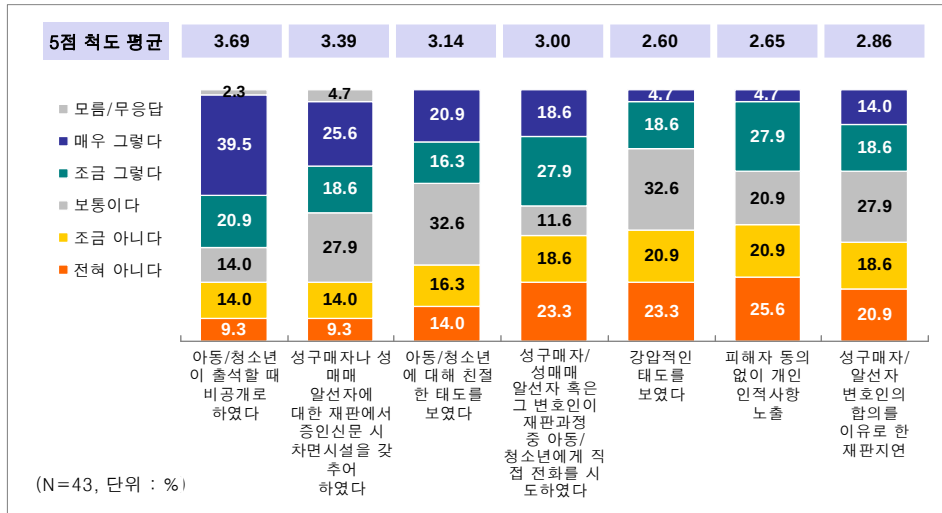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0명(23.3%)이었으며,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5명(4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재판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찰 7명 중 1명(14.3%)만 ‘전혀아니다’로 응답하였다는 점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8.6%)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성매매피해상담소가 각각 27.3%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 경찰이 각각 0%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조금 그렇다’에 성문화센터가 100%라고 응답한 점이다.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0명(23.3%)으로 경찰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4.7%)는 2명으로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각각 1명씩이었다. 특이한 점은 ‘조금 그렇다’에 경찰 1명이 있었다.

‘피해자 동의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1명(25.6%)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5명(45.5%)으로 경찰 42.9%보다 더 높아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4.7%)는 2명으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였으며, 나머지 기관은 모두 0%였다.

‘성구매자/알선업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의 경우,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9명(20.9%)으로, 42.9%로 경찰이 가장 높았으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문화센터가 0%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14.6%)는 6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4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 성문화센터 1명이었다. 나머지 기관은 모두 0%였으며, ‘조금 그렇다’에 경찰이 1명 있었다.

〈그림 41〉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표 19〉 법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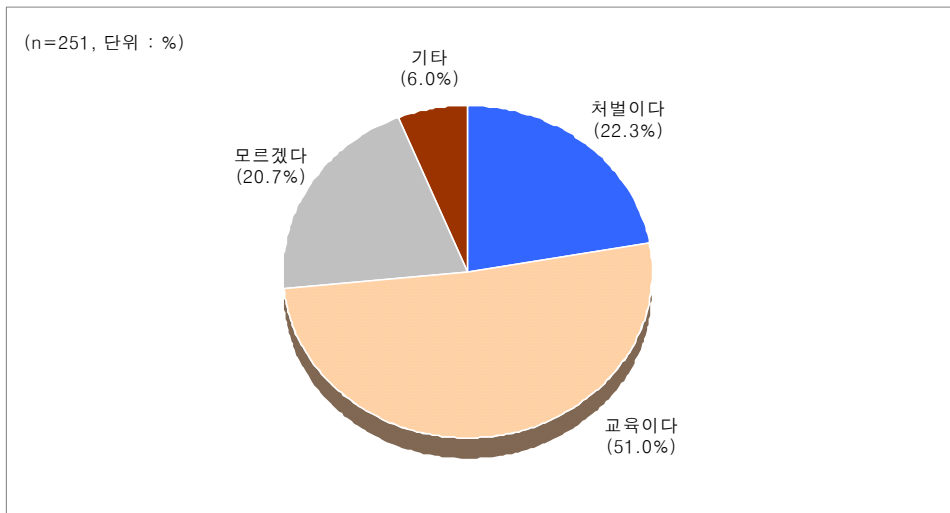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43)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위센터	성문화 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남성	여성
	(N=43)	(N=11)	(N=11)	(N=9)	(N=3)	(N=0)	(N=2)	(N=7)	(N=0)	(N=8)	(N=35)
아동·청소년이 출석할 때 비공개로 하였다	3.69	4.50	3.36	3.22	3.00	-	3.50	4.00	-	4.13	3.59
성구매자나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을 갖추어 하였다	3.39	4.11	3.09	2.89	3.67	-	3.50	3.43	-	3.50	3.36
아동·청소년에 대해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3.14	3.64	3.09	2.11	2.67	-	3.00	4.00	-	4.00	2.94
성구매자/성매매알선자 혹은 그 변호인이 재판과정 중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전화를 시도하였다	3.00	3.27	2.91	3.22	3.00	-	4.00	2.14	-	2.38	3.14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2.60	2.45	2.55	3.44	2.00	-	3.50	1.86	-	1.88	2.77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인적사항 노출	2.65	2.45	2.64	3.00	3.67	-	3.50	1.86	-	2.00	2.80
성구매자/알선자 변호인의 합의를 이유로 한 재판지연	2.86	2.36	3.36	2.89	3.33	-	4.50	2.14	-	2.25	3.00

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1.0%를 차지했으며, ‘처벌이다’ 22.3%, ‘모르겠다’ 20.7%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처벌과 교육의 중간정도’, ‘보호이다’, ‘의미없다’가 있었다.

〈그림 42〉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처벌이다’라는 응답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42.1%),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교육이다’는 응답은 위센터(64.3%), 경찰(62.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60%)이었다. 20%가 넘는 ‘모르겠다’는 응답 중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가 28.3%로 가장 높았지만, 경찰도 22.9%, 11명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처벌이다’는 응답이 24.6%로 남성 15.0%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교육이다’는 응답은 여성 47.1%, 남성 63.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0〉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처벌이다	교육이다	모르겠다	기타	합계
전 체		251	56 (22.3)	128 (51.0)	52 (20.7)	15 (6.0)	251 (100.0)
소 속 기 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7 (17.5)	19 (47.5)	10 (25.0)	4 (10.0)	40 (100.0)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11 (39.3)	12 (42.9)	3 (10.7)	2 (7.1)	28 (100.0)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8 (42.1)	7 (36.8)	2 (10.5)	2 (10.5)	19 (100.0)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9 (19.6)	22 (47.8)	13 (28.3)	2 (4.3)	46 (100.0)
	위센터	28	3 (10.7)	18 (64.3)	6 (21.4)	1 (3.6)	28 (100.0)
	성문화 센터	32	9 (28.1)	14 (43.8)	7 (21.9)	2 (6.3)	32 (100.0)
	경찰	48	6 (12.5)	30 (62.5)	11 (22.9)	1 (2.1)	48 (100.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3 (30.0)	6 (60.0)	0 (0.0)	1 (10.0)	10 (100.0)
성 별	남성	60	9 (15.0)	38 (63.3)	12 (20.0)	1 (1.7)	60 (100.0)
	여성	191	47 (24.6)	90 (47.1)	40 (20.9)	14 (7.3)	191 (100.0)

“처벌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지만 처벌과 같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들이 절대 보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보호처분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는 낙인이 되기 쉬워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쉼터 입소의 강제성’ 등이 주로 응답되었다.

〈표 21〉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56	(100.0)
보호처분이지만 처벌과 같기 때문에	9	(16.1)
대상 청소년들이 절대 보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서	7	(12.5)
보호처분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는 낙인이 되기 쉬워서	7	(12.5)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어서	5	(8.9)
쉼터입소의 강제성	5	(8.9)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여 법원이 명령한 것이어서	4	(7.1)
피해를 입고도 자발적 성매매일 경우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점 자체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3	(5.4)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	(5.4)
법적 책임이 생겨서	2	(3.6)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해서’,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해서’ 등이 주요 응답 내용이다.

〈표 22〉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128	(100.0)
아동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	36	(28.1)
올바른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12	(9.4)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11	(8.6)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해서	8	(6.3)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해서	7	(5.5)
보호해야할 대상이라서	5	(3.9)
사회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4	(3.1)
교육이 선행된 보호처분이 되어야 예방할 수 있어서	4	(3.1)
잘못된 행동인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야 하므로	4	(3.1)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이기 때문에	3	(2.3)
교육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서	3	(2.3)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서	3	(2.3)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3	(2.3)
성매매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방법이 교육으로 인해 인식되어서	2	(1.6)
올바른 가치관 미확립으로 교육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나이라서	2	(1.6)
죄의식이 없어 처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해서	2	(1.6)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모르겠음/기타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도 교육과 처벌이 함께 필요해서’, ‘채팅 내용 캡처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도 있어 처벌도 고려해야 해서’, ‘처벌했을 때의 효과와 교육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사례가 다르므로’ 등이 주요 응답내용이다.

〈표 23〉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에 대해 모르겠음/기타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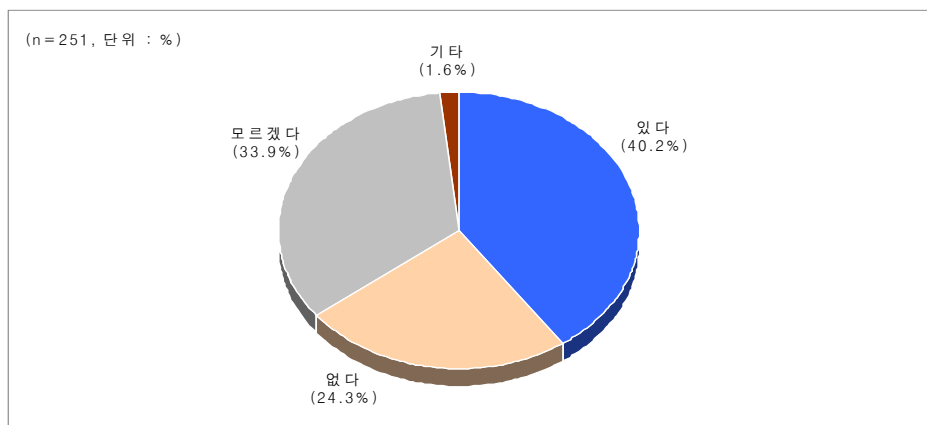
	N	%
[전 체]	67	(100.0)
청소년에게도 교육과 처벌이 함께 필요해서	3	(4.5)
채팅 내용 캡처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도 있어 처벌도 고려해야 해서	2	(3.0)
처벌했을 때의 효과와 교육했을 때의 효과가 각각 사례가 다르므로	2	(3.0)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	(3.0)
스스로는 처벌이라 생각하겠지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육적이 처벌이라서	2	(3.0)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	(3.0)
90%이상 어른들의 잘못이므로 처벌이면 안되어서	2	(3.0)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4)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40.2%로 ‘없다’는 의견 24.3%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인 33.9%를 차지한다. 결국 현재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여기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3〉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39.3%)와 성문화센터(34.4%)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의 경우 ‘모르겠다’의 응답률이 50.0%를 차지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100%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경찰의 경우, 효과가 ‘있다’ 47.9%, ‘없다’ 22.9%, ‘모르겠다’ 29.2% 로 나타났다.

〈표 24〉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의 성매매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기타
전 체		251	101 (40.2)	61 (24.3)	85 (33.9)	4 (1.6)
소속 기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40	17 (42.5)	11 (27.5)	11 (27.5)	1 (2.5)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	7 (25.0)	11 (39.3)	9 (32.1)	1 (3.6)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9	9 (47.4)	4 (21.1)	5 (26.3)	1 (5.3)
	상담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센터	46	12 (26.1)	11 (23.9)	23 (50.0)	0 (0.0)
	위센터	28	15 (53.6)	2 (7.1)	11 (39.3)	0 (0.0)
	성문화 센터	32	8 (25.0)	11 (34.4)	12 (37.5)	1 (3.1)
	경찰	48	23 (47.9)	11 (22.9)	14 (29.2)	0 (0.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0	10 (100.0)	0 (0.0)	0 (0.0)	0 (0.0)
성별	남성	60	29 (48.3)	13 (21.7)	18 (30.0)	0 (0.0)
	여성	191	72 (37.7)	48 (25.1)	67 (35.1)	4 (2.1)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인식이 없는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성매매 상황에서 차단되어 보호처분을 받기 때 문에’ 등이 주요 응답 내용이다.

〈표 25〉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101	(100.0)
아동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어서	20	(19.8)
범죄인식이 없는 경우 재범방지 교육이 효과가 있어서	9	(8.9)
성매매 상황에서 차단되어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8	(7.9)
아동 청소년은 보호해야할 대상이라서	6	(5.9)
처벌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고 억제하는 마음이 생겨서	6	(5.9)
보호처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6	(5.9)
아동 청소년들에게 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5	(5.0)
아직 교육으로 되돌릴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4	(4.0)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해서	4	(4.0)
신체적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어서	3	(3.0)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으니까	3	(3.0)
시설 입소 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3	(3.0)
보호처분이 있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서	3	(3.0)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성매매로 유입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아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성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매매를 한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보호처분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표 26〉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61	(100.0)
성매매로 유입된 환경적인 요인이 제거되지 않아서	10	(16.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성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6	(9.8)
성매매 피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5	(8.2)
성매매를 한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4	(6.6)
보호처분 이후에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서	4	(6.6)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3	(4.9)
특화된 교육 및 상담의 부재	3	(4.9)
성인들의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하여 계속되기 때문에	3	(4.9)
보호처분이 두려워 성매매를 하지 않을 청소년이 없을 것이라서	2	(3.3)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분하고 보호처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2	(3.3)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2	(3.3)
미성년자임을 이용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있어서	2	(3.3)
보호처분만으로 예방억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서	2	(3.3)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처분이 끝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2	(3.3)
보호처분은 성매매청소년들을 숨게 하는 것이지 억제를 위한 일은 아니므로	2	(3.3)
성매매의 분류가 아닌 성 착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개선을 해야 해서	2	(3.3)
아동 청소년은 성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2	(3.3)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이 될 수 있을지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서’, ‘학생에게 가정환경 및 또래관계에서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서’, ‘효과에 대해 추적 연구된 바를 들은 적 인 없어서’라고 대답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추측하게 한다.

〈표 27〉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 및 억제에 효과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명, %)

	N	%
[전 체]	89	(100.0)
보호처분이 성매매 예방이 될 수 있을지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서	4	(4.5)
학생에게 가정환경 및 또래관계에서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3	(3.4)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서	3	(3.4)
효과에 대해 추적 연구된 바를 들은 적인 없어서	3	(3.4)
사례마다 효과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2	(2.2)
본인 의지가 중요 하므로	2	(2.2)
아이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2	(2.2)
교육도 처벌도 아닌 내용도 실효성도 불분명해서	2	(2.2)
탈성매매 비율이 높지 않아서	2	(2.2)
성매매의 경우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서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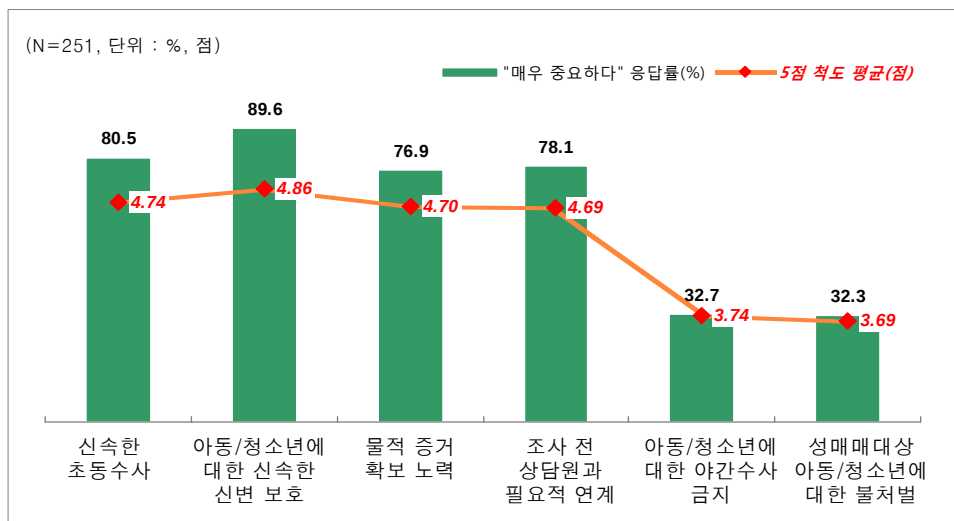
※ 사례수 1 이상만 제시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정책 관련

1)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가 89.6%(4.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초동수사’ 80.5%(4.74점),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78.1%(4.69점), ‘물적 증거확보 노력’ 76.9%(4.70점) 순으로 높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 32.7%(3.74점)와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32.3%(3.69점)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4〉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7.2%)와 ‘매우 중요하다’(89.6%)를 합하여 9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1명(0.4%)으로 경찰 1명(2.1%)이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89.6%)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75.0%로 가장 낮았다.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14.3%)와 ‘매우 중요하다’(78.1%)를 합하여 92.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1사례 있는데, 경찰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경우도 3명(1.2%)있었는데, 경찰 2명(4.2%)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10.0%)이었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78.1%)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0%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의 경우, ‘조금 중요하다’(21.1%)와 ‘매우 중요하다’(32.3%)를 합하여 53.4%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시 중요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항목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11명(4.4%)이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3명(15.8%)으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명(8.3%)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를 남녀 성별로 보면 남성 5명, 여성 6명이었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32.3%)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67.9%로 가장 높았고,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각 5명(10.4%), 1명(10.0%)로 가장 낮았다. 이 항목에는 모름/무응답이 2명(0.8%) 있었는데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위센터였다.

그런데 전 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의 경우, 전체 96.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를 무엇 때문에 해야하는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응답자들에게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표 28〉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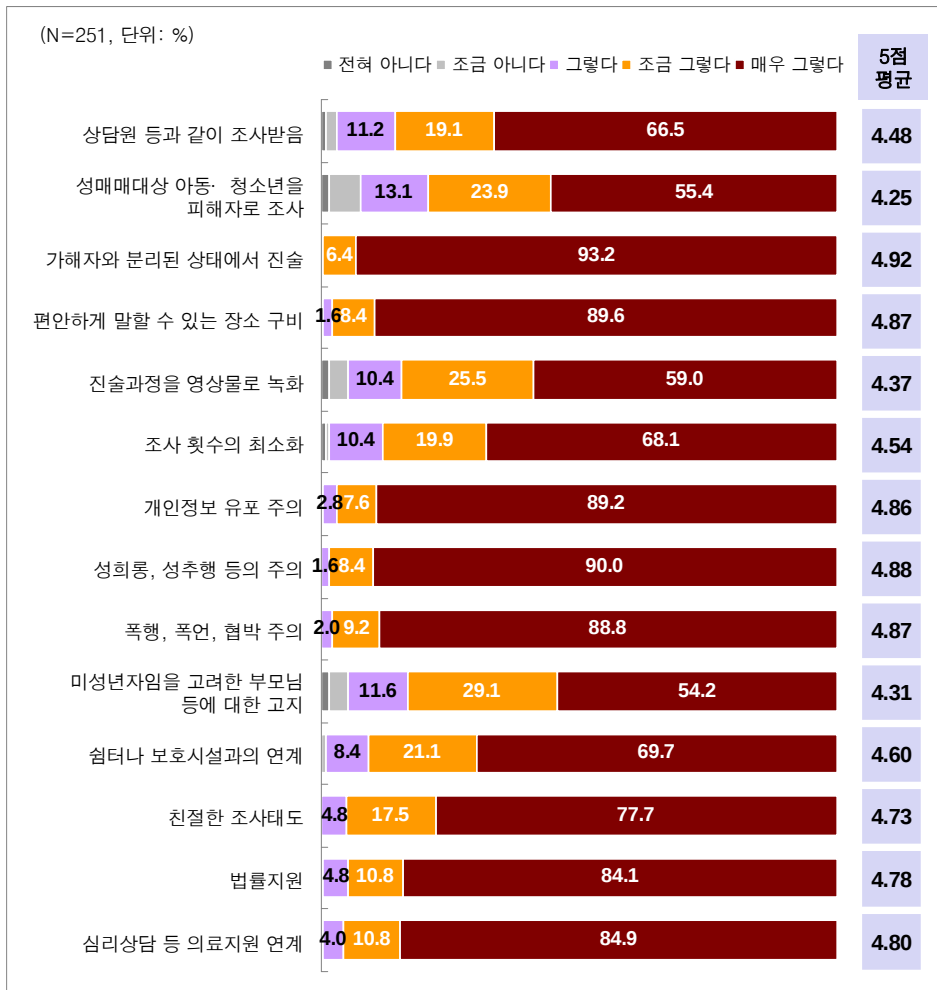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신속한 초동수사	4.74	4.85	4.64	4.95	4.80	4.75	4.94	4.48	4.50	4.53	4.81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신변보호	4.86	4.98	4.96	5.00	4.87	4.79	5.00	4.63	4.70	4.63	4.93
물적 증거확보 노력	4.70	4.85	4.82	4.79	4.72	4.64	4.75	4.54	4.30	4.52	4.76
조사 전 상담원과 필요적 연계	4.69	4.88	4.96	5.00	4.78	4.54	4.94	4.15	4.30	4.18	4.8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야간수사 금지	3.74	3.83	4.07	4.16	3.78	3.48	3.84	3.48	3.20	3.38	3.86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3.69	4.05	4.46	4.05	3.63	3.33	3.97	3.04	3.00	3.10	3.88

2)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수사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해야 함이 93.2%(4.92점)으로 가장 높았음. 또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가 90.0%(4.88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89.6%(4.87점), ‘개인정보 유포 주의’ 89.2%(4.86점)등의 순서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9.1%)와 ‘매우 그렇다’(66.5%)를 합하여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2명 있었고, 소속기관은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6.5%)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경찰을 제외한 모든 업무 담당자들의 ‘매우 그렇다’ 응답률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 타 기관 업무 담당자 간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이었다.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3.9%)와 ‘매우 그렇다’(55.4%)를 합하여 7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소속기관은 경찰 2명, 성매매피해여성쉼터와 위센터에서 각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명, 여성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5.4%)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18.8%로 가장 낮았다.

주목할 점은 이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매매피해여성쉼터(77.5%), 성매매피해상담소(85.7%), 위기청소년교육센터(94.7%), 성문화센터(81.3%)가 50%를 상회하는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30.4%), 위센터(46.4%), 경찰(18.8%),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40%)이 50%를 밑도는 응답률을 보여, 설문에 참여한 각 기관들이 서로 유사한 시각을 갖은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든 질문들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인식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5.5%)와 ‘매우 그렇다’(59.0%)를 합하여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성매매피해여성쉼터 2명,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위센터가 각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9.0%)는 성문화센터가 81.3%로 가장 높았고, 위센터가 39.3%로 가장 낮았다. 경찰은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43.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50%)보다 높은 56.3%였다.

‘개인정보 유포 주의’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7.6%)와 ‘매우 그렇다’(89.2%)를 합하여 9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1명 있었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89.2%)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70%로 가장 낮았으며, 경찰은 77.1%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9.1%)와 ‘매우 그렇다’(54.2%)를 합하여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4명 있었고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 성매매피해상담소 2명, 위기청소년교육센터 1명이었다. 이 경우 모두 여성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54.2%)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80%로 가장 높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가 39.3%

로 가장 낮았다.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1.1%)와 ‘매우 그렇다’(69.7%)를 합하여 9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는 없으며, ‘조금 아니다’고 응답한 사례가 2명 있었고, 경찰이었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9.7%)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로 가장 높았고, 45.8%로 경찰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점은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이다.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에 대해서도 전체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아니다’고 응답한 경찰의 사례가 2명 있었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66.5%)에 있어서도 경찰이 29.2%로 가장 낮았다. 두 항목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서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의 부분은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2.5%로 가장 높았고,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의 부분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지원에 있어서 쉼터나 보호시설에 있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상담소의 역할은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이 ‘전혀 아니다’로 답변하거나 ‘매우 그렇다’고 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때 향후에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쉼터나 상담소와의 연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9〉 수시기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조사과정 시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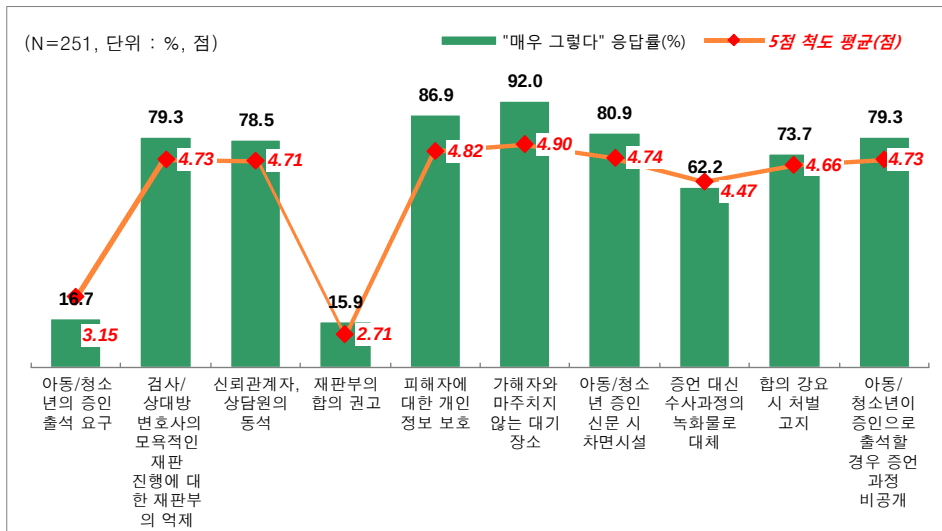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상담원 등과 같이 조사받음	4.48	4.63	4.86	5.00	4.50	4.57	4.75	3.75	4.20	3.95	4.65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조사	4.25	4.65	4.86	4.84	3.96	4.11	4.75	3.42	4.10	3.57	4.47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	4.92	4.93	5.00	5.00	4.93	4.86	5.00	4.83	4.90	4.87	4.94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 구비	4.87	4.93	5.00	5.00	4.93	4.82	4.97	4.69	4.50	4.75	4.91
진술과정을 영상물로 녹화	4.37	4.40	4.54	4.53	4.15	4.11	4.75	4.29	4.30	4.23	4.41
조사 횟수의 최소화	4.54	4.60	4.50	4.68	4.54	4.50	4.84	4.40	3.90	4.37	4.59
개인정보 유포 주의	4.86	4.80	4.96	5.00	4.91	4.93	4.94	4.71	4.50	4.77	4.88
성희롱, 성추행 등의 주의	4.88	4.88	5.00	4.95	4.87	4.89	5.00	4.77	4.70	4.80	4.91
폭행, 폭언, 협박 주의	4.87	4.90	4.96	4.89	4.89	4.89	5.00	4.69	4.70	4.73	4.91
미성년자임을 고려한 부모님 등에 대한 고지	4.31	4.38	3.82	4.05	4.50	4.50	4.25	4.31	4.60	4.32	4.30
쉼터나 보호시설과의 연계	4.60	4.75	4.75	4.74	4.63	4.61	4.59	4.31	4.50	4.37	4.67
친절한 조사태도	4.73	4.73	4.96	4.95	4.78	4.64	4.84	4.50	4.40	4.55	4.79
법률지원	4.78	4.85	4.86	4.95	4.85	4.75	4.88	4.52	4.70	4.57	4.85
심리상담 등 의료지원 연계	4.80	4.83	4.96	4.95	4.89	4.86	4.84	4.50	4.60	4.58	4.86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가 92.0%(4.90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86.9%(4.82점), ‘아동·청소년 증인신문 시 차면시설’ 80.9%(4.74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판부의 합의권고’ 15.9%(2.71점)과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 16.7%(3.15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는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아동·청소년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가 필요하다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1.9%)와 ‘매우 그렇다’(16.7%)를 합하여 38.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22.5%로 가장 높았고, 위센터가 3.6%로 가장 낮았으나, 성문화센터(18.8%)를 제외한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모두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로 가장 높았고, 특이한 점은 경찰이 8.3%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검사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모욕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억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3.1%)와 ‘매우 그렇다’(79.3%)를 합하여 9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신뢰관계자, 상담원의 동석’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4.7%)와 ‘매우 그렇다’(78.5%)를 합하여 응답자의 9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50%로 가장 낮았다.

‘재판부의 합의 권고’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3.5%)와 ‘매우 그렇다’(15.9%)를 합하여 29.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52.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0%로 가장 낮았다. 이 질문 항목에서 특이한 점은 ‘매우 그렇다’의 경우도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26.3%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고, 경찰이 4.2%로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9.2%)와 ‘매우 그렇다’(86.9%)를 합하여 9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고,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8.8%로 가장 낮았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4.8%)와 ‘매우 그렇다’(92.0%)를 합하여 9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70.0%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 증인 신문 시 차면시설’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2.0%)와 ‘매우 그렇다’(80.9%)를 합하여 9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으며, 위센터가 67.9%로 경찰 72.9%보다 낮았다.

‘증언 대신 수사과정의 영상물 녹화로 대체’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3.9%)와 ‘매우 그렇다’(62.2%)를 합하여 86.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89.5%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로 가장 낮았다.

‘합의 강요 시 처벌 고지’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9.9%)와 ‘매우 그렇다’(73.7%)를 합하여 9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7.9%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언과정 비공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3.9%)와 ‘매우 그렇다’(79.3%)를 합하여 9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금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62.5%로 가장 낮았다.

〈표 30〉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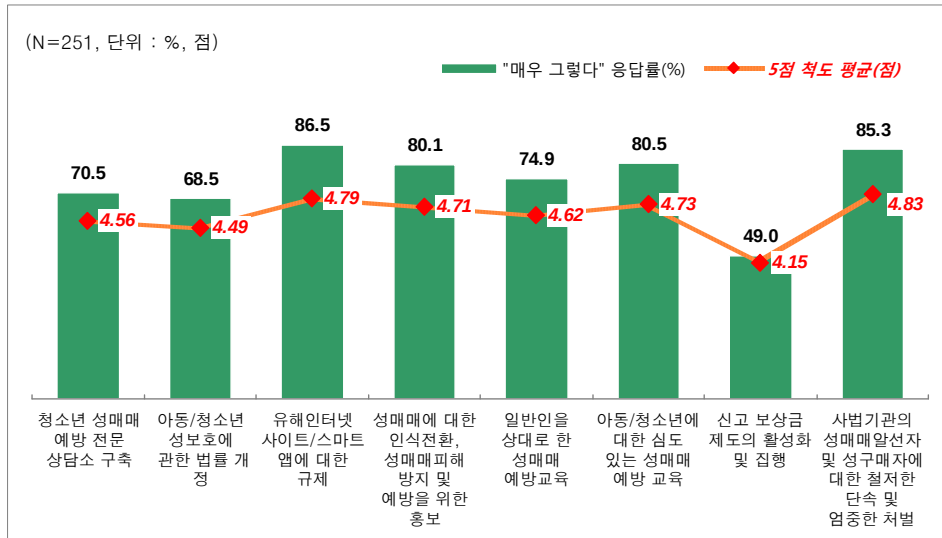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아동·청소년의 증인출석 요구	3.15	3.10	3.11	3.26	3.22	3.32	3.00	3.04	3.40	3.19	3.14
검사 또는 상대방 변호사의 모욕적인 재판진행에 대한 재판부의 억제	4.73	4.82	4.89	5.00	4.74	4.64	4.91	4.53	3.90	4.53	4.79
신뢰관계자, 상담원의 동석	4.71	4.90	5.00	5.00	4.50	4.61	4.94	4.52	4.10	4.55	4.76
재판부의 합의 권고	2.71	2.55	2.21	2.42	3.20	2.93	2.69	2.55	3.30	2.71	2.71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4.82	4.93	4.82	5.00	4.89	4.82	4.97	4.62	4.30	4.68	4.87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대기장소	4.90	4.95	5.00	5.00	4.96	4.89	5.00	4.70	4.50	4.75	4.94
아동·청소년 증인 신문 시 차면시설	4.74	4.80	4.93	4.95	4.78	4.50	4.84	4.64	4.20	4.63	4.77
증인 대신 수사과정의 영상물 녹화로 대체	4.47	4.65	4.57	4.89	4.41	4.18	4.84	4.23	3.70	4.14	4.58
합의 강요 시 처벌고지	4.66	4.93	4.50	4.89	4.63	4.68	4.97	4.38	4.10	4.42	4.74
아동·청소년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언과정 비공개	4.73	4.80	4.82	5.00	4.70	4.57	4.94	4.55	4.40	4.51	4.80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4.79점)로 가장 높고, 이어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85.3%(4.83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 80.5% (4.73점)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은 49.0%(4.15점)로 가장 낮았다.

〈그림 47〉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소 구축’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9.5%)와 ‘매우 그렇다’(70.5%)를 합하여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과 경찰 2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1.7%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8.7%)와 ‘매우 그렇다’(68.5%)를 합하여 8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이 4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25.0%로 가장 낮았다.

‘유해 인터넷 사이트/스마트폰 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8.0%)와 ‘매우 그렇다’(86.5%)를 합하여 9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가 76.1%로 가장 낮았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

에, ‘조금 그렇다’(12.7%)와 ‘매우 그렇다’(80.1%)를 합하여 9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8.3%로 가장 낮았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예방교육’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4.7%)와 ‘매우 그렇다’(74.9%)를 합하여 8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6.9%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1.7%로 가장 낮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성매매예방 교육’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3.9%)와 ‘매우 그렇다’(80.5%)를 합하여 9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8.3%로 가장 낮았다.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27.5%)와 ‘매우 그렇다’(49.0%)를 합하여 7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65.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12.4%)와 ‘매우 그렇다’(85.3%)를 합하여 9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가 각각 10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50.0%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모든 차단 방안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경찰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에 대한 방안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경찰은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는 ‘사법기관의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4.93%), 남성 응답자는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앱에 대한 규제’를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3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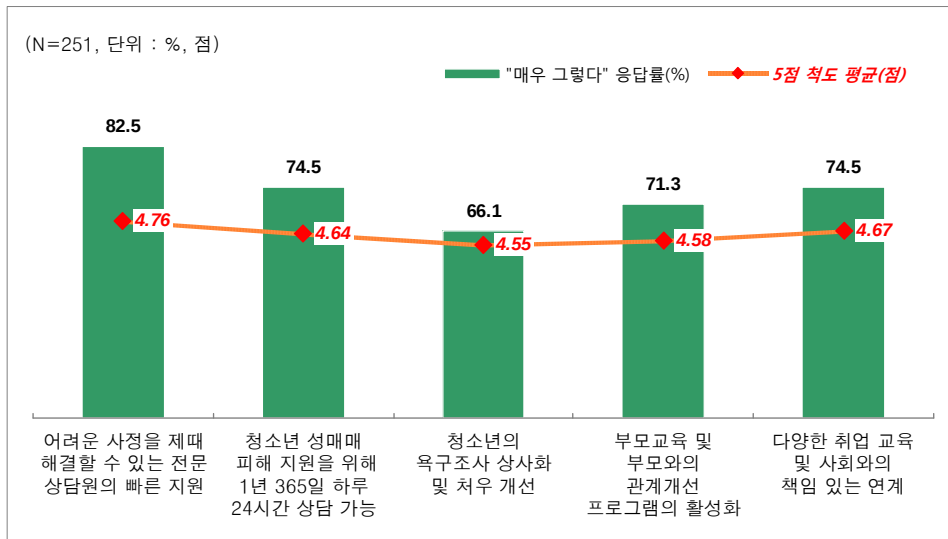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 주변에 알리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전문상담소 구축	4.56	4.68	4.64	5.00	4.57	4.61	4.81	4.06	4.50	4.22	4.67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4.49	4.88	4.82	5.00	4.54	4.61	4.91	3.44	4.20	3.72	4.73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 앱에 대한 규제	4.79	4.83	4.96	5.00	4.70	4.68	4.97	4.63	4.70	4.60	4.85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성매매피해방지 및 예방 홍보	4.71	4.78	4.86	4.95	4.72	4.71	4.94	4.35	4.60	4.42	4.81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예방교육	4.62	4.83	4.89	4.95	4.54	4.64	4.97	4.00	4.50	4.17	4.76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성매매예방 교육	4.73	4.83	4.89	4.95	4.70	4.86	4.81	4.38	4.80	4.48	4.81
신고 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	4.15	4.38	4.36	4.47	4.22	4.00	4.19	3.73	4.00	3.75	4.27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4.83	5.00	5.00	5.00	4.80	4.93	5.00	4.42	4.60	4.50	4.93

5)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의 업무 필요사항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매우 그렇다’ 응답률과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이 82.5%(4.76점)로 가장 높고, 이어 ‘다양한 취업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연계’와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 가능’ 각각 74.5%(각각 4.67점, 4.64점), ‘부모 교육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71.3%(4.58점), ‘청소년 욕구 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 66.1%(4.55점)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8〉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5.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10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6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

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문화센터가 93.8%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50.0%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센터와 경찰이 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87.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9.6%로 가장 낮았다.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8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5.8%로 가장 낮았다.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있는 연계'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94.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위센터와 경찰 각 1명이었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94.7%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45.8%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과 '다양한 취업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계'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각각 5.00점과 4.95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을 위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은 성문화센터에서 4.91점,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개선'은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4.85점,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4.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모든 사항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며, 남성 응답자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을 여성 응답자는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의 빠른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2〉 지원시설 및 사회단체 업무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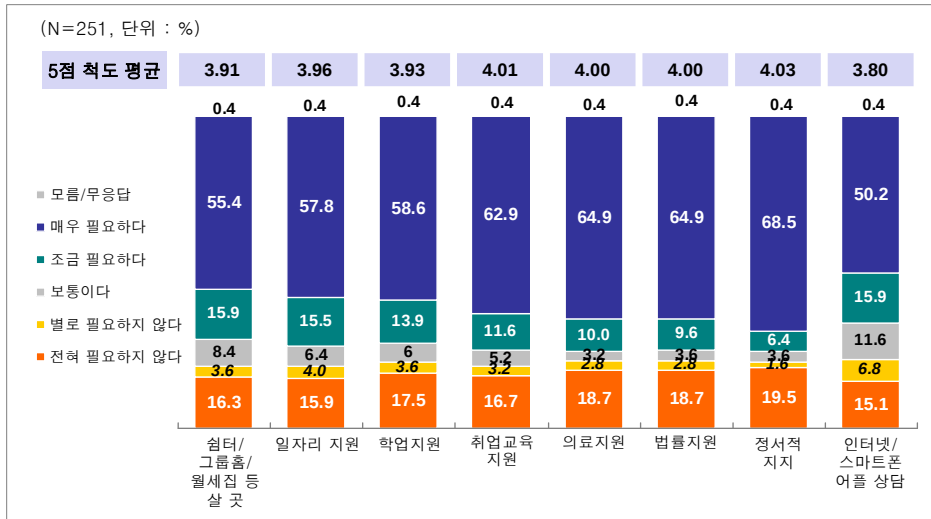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어려운 사정을 제때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	4.76	4.83	4.93	5.00	4.72	4.71	4.94	4.58	4.30	4.57	4.83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상담가능	4.64	4.75	4.64	4.74	4.61	4.25	4.91	4.63	4.40	4.60	4.65
청소년들의 욕구조사 상시화 및 처우 개선	4.55	4.85	4.79	4.84	4.48	4.29	4.84	4.15	4.30	4.20	4.66
부모교육 및 부모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의 활성화	4.58	4.58	4.82	4.79	4.54	4.61	4.78	4.29	4.30	4.35	4.65
다양한 취업 교육 및 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계	4.67	4.85	4.89	4.95	4.52	4.68	4.94	4.31	4.30	4.35	4.77

6)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 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5점 척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취업교육지원’ 4.01점,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각각 4.00점, ‘일자리 지원’ 3.96점, ‘학업지원’ 3.93점,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에 대한 지원은 3.91점,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점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49〉 아동·청소년 성매매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컴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1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28.1%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39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0%로 가장 낮았다.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3.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0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5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0%로 가장 낮았다.

‘학업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4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7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20.0%로 가장 낮았다.

‘취업교육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2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47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2.1%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의료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85.7%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법률지원’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7명이었으며, 성문화센터가 31.3%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63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8.6%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74.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49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72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92.9%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40.0%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이 필요하냐고 한 물음에,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6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251명 38명이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30.0%로 가장 높았다. ‘매우 필요하다’의 경우는 126명으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75.0%로 가장 높았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 10.0%로 가장 낮았다.

소속기관별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모든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는 ‘의료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를 각각 4.23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정서적지지’(4.71점), 상담복지 및 학교 밖 지원센터는 ‘학업지원’, ‘정서적 지지’(각각 3.76점), 위센터는 ‘쉼터/그룹홈/월세집 등 살 곳’

과 ‘취업교육지원’(각각 4.29점), 성문화센터는 ‘취업교육지원’(3.91점), 경찰은 ‘취업교육지원’, ‘법률지원’, ‘정서적 지지’(각각 4.09점),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의료지원’, ‘법률지원’(각각 3.20점)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가 느끼는 필요성이 남성 응답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

(단위 : 점)

	전체 (N=251)	소속기관								성별	
		성매매 피해 여성 센터 (N=40)	성매매 피해 상담소 (N=28)	위기 청소년 교육 센터 (N=19)	상담 복지 센터 및 학교 밖 지원 센터 (N=46)	위센터 (N=28)	성문화 센터 (N=32)	경찰 (N=48)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 (N=10)	남성 (N=60)	여성 (N=191)
쉼터, 그룹홈, 월세집 등 살 곳	3.91	4.13	4.50	3.95	3.63	4.29	3.72	3.81	2.60	3.51	4.03
일자리지원	3.96	4.08	4.54	3.95	3.67	4.21	3.81	3.96	2.90	3.59	4.07
학업지원	3.93	4.13	4.57	3.79	3.76	4.04	3.75	3.89	2.80	3.53	4.05
취업교육지원	4.01	4.15	4.61	3.79	3.67	4.29	3.91	4.09	3.00	3.76	4.09
의료지원	4.00	4.23	4.64	3.95	3.72	4.11	3.69	4.04	3.20	3.69	4.09
법률지원	4.00	4.23	4.57	3.84	3.72	4.11	3.72	4.09	3.20	3.71	4.08
정서적 지지	4.03	4.23	4.71	3.95	3.76	4.18	3.72	4.09	3.10	3.73	4.13
인터넷/스마트폰 어플 상담	3.80	4.00	4.50	3.95	3.57	3.86	3.75	3.62	2.60	3.25	3.96

4. 심층면접 및 FGI 분석

가. 청소년

심층면접의 결과 분석은 설문문항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하위주제를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청소년 성매매 관련 경험주제분석 개요

구분	하위주제
가족경험	말해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 동네 북/언제라도 보내버릴 수 있는 곳/고아원과 다를 바 없는 가정/애정없는 잔소리/의미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꿈을 좌절시키는 가족/ 댓가를 바라는 가족/고아원과 다를 바 없는 가정/누가 해결해줄 수 없는 ‘가족의 문제’
시설경험	시설생활의 부정적 경험(부족한 없는 생활, 그러나 ‘고아원’ 티내는 행사/감사함이라는 댓가를 바라는 곳
가출인식	조금 긴 외출/영구적 이탈? 가벼운 이탈/자유로운 생활의 조건/물리적으로 잡아두거나 풀어주거나/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기대수준을 높이는 가출에 대한 가족의 대응
가출후 생활 및 생활공간	가장 선호하는 술 마시고 놀기/미성년자 입실, 술집은 안 되고 모텔은 되고/
경찰조사경험	조사받는 것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험은 없었음/잘해줘도 남자 경찰관은 켄끄러움(여경 없이 조사하기도)/부당한 경험 유무와 상관없는 “너무 싫은”(주변의 시선, 자존심 상하는)경험/대부분 피해자로 조사 받음 그러나 피의자보다는 피해자(동정 등)로 대하는 시선이 훨씬 부담스러움/참고인 조사 혹은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서 동의 구해야 하나 구하지 않음/ 반협박성 조사 강조/말만 피해자, 피해자로 대우 받지 못함/조사 자체가 강요나 강제 되는 느낌/친절하나 꽃뱀으로 몰아가는 언사/합정 수사시 ‘미끼’로 동원되는 경우/조사에 협조했으며 추후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알려준 적 없음/진술서 작성시 다른 사람의 것 샘플로 보여주는 데 실명, 세부내용이 다 노출되게 그대로 다 보여줌/다른 청소년 조사시 나의 이야기를 노출시킴/부모연락에 대한 부서별 업무지침 차이로 결국 부모에게 연락가는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짐/실적위주의 업무처리 방식/경찰이 합의 중용
법원/보호처분	분류심사원(더운 물 안나오고, 통방금지, 화장실내 CC TV 설치, 욕설)의 열악성,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옹호하는 변호사/보호처분이 삶의 전환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임 : 휴대폰과 ‘친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 자유는 없으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경험의 지속성을 위한 가족환경변화 위한 개입 부재/
알선자	아는 오빠 등 사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알선자가 성행위 요구/또래 알선업자와 술마시고 하는 관계, 성폭력도 성매매도 아닌/알선조직간의 갈등으로 청소년들이 인질이나 미끼가 됨/알선자가 구매자와 이미 문자주고 받으며 조건타협 볼 때 무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알려주지 않음/갑금 폭행 무리한 성매매(하루 15회이상)로 내몰림 당함/ATM 기 취급당함/여자 아닌 걸레로 취급/몸을 돌볼 기회조차 없음/ 친구들과 갈등조장하고 고립시킴->기가 살아남기위해 “불쌍한 아이” 착취하기

구분	하위주제
10대의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	청소년 성구매자 Pool이 형성되어 있어 관련 생태를 잘 알고 악용 하는 집단이 있음/지속 만남을 통해 나의 정보 알려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로 인식/알선업을 한다는 것을 경찰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청소년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접근/구매자의 성폭력 및 신체폭력, 더 심한 범죄피해 우려가 있었음/ 납치감금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데 구매남에게 구조요청 하였으나 못본 척 하는 ‘남자 사람’ 과 ‘어른’에 대한 좌절감/가출중임을 알고 숙식제공 하겠다고 다른 지방에서까지 데리러 오는 적극성 /‘미성년자이기에’ 성을 사는 사람들/‘미성년임에도’ 성을 사는 사람들/성관계 없는 만남을 조건으로 만났어도 약속어기고 성관계 요구하는 ‘어른’들/“ 이 사람 저사람 이렇게 만나봐도 다 똑 같은 그거고 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건 그냥 성관계. 나는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몸을 줘라”/조건만남을 한다는 것이 알려질까봐(가족들과 어차피 단절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상성격자와의 범죄 피해도 신고하지 못함/구매자에 대한 가장 큰 거부감, 동의하지 않는 질내 사정
업소고용	키스방, 노래방 등 경험/성매매보다 더 어려운 노래방에서의 감정노동/손님도 알고 업주도 아는 미성년자 고용/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누가 먼저 터트릴 것인가가 관건인 시한 폭탄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대체로 긍정적 평가/ 상담소를 만난 나는 ‘행운아’/인프라 보다 ‘사람’/ 부정적 경험(쉼터의 막말하는 사회복지사/상담내용의 노출/지역사회에서 ‘시설 티’내는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의 제한성과 낙인효과
위기청소년 캠프	생활리듬 회복의 효과 경험함/동병상련의 출발점/재미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경험: 엄청난 선물, 노는 그리고 무서운 언니들과의 밀착적 생활
정책제언	최우선적인 지원책, 자립지원으로서의 일자리! 일자리!/(부모동의 필요 없는)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자리/ 부모동의 필요 없는 자유로운 일자리/만들어진 일자리(인턴쉽이나 작업장 등)가 아닌 ‘자유로운’ 일자리

나. 업무담당자

1) 업무담당자 FGI 분석결과 개요

구분	내용
성매매의 원인 인식	수요가 있기 때문/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어린여성 선호하는 남성수요증가/가정폭력과 가족해체로 가출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문제/건강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일자리의 부족/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물질만능주의/성매매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어플환경/가출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의 부재/아동청소년의 인식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컴퓨터운영방식
성매매와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돈으로 성을 사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로 인식/성매매와 관련한 이차피해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강조/알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술하지 않는 청소년의 특성 및 착취구조의 폐해/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의 연락처를 SNS에 노출
보호처분에 대한 인식	보호보다 처벌로 인식/보호처분의 효과에 대해 일시적, 회의적으로 인식/격리는 아동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처분 Vs. 보호처분의 다양화 등 효율적 운영방안 제고/보호처분 그 자체보다 보호처분중 보호관찰의 경우 그 이후 제재조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이를 보호가 아닌 처벌의 성격이 강화됨/
보호처분의 대안	보호처분내에서의 인성교육 강화/심리 및 의료상담서비스확충/보호관찰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지역사회보호체계강화
애로사항	단속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재(특히 신뢰관계형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시간과 인력부족/제한된 지원기간/실무자의 소진 및 이직으로 장기근속의 어려움/가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 미비/서비스시스템안에서의 지지체계 부족/경찰은 단속의 어려움(단속반의 노출/단속에 대한 항의?)/
정책제언	법개정(대상청소년-->피해청소년)/단속이나 지원관련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이 마련/어플에 대한 대응책/가정폭력 이유와 연계한 홍보 및 유기적인 대책 마련/청소년노동보호

Ⅰ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 이기연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센터 소장)

1. 인권침해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가. 아동 청소년 교육문제

본 아동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41명의 아동 청소년 중 중학교 중퇴 또는 고등학교 중퇴가 70.9%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를 도중에 그만 두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중퇴 통계를 보았을 때 26.8%나 되어,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하에서 학생이 학교를 불출석할 경우 학교에서는 가정방문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를 중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따른 학교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탈성매매 후에도 다시 학교와 사회에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학력취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출이나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주위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후 생기는 선입견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일반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다시 방황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 중단이 없도록 하는 대안학교가 의미가 있으며, 본 설문조사에서도 대안학교 재학이 1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가출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단기형 자립학교’인 ‘늘푸른 자립학교’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는 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기초학습, 경제교육, 성교육, 인턴십 과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단기형 대안학교이다.¹⁾ 이처럼 대안학교가 아동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학력의 확보와 함께 종국적으로는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²⁾

나. 아동 청소년 노동인권문제

1) 아동 청소년 근로실태

본 설문조사에서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잘 곳이 없어서’ 35.0%,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31.1%,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 30.1%,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26.2%, ‘배가 고파서’ 25.2% 등의 응답이 있었다. 가출상태의 절박성이 이유이건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이건,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이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이 근로를 통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15세~18세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비율이 18.5%로 전체 평균(15.8%)보다 높고, 학교 재학 청소년의 경우(19.8%) 이보다 높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가장 높은 비율(26.3%)을 보여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³⁾. 또한 청소년들이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시기는 대다수(60.5%)가 15세~18세 사이에 첫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평균 15.8세이며, 14세 이하에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비율(10.9%)도 적지 않았다. 또한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일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과 편의점, 전단배포, PC방/DVD방/노래방/만화방,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공사현장이나 일반주점, 주유세차, 제조가공업체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⁴⁾

1) 서울시 보도자료,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09년 9월 23일.

2) 대안학교는 정규학력이 인정인 안 되어 다시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만큼, 정규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김지경·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101면

청소년들의 경험율이 높은 부당행위 또는 부당처우의 항목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요일이나 시간에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의 경우, 여자 청소년(36.8%), 학교밖 청소년(44.0%), 대학 비진학 청소년(42.0%)의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다’의 경우, 15세-18세의 경험율이 34.8%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42.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저연령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비준수 사업장의 주요 피해자이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밝혀졌다. ‘일을 하면서 쉬는 휴게시간이 없었다’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험율(30.8%)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율(42.0%)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출한 후에 주거비, 생활비의 돈이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가 없고 자리 얻기도 힘든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성매매의 위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과거에 PC방,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자리들이 실직한 조기퇴직한 분들에게 다 점령당해서 십대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는 하나도 없다, 이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인간이니까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매매를 제외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근본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것이니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한다. 노동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격증이 있어도 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노동조건 취약하고, 시급도 너무 낮은 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업무담당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2) 가출청소년의 노동문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가출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가출청소년의 환경을

4) 김지경·박창남 (2014), 위의 글, 80-81면

5) 김지경, 이상준(2014),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49-51면

악용한 업주의 부당행위 경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출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⁶⁾

또한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많은 경우 가출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아동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출 아동 청소년의 근로 형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별도의 실태 파악과 접근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정책제언

가) 아동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⁷⁾

그러나 그 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5%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알바신고센터'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했으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알바신고센터 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2배 가량 높게 파악되었다. 또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4%였지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신고전화설치·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달한 반면,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인지율이 3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동인권교육이 효과적

6) 육혜련,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6권1호 (2014)

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2010. 3. 9일자.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

인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 따라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이 쉽게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한 예로 서울시는 2015년도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고, 일하는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수첩을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⁹⁾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 쉽게 노동 인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에 상응하는 실태파악과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접촉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자립생활관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등 상대적으로 자신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교 밖 가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서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출 연령이 낮음을 고려한다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의 ‘노동 인권 교육’이나 홍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학교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안전한 구직 경로 확보

근로청소년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구직할 때 활용했던 주된 구직경로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전문 소개사이트로, 2명 중 1명(50.3%)이 이용하였고, 이 경로가 아닐 경우 ‘먼저 일하고 있는 친구 또는 아는 선후배’(23.9%)를 통해 일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가 대부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아동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인들과 동일하게 위험에 노출

8)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economy.seoul.go.kr/archives/57159>, 최종검색일 2016년 10월 27일

10) 김지경·박창남 (2014).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92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안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다. 아동 청소년 지원 시스템 강화

1) 아동 청소년 지원시스템 강화

가) 청소년지원시설,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등의 다양화 및 청소년지원시설의 필요한 지역에 증설 필요

본 설문조사의 성매매 관련 지원/도움 서비스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일자리’(3.86점)가 가장 필요 정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교육’(3.84점), ‘의료 지원’(3.82점), ‘학업’(3.81점), ‘정서적 지지’(3.80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현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제2호는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학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아동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중장기 청소년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노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밤시간 운영하는 시설 등 다양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지역별 현황(‘16.1. 기준)을 보면, 청소년지원시설은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고, 청소년지원시설이 없는 도단위 지역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청소년지원시설의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그 숫자 또한 증가가 필요하다.

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의 필요

현행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소는 없고, 성인들과 함께 상담을 받는 상담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소의 설치로 전문 상담원의 빠른 지원과 365일 24시간 상담가

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 원가족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확립

본 설문조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후 아동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쉼터’가 3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쉼터 34명과 아동복지시설 4명을 합한 38명(36.9%)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원가족 복귀가 가능하지 않아 쉼터나 아동복지시설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에서 쉼터 등 생활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친구들’, ‘혼자’, ‘남자친구’가 각각 3.9%로 혼자 혹은 남자친구나 친구들과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생활시설 외의 다양한 주거지원의 가능성, 생활시설만이 아닌 이용시설을 통한 지속적 보호, 지원 등 여러 다른 지원체계가 보충되어야 한다.

라) 쉼터 생활에서의 자유롭고 공식적인 의견개진, 의견수렴의 통로 필요.

쉼터 입소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쉼터 입소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없었다’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치 않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33.8%, ‘직원들이 수치심을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29.4%, ‘직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각각 2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유 없이 입소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17.6%, ‘입소 후 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20.6%, ‘입소생활과 관련한 나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20.6%, ‘범죄자 취급을 하였다’ 19.1%, ‘부당한 이유로 퇴소당했다’ 13.2%로, 쉼터 서비스 이용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 개진 통로나 의견의 수렴, 충분히 공유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으로 캠프 등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이며, 처벌로써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치유, 치료, 인권, 인식전환,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써의 교육, 부모교육 및 부모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알리는 문제, 후견인 문제의 해결, 의료, 법률, 정서적지지, 학업지원, 살 곳, 다양한 취업교육과 연계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가이드 마련의 촉구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가 없으면 성폭력이 늘어난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68.5%, ‘조금 아니다’ 23.5%, ‘그렇다’ 5.6%, ‘조금 그렇다’ 2.4%, ‘매우 그렇다’ 0%로, ‘전혀 아니다’ 68.5%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31.5%가(‘조금 아니다’ 23.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와 위센터, 경찰의 경우 다른 기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

업무담당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54.6%, ‘조금 아니다’ 15.5%, ‘그렇다’ 7.2%, ‘조금 그렇다’ 7.6%, ‘매우 그렇다’ 15.1%로, ‘전혀 아니다’ 54.6%를 제외하면 전체 응답자의 45.4%가(‘조금 아니다’ 15.5%를 포함)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도 15.1%, 38명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는 ‘전혀 아니다’ 37.0%를 제외하면 6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위센터는 ‘전혀 아니다’ 46.4%를 제외하면 53.6%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경찰의 경우는 ‘전혀 아니다’ 25.0%를 제외하면 7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도 ‘전혀 아니다’ 40.0%를 제외하면 60%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업무담당자의 경우,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아동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는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탓이라고 보거나 피해자로 보는 의식이 낮아, 인식의 혼란이나 모순적인 인식이 보이고, 업무담당자에 의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의 책임임을 명백히 하고 아동청소년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는 시각 교육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시각차가 큰 그룹들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인권관련 업무 지침 등 전체

적 매뉴얼과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센터,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성매매피해여성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문화센터의 경우 기관내부 의견의 편차가 많이 보인다. 내부의견 편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1) 가정폭력과 가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본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 때문에’가 58.6%였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폭행의 가해자를 조사한 결과, ‘친구, 선후배’가 65.0%로 가장 높았고, ‘친아빠’ 32.5%, ‘모르는 사람’ 27.5%, ‘친엄마’ 20.0% ‘애인’과 ‘가출팸’이 각각 12.5% 등의 순서였다. 이처럼 ‘친아빠’, ‘친엄마’, ‘새엄마’, ‘새아빠’, ‘형제자매’, ‘친척’, 기타 3명 중 2명이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 응답으로 보아 원가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응답 중 친아빠에 의한 성폭력도 2명이나 응답하고 있고, 1명이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최근 2년간의 폭행 경험이 원가족이라는 점은 가출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매매가 가출 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4.0%가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출과 성매매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5.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가출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를 성매매 상담기와 청소년 기관 전문가들에게 묻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관련되지 않음이 7.9%,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0.3%,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3.9%,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67.3%로 나타났다.¹¹⁾

11) 이유진의 위의 글, 168면

2) 정책제언

가) 가정내 폭력에 대한 적극적 처벌

2014년 현재 가정폭력 사범은 4만 7549명으로 최근 5년간 6.5배로 증가해 하루에 130명 정도가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되고 있다.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되는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실제 가정폭력발생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적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범죄이고 사회폭력으로 연결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매매로 연결되므로 가정폭력예방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의 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은 범죄의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결국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이 이루어졌다.¹²⁾

이처럼 관련법들은 제정 정비되고 있으나,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1년의 경우 10,146건, 2012년의 경우 10,943건 그리고 2013년의 경우 13,076건, 2014년에는 17,782건까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¹³⁾

따라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체적 폭력 및 언어적 폭력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내지 전문가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을 조기발견하고 전문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개선지원정책이 요구된다.

12)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는 성인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2014년 1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13) 보건복지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50면.

나) 실무자에 대한 통합 교육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각 피해에 대한 지원 기관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대하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수사기관이 초동수사시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반드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이 존재하는지 물어보고, 수사하도록 실무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 부모교육,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부모교육의 강화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로 내몰리지 않고 성매매 피해발생 후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사전적 교육 및 예방이 필요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설문조사 결과 가출이 전체 103명 중 87명으로 84.5%이고, 처음 가출 나이 평균 연령이 14.4세이며, 만 13세 이하도 22명이 가출경험이 있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때부터 가출하는 실태가 확인되어 가출이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연관성등이 확인된 결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선책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정내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본 설문조사에서 업무담당자들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는 가족단위에서 문제가 있고, 사회책임 전에 가족내 가정폭력이나 학대 같은 것들이 있다, 따라서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고, 부모를 위한 교육이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적으로 교육은 시키는데,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오히려 애들보다 교육이 덜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고, 가정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이들을 더 위기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제도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지역 네트워크 구축

아동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이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구청, 동사무소, 지역아동센터등 지역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예방, 감시, 보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6기 1,000명을 모집하였는데 이 ‘불법성산업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으로,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와 함께 거리에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2년 9월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성매매 광고·알선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물 규제처리를 협조하는 Hot-line을 구축한 바 있다.¹⁴⁾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이 2016년 구별 1개소씩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3년에도 전국 최초로 ‘주민 힘으로 지키는 여성안전마을’ 14곳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중랑구는 ‘초록상상’사업을 통해 다가구 주택 등 거주 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아 10대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구청·복지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동구 ‘소녀의 집’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업소들이 유치원, 도서관 등 아동들의 통학로에 인접해 있어 아동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역적 특색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인형극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였다.¹⁵⁾

14) 서울시 보도자료,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016년 1월 20일 석간용, ‘서울시’ 거주자 또는 소재 대학·직장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 상에 있는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40,436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 해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하고 신고하여 규제 처리된 불법·유해 정보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53.5%, 2014년 74.6%, 2015년 79.6%로 시민 감시단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 참여기업을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해 성산업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다. 2016년에는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이용해지 활동을 안정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 알선과 광고에 명백히 이용되는 카카오톡 아이디 신고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사 게시물도 감시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1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oman.seoul.go.kr/archives/16299>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아동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네트워크 구축이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구성원들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인 지방자치단체, 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모두가 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및 차단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사이버 성매매 환경 대응방안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금까지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 또한 ‘스마트폰 채팅 앱’이 6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업무담당자들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61.4%으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채팅/카페’ 23.5%, 가장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방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업무담당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인터넷사이트/스마트폰앱에 대한 규제’가 86.5%로 가장 높았다.

2015. 3.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인 남성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만14세의 여중생도, 2016. 4. 여섯 명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만 13세의 지적장애 아동도, 모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에 유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 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

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쇄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방통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하더라도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어플,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는 좋은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 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티’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¹⁶⁾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성구매자와 알선 조직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들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착취를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최대 '1회' 34명(33.0%), '2회' 33명(32.0%), '3회' 14명(13.6%), '4~9회' 15명(14.6%), '10회 이상' 4명(3.9%)이 성매매에 이용됐고,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이용은 2.7회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하루 최대 평균 성매매 횟수는 만 13~14세가 3.2회, 만 17~18세 3.0회, 만 15~16세 2.2회의 순이었다. 안전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충분한 지지와 배려를 받고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와 성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역으로 하루 평균 최대 3명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4명으로, 그 중에 만 13-14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들은 흔히들 화장을 하고 옷을 성인처럼 입어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들 한다. 그러나 만 13-14세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성인 흉내를 낸다고 하여도 그 연령대를 성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3-14세 밖에 되지 않는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해 하루 최대 10명 이상의 성구매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 이상이다. 또한 모르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돈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루에 1회를 한다고 해

16) 그루밍법은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그루밍(grooming)을 신종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채팅을 통해 만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유인, 제안하는 행위 등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 아동 후원 기구인 테르 데 줌프에서는 빈국 아동들을 상대로 부국 남성들의 웹캠 섹스를 막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실물과 흡사한 '스위티'(10세의 필리핀 소녀)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다. '스위티'로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더니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단체는 이 중 천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넘겨 각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실제 소녀가 아닌 가상 인물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실제 범법자들을 검거하고, 이 캠페인은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 그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이며 성착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동의 여부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인 성매매를 위축시키기는 커녕 점점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 상대방(성구매자) 부당경험이 알선자 부당경험보다 약 34% 높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에서 성구매자의 인권침해가 알선자의 인권침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점인데,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더불어 성구매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알선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이라고 보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리하여 보호처분하고 있어, 성구매자에게 흔히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과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은 동의여부를 떠나 성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인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형태의 법률로 개정되어야 하며, 처벌 또한 구속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여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구속이 무서워서라도 범의를 상실토록 하는 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경우도 현행 만 13세 이하로 두지 말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동일하게 행해져야 한다. 매매에 이용한 경우 일별 지난 2016년 4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매수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던 2016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결을 뒤집고, 10월 28일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철저하게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이번 사건의 범죄자들이 범죄에 합당한 손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손해가 없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의 엄중함을 결코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관결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한 성매매의 방식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업무담당자 인식 제고 및 처리 단계별 개선방안

1) 수사단계의 개선방안

가) 수사기관의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홍보

본 설문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모 또는 주변의 신고’(39.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단속’ 30.2%, ‘자수’ 24.5%,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 13.2%, ‘구매자신고’ 9.4%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하는 구조요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거나 신고하였을 때 보호받을 수 없고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시스템의 작동 및 긴급구조시스템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의 금지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 실제 단속시기는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 4명(57.1%),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2명(28.6%), 모름/무응답 1명(14.3%)로 답변하였으며,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2명(28.6%), 없었다는 응답이 4명(57.1%), 모름/무응답이 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경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단속된 경우에 대해 2명이나

대답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구매자로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

수사기관에서 함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로 해야 한다. 만약 함정수사의 대상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정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당한 피해에 대해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움추려 들게 하는 것이며, 움추려든 상황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방황의 탓으로 돌려지고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의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 없게 하는 근본이유가 되며, 위 실태조사에서 나온 바대로 경찰관들의 범죄양성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제고 및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엄정처벌을 위한 교육강화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 아동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조사되었으며, ‘아니다’는 응답은 34.0%로 조사되었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시하는 태도’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자 취급’이 34.0%, ‘폭언, 협박, 강압적 태도’와 ‘가해자와의 합의유도’가 각각 13.2%였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3명당 1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쉼터나 보호시설을 전혀 연결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32.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에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합의유도도 13.2%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자나 성구매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사건무마를 위해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제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대상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 수사기관의 신뢰관계인 동석의 의무화의 현행법 준수 필요성

수사기관에서 “상담원 또는 친한 사람(신뢰관계인)과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2.6%, ‘조금 그렇다’ 9.4%, ‘그렇다’ 34%, ‘조금 아니다’ 11.3%, ‘전혀 아니다’ 30.2%로 조사되었으며 5점 척도 평균은 2.83점이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 3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 된다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진술의 구체화를 위해 위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마)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매뉴얼 제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초동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지침, 영상녹화 조사, 변호사 선임 고지, 신뢰관계자 동석 의무 등 피해자에 합당한 모든 조치를 받게 하는 내부 매뉴얼 제작, 보급하고 교육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 재판단계의 개선방안

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법원에서 재판과정 중에 범죄자 취급을 한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0%, ‘조금 그렇다’ 30.0% 등 ‘그렇다’는 응답이 40.0%로 조사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20.0%, ‘조금 아니다’ 10.0% 등 ‘아니다’는 응답은 30.0%로 조사됨. ‘보통이다’는 응답은 30.0%였으며 5점 척도 평균 점수로는 3.00점이었다. 법원에서도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판사를 비롯한 법원관계자들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나) 모든 법원에 사건판결을 위한 매뉴얼 제작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보지 않는 판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인지하고, 증인 출석 최소화, 차면시설 설치, 성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증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법원에 매뉴얼 제작, 배포, 교육이 필요하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가.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부터 성인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¹⁷⁾

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제고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등 광범위한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17) 이유진,윤옥경,조윤오,이상희,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0, 27-48면.

운영 등에 대한 관리는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지원은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¹⁸⁾ 사실상 청소년성매매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익증진국의 성매매 정책은 성인 성매매 피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지원시설을 제외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모든 체계는 사실상 청소년 가족정책실에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피해에 대해서는 권익증진국에서도 청소년 가족정책실에서도 모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없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성매매 문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내 독립적인 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전경검 전담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문제는 대상과 주제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 문제는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부재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장기적 전망과 계획,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 업소 단속 중심의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피해자들은 강력계나 형사과, 지능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착취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지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자들의 제대로된 수사를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내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1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라. 관련 지원시설 - 전담 지원시설 확충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청소년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특수하다. 위기·청소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은 양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질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지 못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의 성격 상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도 또다시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라는 이유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함께 다루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해당하는 법도 다를 뿐 아니라 성인과 십대의 특성도 매우 다르다. 큰 차이점은 첫째, 십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인 성매매는 주로 업소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개인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십대들은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의 활동가가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설과 단체가 매우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1) 발견

무엇보다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에 처해있는, 또는 유입된 십대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발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상담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발견이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전문성을 지닌 활동가들이 아웃리치에 함께 해야 하며, 아웃리치 활동가들은 모두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사이버 상담 또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에 ‘사이버포래상담실’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아동·청소년성매매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포래 상담원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는 2014년 현재 전국에 15개소로 서울 5개소, 부산·대구·경남 2개소, 광주·대전·전남·경북 1개소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쉼터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십대 여성들이 머물고 싶은 쉼터 곧 자유롭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쉼터 입소를 꺼려하는 십대 여성들을 위해 드랍인 센터나 일시 쉼터 등이 필요하다.

3) 자활(일자리)

십대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 자체도 구하기 어렵거니와 일이 힘들고 돈이 적다는 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날에 오면’에서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와 같은 다양한 임금 제도, 유연한 노동시간, 일을 배울 수 있는 노동, 인턴십 나아가 직장으로의 연계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 교육

○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지향한다. 현재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10개의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성장캠프는 활동가들과 십대 여성들이 40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양질의 시간을 갖는다. 무엇보다 활동가 선생님들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 관계가 가능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십대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탈성매매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센터의 명칭도 변경 가능할 것이다.

○ 자립학교: 십대 여성들은 대부분 가출 상태여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의 낙인 등으로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원과 마포 자립학교가 운영 중이다. 검정고시, 인턴십, 경제교육, 진로탐색, 직업체험, 심리 및 정서적 자립 프로그램, 성매매 재유입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업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업이 거의 1:1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립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5) 의료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은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하고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면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막연히 건강을 자신하곤 한다. 설사 건강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건강 지식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병원 진료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나는 봄’이 유일한 십대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이다.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을 이해하는 의료진들로 구성된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6) 법률

‘대상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매우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범죄 행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또래 포주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성매매가 아닌 업소형 성매매에 유입된 피해 여성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

7) 상담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채널이 필요하다. 상담소를 중심으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다.

8) 긴급 구조

성매매 과정 어디에서나 십대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구조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를 성착취, 성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9) 활동가 교육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또한 자립학교 교사, 의료진, 법률단,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10) 수요 차단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병행해야 한다. 사실 수요가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에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률단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이고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거리, 학교, 직장에서의 성구매 방지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법제 관련 정책 제언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

1)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불합리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하게 검사에게 송치하고(제38조제2항), 검사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법원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결국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국선 변호사 선임지원에서 배제되며 다양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강하다.

이 연구의 성매매 아동·청소년대상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보호처분을 ‘처벌’로 생각하는 것이 46.6%였고, ‘교육’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4.4%에 불과하였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자 등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위탁 외에 소년원 송치까지 있어서 성인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처분보다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성인 성매매자 보호처분의 경우는 일정 장소나 지역의 출입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아청법 제38조제1항), 이러한 보호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해당 아동·청소년이 협박하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을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오히려 아청법에 의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모순이며,¹⁹⁾ “대상” 개념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19)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175면 참조.

구분		처벌 및 보호처분	
아 청 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처벌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매매(제13조제1항) 상대방	
		보호처분(제40조) • 검사는 보호처분을 위해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 • 법원은 보호처분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소년법의 보호처분(제32조제1항)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 병원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성 매 매 처 벌 법	“피해 아동청소년”	아동대상성범죄 중 대상아동·청소년 제외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제41조) •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 접촉 금지 •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성인대상 성매매 처벌	처벌 (제21조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보호사건 (제12조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음 보호처분의 종류(제14조제1항) • 일정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 사회봉사·수강명령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성 매 매 처 벌 법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제6조)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성매매피해자”(제2조제1항 제4호) •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일반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는 판매자가 실무적으로 자발인가 비자발인가에 따라 자발적인 (여성)성판매자는 성매매자로 처벌되지만, 비자발인 (여성)성판매자는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로 구분하면서 대상자가 사실상 자발적 성판매 아동·청소년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조치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과연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당하거나 강요되지 않으면 모두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피상적인 이해일 것이다. 이 연구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요소, 환경적인 열악한 요소, 성인 성구매자에 의한 폭행·협박 혹은 소위 ‘진상’들에 의한 시달림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심각하다. 성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제한된 의식주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원하였다고 하여 과연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의하면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004년에는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성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성인 성매매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성매매단속과정에서 미성년판매자가 인지될 경우 성인 성매매정책에서처럼 자발·비자발에 초점을 두어 자발적 성판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보아 보통 보호처분을 받도록 법원송치의견을 낸다고 한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로 볼 수 있음에도 아동법에 의해 불합리하게 처리 되는 것이다.²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에는 대상/피해 혹은 자발/비자발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20) 강지명, 위의 글, 175면.

것은 법제도적·사회환경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염두에 두면 적절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모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²¹⁾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보호·지원에 중점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화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 피해자 중심적 대책에 상응하며, 피해자 개념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으로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만들고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²²⁾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을 훈육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

21) 남인숙의원이 2016.8.8.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였다

22) 강지명, 위의 글, 168면.

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다른 일반 청소년 쉼터보다 더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 및 발달 민감성 특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룰 때 절대 “작은 매춘부”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피해자 중심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과 관련이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보호처분 부분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보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성매매 피해자가 받고 있는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성착취 개념 정의

‘매매’의 법률적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63조). 그런데 이러한 ‘매매’의 당사자인 ‘매도인’ 개념에 아동·청소년이 해당될 수 의문이다. 물건과 같은 재화의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 5조). 그런데 심지어 그보다 더한 가치를 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매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매매’라는 단어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성매매로 유인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내포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²³⁾

이처럼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문제는 ‘성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 성구매자 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자에 대한 철저와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범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한을 상승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만의 관대한 처분으로 끝나지 않게 하자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착취의 의미를 가지므로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인 성매매는 비범죄화로 가는 추세가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느 나라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주요 범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며,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 속에서 성매매는 인격침해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구매자, 알선업자들은 평균 만 14.7세의 중학생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관련 범죄자 검거인원은 줄어들고 있고 2014년 성매수로 처벌된 건수는 385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로는 당국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할 의

23) 이유정외, 위의 글, 136면.

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표- 범죄별 검거건수

구분	검거인원	범죄 별					
		성매매 처벌법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행위	매매	성매수	알선 영업	기타
2011년	3,315	45	171	54	1,608	153	1,284
2012년	2,753	65	233	36	751	102	1,566
2013년	2,201	20	176	20	573	86	1,326
2014년	1,247	13	169	14	397	222	432

출처: 경찰청 통계

표- 범죄별 전과자 수

구분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수등)
2006년	621		
2007년	682		
2008년	614		
2009년	750		
2010년	293		
2011년	59		
2012년		3,248	
2013년		3,286	
2014년			385

출처: 경찰청

라.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규정 신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 성매매로 인한 임신 관련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를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위의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성매매 아동 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의 피해자라고 보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추가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 또는 성매매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법률 개정안 제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현행과 같음)

현행법	개정안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자"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	5. (현행과 같음)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삭제>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피해자가 되게 한 자 2. 선불금(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피해자가 되게 한 자

현행법	개정안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u>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u>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u>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u>성매수의 피해자가</u>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u>성매수의 피해자가</u>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 <u>성매수의 피해자가</u>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u>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u>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의</u>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u>성을 사는 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5조(알선영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의</u>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의</u>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의</u>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u>성매수</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u>성매수</u>를 게시 또는 공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u>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①.....<u>피해·아동·청소년의</u> ③.....<u>피해·아동·청소년의</u>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4장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화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삭제>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삭제>

현행법	개정안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삭제>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상담시설) ① <삭제>

현행법	개정안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신 설>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프로그램의 운영
<신 설>	6. 아동·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의 교육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7.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에 따른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제38조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6.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47조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한다)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제48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등의 참여

2) 모자보건법의 성매매 관련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u>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u>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² 3. <u>강간, 준강간 또는 성매매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u>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I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손휘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김차연 (변호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 론 문

■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I. 대상아동·청소년 제도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는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법 제2조 제7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며(법 제38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상담과정을 이수(법 제39조 제2항) 하게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관사는 교육 등(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법 제40조제1항)을 할 수 있다.

원래 대상 아동·청소년은 법률 제6261호(’00.7.1시행)로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이 당시 대상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청소년 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으로 규정하였으며, ’06.6.30.부터 청소년 매매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II.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치유와 재화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재유입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 사실이 통보된 대상청소년, 또는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등 유관기관 및 사이버포대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이며, 1개의 중앙교육센터 및 10개의 지역교육센터에서 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1년)로 성매매 재유입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4박 5일 또는 5박 6일의 40시간 과정으로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 대상청소년 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

분 야	프 로 그 램	진행시간
심리진단	다면적 인성검사(MMPI), 문장완성검사	3
치유 및 치료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댄스테라피, 건강검진	6
자존감 향상	개인브랜드가치 높이기, 여성인사만나기 등	3
성주체성향상	Sexuality 점검하기, 성교육 등	6
사회통합	자원봉사활동,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 법교육, 인권교육, 경제교육 등	9
탈성매매	탈성매매여성과의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등	5
관계형성	레크레이션, 영화관람, 노래방이용, 쿠키만들기 등	6
기 타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등	2

* 기본과정 (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 20시간), 사례관리(1년)

연도별 치료·재활교육 인원을 살펴보면 연간 300여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00여 명이 사전·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데 2014년도의 경우 355명이 교육을 받고 1,021명이 사전·사후관리를 받았다.

〈연도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9월
교육 운영	2,595	255	372	333	355	278	355	369	278
사전·사후관리	6,955	512	553	787	1,077	1,034	1,021	1,055	916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개요 : 불임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학업·진학 및 자립·자활 등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시설 및 대육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구 분	시설 수	입소·이용기간	주 요 기 능	비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4개소	19세 원칙 21세까지 연장	숙식 제공 및 상담, 의료·법률 지원 사회보장 급부수령 연계 지원 진학교육 및 취학연계 지원 등	생활 시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2개소	1년	의무교육, 자활교육 사회적응능력 강화교육 지원	이용 시설
성매매 피해상담소	27개소	-	상담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의 구조, 지원시설·의료 기관 등에 인도 및 연계, 증인신문예의 동행 등	이용 시설

Ⅲ.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새로운 통신기기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알선·유인·권유범죄 등이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 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 외에 앱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대 지정(개별고시)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의무화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랜덤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5.11)

- (권고대상) 110여개 랜덤채팅앱(운영자)
- (권고내용) ① 성매매 주의, 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②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③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④ 마약·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⑤ 신고 창구, 유과기관 안내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시정요구 : 불법 유해 정보 30건(이용해지 또는 정지조치)

특히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의심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랜덤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시정요구를 이끌어냈다.

* 신고현황 : '15년도 42건, '16. 1~9월 181건

* 앱 중점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채팅앱 등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 총 380건
 - 기간('16.2~5월) / 음란·성매매 정보(226건)
 - 기간('16.7~8월) /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또한 경찰청과 협업하여 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 유인·알선 행위 등 에 대한 집중 단속('16.2.22~5.31)을 실시하여 이 기간중에 성매매 알선·유인 등 성매매 사범 8,502명(1,972건)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청소년성매매사범 419명(168건)을 검거하였다.

붙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개요

□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검사의 교육과정 등 이수명령 성매매 피해청소년, 경찰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 발견 통보 청소년 등(14년 355명 교육수료)
- (교육방법)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전국 10개소)에서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청소년성장캠프)
 - 교육시간 : 40시간
 -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날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어제의 나	소중한 나	또 다른 나	내일의 나	당당한 나
오전	사전검사 - OT	심리치유 프로그램 - 동작치료 - 미술치료	자존감 향상 - 개인브랜드 가치 높이기 - 롤모델 만나기 - MBTI	사회통합 -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통합 - 진로 프로그램	수료식 - 10년 후의 나를 만나다
오후	심리검사 - MMPI 등 - 관계형성	성주체성 향상 - 성교육 - 건강검진	성주체성 향상 - Sexuality - 관계형성	성매매 바로알기 - 100분토론 - 생존자증언	사회통합 - 학교탐방 - 직업체험 - 미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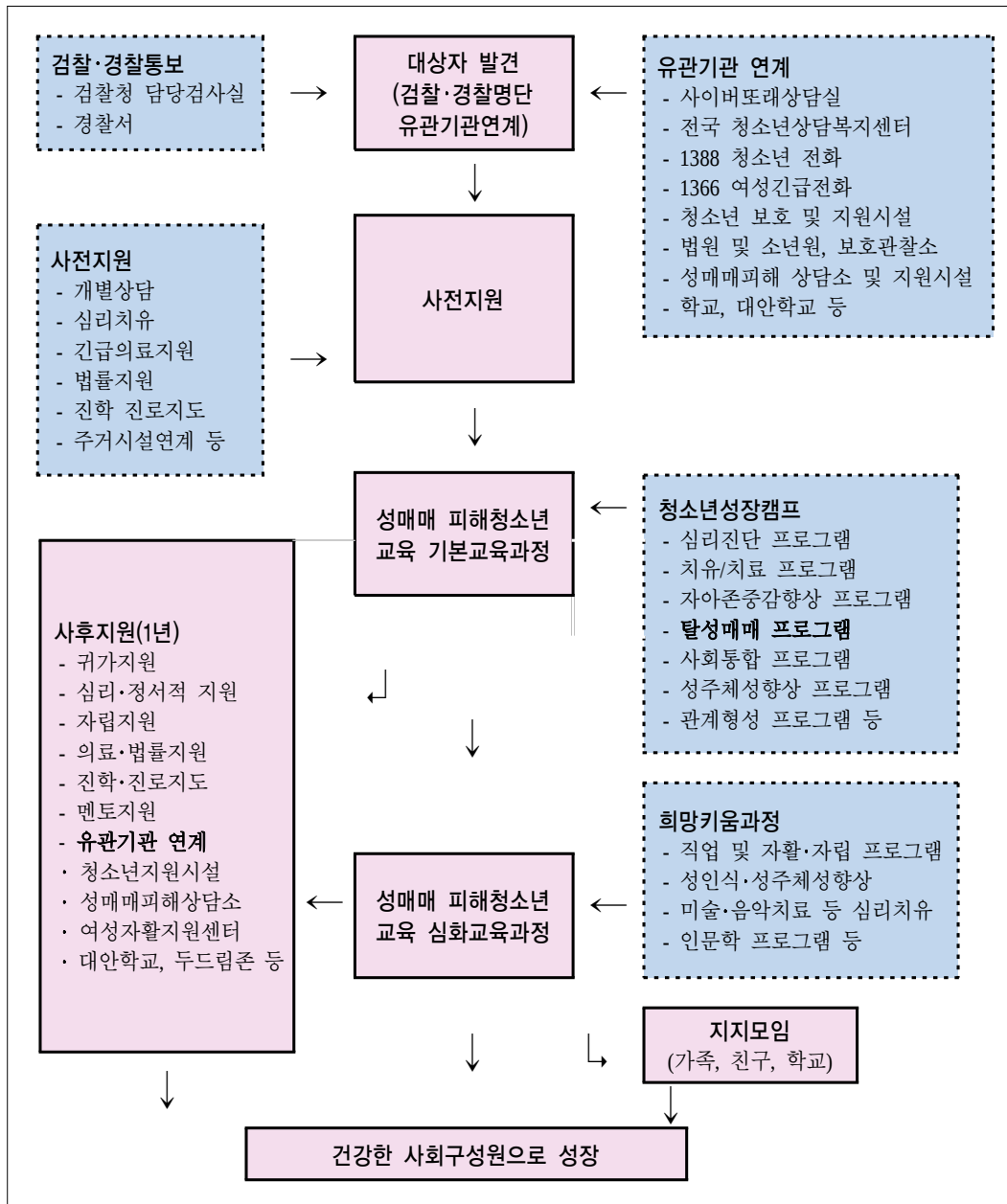
-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희망키움 과정)
 -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 교육대상 : 청소년성장캠프 수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청소년
 -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 직업 및 자활관련 프로그램
 - 성인식 및 성주체성향상 프로그램
 -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 자기성찰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 ※ 심화교육(희망키움)과정은 '14년 신규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은 각 지역교육 센터에서 교육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실시

□ 상담 및 사전·사후 지원

- 지속적인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을 지원
-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원들이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연합사례회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 등을 통해 피해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지원
- 지원대상별 사전·사후 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주 요 내 용
귀가지원	가출 중 또는 유관기관에서 추천된 교육대상자	• 위기개입 출장 및 귀가 동행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교통비 및 식비 등 지원
주거지원	가족갈등 및 가정해체로 인해 귀가가 어려운 교육대상자	• 단기숙터, 일시숙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지원시설 입소 연계 • 연계 시 교통비 및 식비 등 지원 • 성인자립시설 연계, 관련기관 동행
복학·진학 지원	자퇴 후 복학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학교 정보 제공, 등교 동행 • 대안학교 추천서 및 면접동행, 교사면담 • 부모상담 및 가족상담 • 교통비 및 학용품 등 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퇴 후 검정고시 준비를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대안학교 연계 • 교재 및 원서료, 합격선물 등 지원 • 검정고시 관련 학원 및 프로그램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자격증 취득	희망직종 및 취업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관련기관 연계 및 학원비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모기관 후원 등) •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취업지원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대상자	• 커피동물원(십대자립훈련), 희망직종 자원봉사 연계 • 두드림존 연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 연계(노동부) • 취업관련 학원비 지원(지원시설 이용자 등록) • 희망직종 근무지 방문 및 지지상담
법률지원	성매매, 기타 문제 등으로 재판 또는 경찰조사 중인 교육대상자	• 경찰서 및 법원 동행, 법원 내 소견서 및 청원서 전달, 보호 관찰소 업무 협조 • 법률지원 시 교통비 등 지원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연계
의료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 등 의료개입이 필요한 교육대상자	• 부인과 진료 및 처방지원, 치료비 일부지원 및 병원 동행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및 성매매피해 청소년상담, 신경정신과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연계

□ 사업 흐름도



토 론 문



Ⅰ 손취택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 김차연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해 3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성구매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나아가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의 활동은 가해자의 엄중처벌, 입법안 발의 등의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지원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느끼는 문제의식을 수치화, 객관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기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지원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다양하고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수치화, 객관화 하는 한편, 그렇게 도출된 조사결과를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점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이며, 그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면에서 관련자들에게 각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 성폭력

발제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성매매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청소년의 인권실태가 반증하듯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성을 착취하는 행위이며¹⁾, 아동·청소년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피해의 피해자이며, 어떤 책임도 아동·청소년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자유의사와 대가 있음을 들어 “착취”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제언과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 2조 1항 4호 중 다목을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성폭력에 포함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아동법 제2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인 성매매를 포함한 전체 성범죄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의율하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검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행위가 전후에 성매매의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폭력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함에도) 부인 또는 그 형량이 감경되거나,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에서 성매매로 인정되거나, 그에 앞서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조차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1)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일관되고 있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성매매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그 대가를 빼앗긴 사실이 있으므로 복수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것(허위 진술의 동기)이라는 점을 들어 폭행·협박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으니 그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995 판결).

3. 정책의 방향 : 성구매자의 권력을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로서의 보호

성매매의 원인은 권력이 성구매자에게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꼽히는 청소년 기출의 원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63.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시 그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성구매자의 권력을 아동·청소년에게 이전시키고, 아동·청소년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즉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차단으로서의 보호가 아닌 자유로서의 보호이어야 하며, 처벌과 통제와 같은 권리 제한적 방법은 어디까지나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은 어디까지나 성매매 폐해의 피해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기존에 성매매 청소년들도 윤락 여성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1. 10. 25. 2011헌가1).

그러나 현재 법집행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바, 수사기관은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

찰이 성구매자로 위장하여 접촉을 시도한 경우 경찰과의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었다”는 응답도 28.6%에 이릅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범죄자로 취급한 정도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도 4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식에 앞서 법률부터가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은 범죄소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 개선의 출발로 우선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 구분을 삭제하고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법집행기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매뉴얼 보급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성구매자에 대하여 :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연구결과가 인용한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검거인원은 5,261명인데 반해 구속율은 1.9%이며, 대부분은 존스쿨 이수 등으로 기소유에 되고 있는 등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발제는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제안하셨습니다. 제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체포·기소율 상향(처벌의 확실성)과 양형기준 상향(처벌의 엄격성)을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법정형 자체보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법정형만 상향될 경우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어 그 처벌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지난 2011년 의뢰 실시한 연구보고 따르면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체포·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²⁾ 특히 성구매자의 체포·기소율 상향과 관련하여 지금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합정수사는 금지하여야 하며,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법을 신속히 연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김정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1.

5.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 통제가 아닌 자유를, 피해를 넘어 권리의 주체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권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권력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 등이 포함되는바, 법집행 과정의 힘의 분배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구매자와 달리 명백하게 피해자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제 피해자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연구에서 보듯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볼 경우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거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특히 이들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국가의 우선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분을 없애고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지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보하여 보호처분에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분인 이상 처벌의 의미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특히 연구결과 교육이라기보다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있는 의미조차 무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적으로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바, 구체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³⁾

3) 자세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2015

6. 우리 모두에 대하여 : 청소년인권과 성평등

발제는 가출 및 성매매로의 유입은 가족 내 위험요인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적 욕구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가출과 성매매가 특수한 청소년, 소위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과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을 내용으로 발제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하여 그 성교육의 내용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지향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에 만연한 십대 여성의 대상화와 상품화는 성구매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이 주체화되고 다양한 성이 모두 존중받을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 론 문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1 조건만남, 애인대행, 키스방,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해지고,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또한 성매매에 노출되고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성인 대상의 성매매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 시기의 성매매 경험은 이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최소화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유용한 의미를 가진다고 봄.

■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정책 강화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나, 가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황에서 그녀들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 마련이 필요함. 발표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안전한 구직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함.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모델인 성인남성노동자 모델을 탈피하여 정책이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넷 채팅,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규제 강화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성매매 거래나 알선에 주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본 조사의 아동·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채팅 앱(59.2%), 인터넷 채팅(27.2%)을 통해 성매매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1:1 조건만남의 형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사례가 많았음(88.3%). 따라서 성매매 유입의 중요한 매개가 되는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인터넷 채팅이나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약할 필요가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성매매 유형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족 지원 및 돌봄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 확대

- 본 조사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평균 연령은 16.5세로 나타남. 이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에는 ‘가출’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는데, 가출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54.0%)이라고 이야기한 응답자가 많았고, 가출 후 1주일 내에 성매매에 유입되는 비율이 31.7%로 높게 나타났음.
- 처음 가출을 시도했던 연령의 평균은 14.4세였고, 가출의 주된 이유로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생활의 부적응(따돌림), 성폭력 등이 거론되었음. 또한 최근 2년간 폭력/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출을 감행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됨.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 관련기관 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가출로 인한 주거지의 불확실함, 생활비 조달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차원임. 가출의 경험이 부재하고 가출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유혹과 권유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상을 가출 아동·청소년에만 국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

-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면서 처음 성행위를 경험하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음. 또한 성산업과 성 상품화 경향이 노골화되면서 10대 여성의 성을 욕망하고 대상화하는 경향도 높아짐.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될 가능성과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성교육,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 확대

-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성매매 거래를 성범죄, 성학대 및 성착취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시도해왔음. 한국의 경우도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3월 제정)에 따라 성인의 성매매와 다른 법을 적용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제2조에서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구별하는 한계가 있음. 정책 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구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구별해내고 성매매 피해 지원의 적용대상을 선별하게 하게 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경험자들은 성매매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정서적, 의료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출 동기, 성매매 유입 계기나 요인,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등이 개별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필요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증설, 가출집결지나 학교주변 등에서 길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활성화, 아동·청소년

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각 기관들 사이의 소통과 연계의 활성화 등이 요구됨. 또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관련시설 및 기관의 보호와 개입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계된 중간매개자(포주), 성구매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성구매자들은 성매매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이 오히려 성구매자나 성 매개자에게 협박과 위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이러한 취약한 조건에서 그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접할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성매매 수요, 이들을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매개자를 통해 지속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찰, 검찰 등 수사 담당자의 인권의식 향상과 전문성 확보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된 이들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무시나 비하, 범죄자 취급 등 비인격적인 대우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사 및 관련 담당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연구의 필요성 및 시의성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의성이 뛰어난 연구라 사료됨. 특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다각도로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어려운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전반적 제언

- **파편화되어 있는 관점의 통일 문제:** “인권적·젠더적·사회통합적 시각”→ 사회통합적 시각과 인권적 시각은 젠더적 시각과 변별적으로 존재하는가? 문제는 현재의 사회통합적 시각과 인권적 시각에 젠더관점이 부재한 것임! 기술 방식 또한 문제적 청소년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젠더, 섹슈얼리티, 나이, 계층,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교차성 안에 놓인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임: 젠더차별(성차별), 젠더불평등의 관점이 중요함. 무시, 비하, 언어적, 물리적 폭력, 성폭력, 체계적 배제, 분배 불평등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쟁투의 장으로서 여성의 몸!
-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생애과정에서 겪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함. (젠더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생애과정적 접근이 필요)

□ 연구 구성 및 내용 관련

이 조사는 연구의 구성은 크게 법제도,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정책 제언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각 장별 내용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서론

전반적으로 연구내용이 이렇게 짜여진 이유(근거), 다양한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근거), 각각의 연구내용에 맞는 다른 연구방법일 필요한 이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페미니스트들의 저작을 적극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인권법과 외국법 사례

왜 국제인권법과 특정 국가의 사례가 중요한지, 선택의 이유, 이들 정책의 함의 및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등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조사가 필요한 이유 및 타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연관성, 설문항목구성에 대한 소개 및 근거 제시가 필요. 강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소결에서 highlight할 필요가 있음.

○ 심층면접

설문조사와 연결하여 심층면접의 내용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임.

○ 정책제언

앞서 제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항목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꼼꼼히 정리해 주셨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산만한 형식이 되었음. 일목요연하게 가족, 학교, 커뮤니티, 또래 집단, 사회의 문제로 정리하고 개별 정책 제언도 중요하나, 이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제언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본문의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에 대한 내용을 살려 이 기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제언

-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유입 차단**이 아니라 구매와 알선 차단으로(수요차단)
- 서론에서 청소년 성매매 원인에 대한 포괄적 정리가 필요
예를 들면,
 1. 계층문제(사회경제적 문제)
 2. 가족문제
 3. 학교문제
 4. 성차별과 성폭력 등 젠더문제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할 것.

- 성매매 유입시 겪는 문제
- 성매매 상황에서 겪는 문제
-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

이에 따른 개별적 문제를 짚고 체계적 정책제언이 필요

청소년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포괄적 성평등과 보편적 인권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문장 서술 방식 통일, 용어 통일(“매춘” 15쪽, 제고와 채고의 구분), “조건만남”이라는 용어의 사용 재고. “생존이 아닌 소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향이 증가”라는 주장 재고. 해석의 문제임.
→ ‘단속’과 ‘대응’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유입차단’?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인 쇄 | 2016년 11월

| 발 행 | 2016년 11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644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509-1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